

기본연구보고서 2008-08

기업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 기 희 · 황 혜 란 · 정 철 호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

- 김기희 /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 황혜란 /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 정철호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서 문

대전광역시 지역 선도산업 및 대기업의 부재로 인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다수의 지원주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관별·목적별로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는 등 일부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현행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대전시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기업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하면서,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기희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한 황혜란 책임연구원 및 충남대학교 경영학부의 정철호 박사와 더불어 연구과정에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대전지역 기업지원기관 담당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 11.

대전발전연구원장 육 동 일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한 우리나라만큼 종합적이고 복잡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으며,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지원정책 덕분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창업 증가, 생산 및 고용의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음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지원정책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양적인 측면에서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그리고 지원기관에 따른 유사·중복적 정책의 경쟁적 추진 등으로 인한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온 데서 찾아볼 수 있음
- 대전시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및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지원제도의 수립과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및 지역 내 출연기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및 향후 효율적인 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 연구결과

□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 고찰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관에 대하여 살펴 보기 위하여 대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214개 지원정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등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분류를 시도하였음
- 첫째, 사업목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 지원이 62개(29.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출지원(37개, 17.3%), 인력지원(27개, 12.6%), 판로·마케팅 지원(25개, 11.7%), 창업·벤처 지원(25개, 11.7%), 자금 융자·지원(16개, 7.5%), 정보화 지원(9개, 4.2%) 등의 순으로 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목적별 지원정책 분포〉

구 분	사업목적								합계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수출	정보화	벤처	기타	
중기청	8	33	9	10	11	5	14	6	96
기 타	5	12	17	9	19	3	0	4	69
중기센터	3	2	0	3	3	1	6	2	20
특구본부	0	5	1	2	3	0	3	1	15
테크노파크	0	10	0	1	1	0	2	0	14
합계	16	62	27	25	37	9	25	13	214

- 둘째, 성장단계별 지원대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19개(8.9%),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8개

(3.7%),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9개(4.2%) 등 214개 지원정책 중 36개(16.8%)만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178개(83.2%)에 이르는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원대상별 지원정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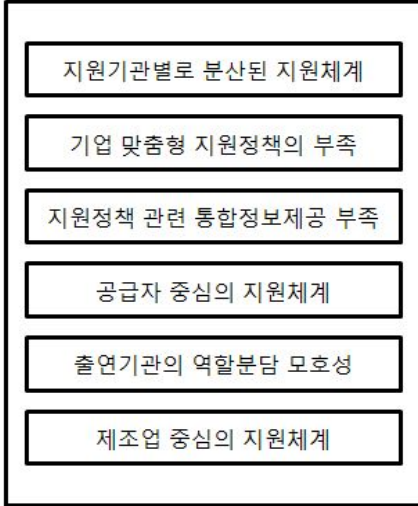
구 분	성장단계				합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제한없음	
중기청	13	7	6	70	96
기 타	1	0	3	65	69
중기센터	3	0	0	17	20
특구본부	2	0	0	13	15
테크노파크	0	1	0	13	14
합계	19	8	9	178	214

□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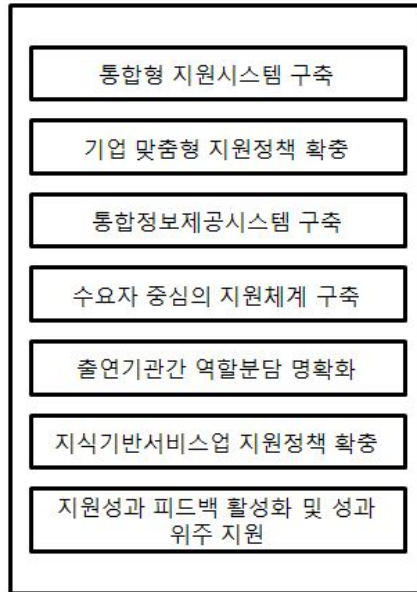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결과 도출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지원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 지원정책 관련 통합정보제공 부족,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 출연기관의 역할분담 모호성,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 등 여섯가지 정도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면,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충,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출연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정책 확충, 지원성과 피드백 활성화 및 성과위주 지원 등의 일곱가지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 정책건의

- 향후 대전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 과제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정책건의 및 세부 사업내용>

정책제안	세부 사업내용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간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 중소기업 지원정책 운영협의회(가칭) 구성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성장단계에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대전지역 기업 특성에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창업 및 경영역량 교육 강화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행정인력 확충 • 지원제도의 수요자-공급자 연계기능 강화
출연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별 역할 재정립·조정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정책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지원 • 주요 지식서비스 기업 및 조직의 유치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집적지 조성
지원성과 피드백 활성화 및 성과 위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 과제 평가시스템 구축 • 사업완료 후 지원금 일부 회수 및 성공부담금 조성 • 사후관리 및 연계사업 발굴·제공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제2장 대전의 중소기업지원 현황	 9
제1절 중소기업의 개념과 지원정책	9
1. 중소기업	9
2. 중소기업 지원정책	16
3.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1
제2절 대전지역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24
1. 대전시 경제과학국	24
2.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7
3. 대전테크노파크	31
4.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6
제3절 기업지원제도의 분류기준	39
1.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39
2. 지원대상에 따른 분류	51
 제3장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 고찰	 63
제1절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	63
1. 자금 융자·지원	63
2.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	65

3. 인력 지원	67
4. 판로·마케팅 지원	69
5. 수출 지원	70
6. 정보화 지원	72
7. 창업·벤처 지원	73
8. 기타 지원	75
제2절 지원사업의 대상에 따른 분류	77
1. 창업기	77
2. 성장기	79
3. 성숙기	79
4. 제한없음	80

제4장 현행 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건의 91

제1절 현행 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	91
1. 지원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91
2.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	92
3. 지원정책에 관한 통합정보제공 부족	92
4.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	94
5. 출연기관의 역할분담 모호성	94
6.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	96
제2절 정책건의	97
1.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	98
2.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충	99
3.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101
4.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103
5. 출연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105
6.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정책 확충	108

7. 지원성과 피드백 활성화 및 성과 위주 지원	110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115
참고문헌	117
 부 록 : 지원기관별 기업지원제도 요약	
1. 중소기업청	123
2. 기타 기관	224
3.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88
4. 대전테크노파크	309
5.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32

- 표 목 차 -

<표 2-1> 중소기업의 정의	10
<표 2-2>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11
<표 2-3>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12
<표 2-4>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	14
<표 2-5>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	29
<표 2-6> 대전테크노파크 출연금 현황	31
<표 2-7> 대전테크노파크 시설 현황	34
<표 2-8> 대전테크노파크의 부서별 기능	35
<표 2-9> 민간부문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제도	45
<표 2-10> 기업의 성장단계 분류	54
<표 2-11>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징	58
<표 3-1> 사업목적별 지원정책 종합	64
<표 3-2> 기관별 자금 융자·지원사업 유형	64
<표 3-3> 기관별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사업 유형	65
<표 3-4> 기관별 인력 지원사업 유형	68
<표 3-5> 기관별 판로·마케팅 지원사업 유형	69
<표 3-6> 기관별 수출 지원사업 유형	71
<표 3-7> 기관별 정보화 지원사업 유형	73
<표 3-8> 기관별 창업·벤처 지원사업 유형	74
<표 3-9> 기관별 기타 지원사업 유형	75
<표 3-10>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현황	77
<표 3-11>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원제도 유형	78
<표 3-12>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원제도 유형	79
<표 3-13>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원제도 유형	80

<표 3-14>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	81
<표 4-1> 지원기관별 기능·역할 재정립 방안	107

- 그림 목 차 -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6
[그림 2-1]	대전시 경제과학국 조직도	25
[그림 2-2]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직도	28
[그림 2-3]	대전테크노파크의 비전과 목표	32
[그림 2-4]	대전테크노파크의 조직도	34
[그림 2-5]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지원 체계	36
[그림 2-6]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조직도	37
[그림 2-7]	중소기업 자금지원 신청 절차	41
[그림 2-8]	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55
[그림 3-1]	사업목적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포	76
[그림 3-2]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포	87
[그림 4-1]	현행 지원제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97
[그림 4-2]	대전시 기업지원기관운영협의회(가칭) 운영도	9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한 우리나라만큼 종합적이고 복잡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시장경제 기능에 충실한 중소기업의 자조적인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을 과잉보호하는 경쟁제한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이윤재, 1999).

1960년대 초 정부의 주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지향적인 성장정책을 근간으로 하였고, 지금도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수출지향적인 경제성장 전략은 거대한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의 형성을 통한 경쟁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아 자원이 대기업 부문으로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 이후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 공업에 많은 자원(특히 금융자원)이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지원된 결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하며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은 더욱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적인 비정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고착화된 시장의 독과점 구조 등 불균형적 조건에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 주고, 별도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쟁제한적인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립·추진에 힘입어 창업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생산 및 고용의 증대로 인해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이 없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지역산업 발전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는 지역 혁신주체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산업 집적지의 형성과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김선배와 정준호, 2001). 즉, 중소기업이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주역 및 경제구조의 중심축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에서는 그 동안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각종 세제상의 지원,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이와 같은 지원정책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동희 외 2인, 2001).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양적인 측면에서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그리고 지원기관에 따른 유사·중복적 정책의 경쟁적 추진 등으로 인한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온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대전의 산업구조는 소비성 서비스 산업이 전 산업의 80%에 달하는 등 편중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통계청, 2005). 대전 지역에 소재한 제조기업 또한 1,2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전통 제조기업과 3,4산업단지 및 대덕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적 첨단 벤처기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지역의 선도산업 및 대기업의 부재로 인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지역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즉, 대전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대전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전시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에 관하여 수행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지원기관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고찰은 물론 이들 지원정책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모색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어졌다.

첫째, 현재 대전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이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지원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을 사업의 지원목적과 대상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분류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목적별 지원정책의 분포 현황과 성장단계별로 지원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분포 현황에 대한 파악을 시도할 것이다.

둘째, 이상에서 파악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대전지역의 추진체계에 관한 고찰 결과를 토대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및 향후 효율적인 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대전지역 기업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구성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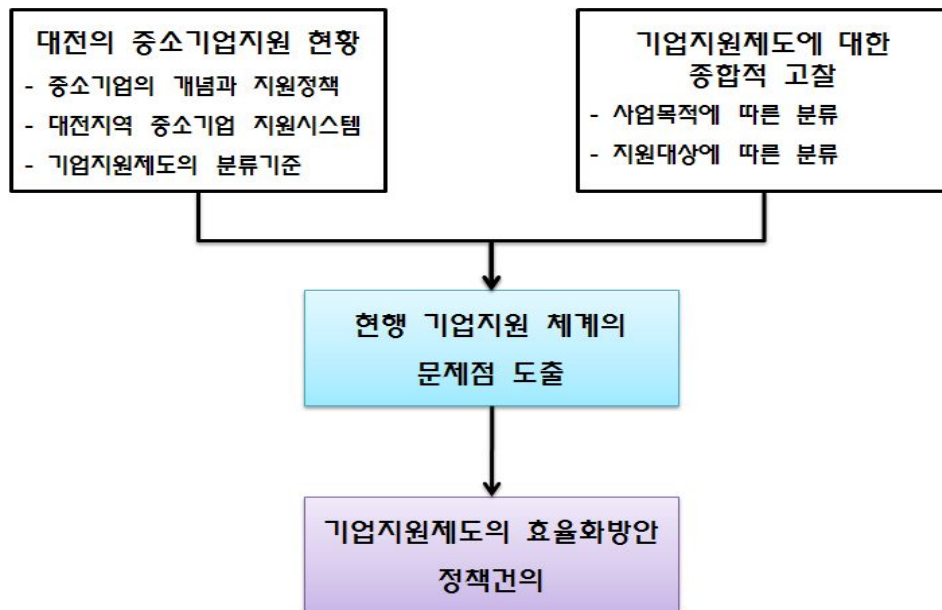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에 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개념과 지원정책, 대전지역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기업지원제도의 분류기준 등에 관하여 문헌 고찰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지원제도들을 사업목적과 성장단계별로 분류를 실시하였고, 각 기준별로 포함된 지원제도들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결론 부분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도출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향후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문헌연구에 기초하였으며, 대전지역 내 기업 지원기관에서 정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개선의견 수렴 과정을 병행하였다.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제 2 장

대전의 중소기업지원 현황

제1절 중소기업의 개념과 지원정책

제2절 대전지역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제3절 기업지원제도의 분류기준

제 2 장 대전의 중소기업지원 현황

제1절 중소기업의 개념과 지원정책

1.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그 기준은 나라마다 업종마다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나 매출액 규모로서 기업을 분류할 때도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정의할 때는 종업원 수, 총 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의 양적인 측면의 기준과 경제 지원정책, 기업의 사회활동 형태, 생산품의 라이프사이클, 기업경영의 동기 등과 같은 질적인 기준이 이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정의를 단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고, 대개의 경우는 양적 기준의 판단 조건인 종업원 수, 총 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을 주로 활용하지만 질적 기준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상범, 1993).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은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적 기준으로는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

〈표 2-1〉 중소기업의 정의

해당 업종	범위 기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종합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관련업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판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 청소관련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농업 및 임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자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표 2-2〉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산업분류	전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 (A)	중기업 (B)	소계 (A+B)	
전체	3,006,053 (100.0)	2,910,221 (96.8)	91,672 (3.0)	3,001,893 (99.9)	4,610 (0.1)
농업및임업	458 (100.0)	278 (60.7)	160 (34.9)	438 (95.6)	20 (4.4)
어업	128 (100.0)	55 (43.0)	71 (55.5)	126 (98.4)	2 (1.6)
광업	1,848 (100.0)	1,815 (98.2)	32 (1.7)	1,847 (99.9)	1 (0.1)
제조업	338,685 (100.0)	329,169 (97.2)	8,833 (2.6)	338,002 (99.8)	683 (0.2)
전기,가스,수도사업	338 (100.0)	102 (30.2)	225 (66.6)	327 (96.7)	11 (3.3)
건설업	88,698 (100.0)	86,910 (98.0)	1,690 (1.9)	88,600 (99.9)	98 (0.1)
도매및소매업	859,857 (100.0)	832,932 (96.9)	26,290 (3.1)	859,222 (99.9)	635 (0.1)
숙박및음식점업	620,658 (100.0)	609,280 (98.2)	10,964 (1.8)	620,244 (99.9)	414 (0.1)
운수업	336,050 (100.0)	333,822 (99.3)	2,123 (0.6)	335,945 (100.0)	105 (0.0)
통신업	5,902 (100.0)	4,792 (81.2)	1,101 (18.7)	5,893 (99.8)	9 (0.2)
금융및보험업	8,801 (100.0)	7,058 (80.2)	1,414 (16.1)	8,472 (96.3)	329 (3.7)
부동산및임대업	100,840 (100.0)	97,150 (96.3)	3,391 (3.4)	100,541 (99.7)	299 (0.3)
사업서비스업	83,555 (100.0)	68,427 (81.9)	14,540 (17.4)	82,967 (99.3)	588 (0.7)
교육서비스업	104,165 (100.0)	96,287 (92.4)	7,503 (7.2)	103,790 (99.6)	375 (0.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0,936 (100.0)	55,776 (91.5)	5,077 (8.3)	60,853 (99.9)	83 (0.1)
오락,문화및운동 관련서비스업	125,433 (100.0)	123,172 (98.2)	2,051 (1.6)	125,223 (99.8)	210 (0.2)
기타공공,수리및 개인서비스업	269,701 (100.0)	263,196 (97.6)	6,207 (2.3)	269,403 (99.9)	298 (0.1)

자료원 :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현황” 일부 수정

〈표 2-3〉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

산업분류	전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 (A)	중기업 (B)	소계 (A+B)	
전체	12,222,161 (100.0)	7,708,185 (63.1)	3,063,438 (25.1)	10,771,623 (88.1)	1,450,538 (11.9)
농업및임업	5,844 (100.0)	1,259 (21.5)	3,186 (54.5)	4,445 (76.1)	1,399 (23.9)
어업	4,013 (100.0)	264 (6.6)	3,113 (77.6)	3,377 (84.2)	636 (15.8)
광업	16,466 (100.0)	12,438 (75.5)	2,767 (16.8)	15,205 (92.3)	1,261 (7.7)
제조업	3,424,831 (100.0)	1,857,439 (54.2)	879,860 (25.7)	2,737,299 (79.9)	687,532 (20.1)
전기,가스,수도사업	11,891 (100.0)	566 (4.8)	7,530 (63.3)	8,096 (68.1)	3,795 (31.9)
건설업	767,630 (100.0)	540,462 (70.4)	155,551 (20.3)	696,013 (90.7)	71,617 (9.3)
도매및소매업	2,408,212 (100.0)	1,728,138 (71.8)	566,864 (23.5)	2,295,002 (95.3)	113,210 (4.7)
숙박및음식점업	1,688,483 (100.0)	1,448,722 (71.8)	192,776 (11.4)	1,641,498 (97.2)	46,985 (2.8)
운수업	811,886 (100.0)	521,188 (64.2)	231,978 (28.6)	753,166 (92.8)	58,720 (7.2)
통신업	56,189 (100.0)	16,841 (30.0)	33,258 (59.2)	50,099 (89.2)	6,090 (10.8)
금융및보험업	115,434 (100.0)	17,156 (14.9)	31,627 (27.4)	48,783 (42.3)	66,651 (57.7)
부동산및임대업	269,117 (100.0)	178,130 (66.2)	62,282 (23.1)	240,412 (89.3)	28,705 (10.7)
사업서비스업	963,026 (100.0)	228,318 (23.7)	472,825 (49.1)	701,143 (72.8)	261,883 (27.2)
교육서비스업	424,429 (100.0)	253,857 (59.8)	142,131 (33.5)	395,988 (93.3)	28,441 (6.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29,875 (100.0)	210,684 (63.9)	111,383 (33.8)	322,067 (97.6)	7,808 (2.4)
오락,문화및운동 관련서비스업	339,111 (100.0)	251,025 (74.0)	50,787 (15.0)	301,812 (89.0)	37,299 (11.0)
기타공공,수리및 개인서비스업	585,724 (100.0)	441,698 (75.4)	115,520 (19.7)	557,218 (95.1)	28,506 (4.9)

자료원 :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현황” 일부 수정

적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30대 그룹계열사가 아닐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정의하는데 있어 질적·양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주로 양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다음 <표 2-1>과 같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경영과 경영의 무한책임, 소규모 조직과 경영, 그리고 주로 지역기업으로서 존재하며 인적관계에 토대를 둔 경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2>와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수가 99.9%인 반면 대기업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표 2-3>의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의 분포에 있어서도 전체 취업 인구의 8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중소기업 부문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부문의 육성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현황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및 영국이 99.8%, 일본이 99.2%, 대만 97.8% 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한국 87.0%, 일본 79.9%, 대만 77.6%로 높은 고용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 및 영국은 50% 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 수(천개)		종사자 수(천명)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 국	2,999	99.8	10,475	87.0
일 본	6,072	99.2	43,704	79.9
대 만	1,146	97.8	7,475	77.6
미 국	23,819	95.7	56,366	50.1
영 국	4,015	99.8	12,607	58.2

자료원 : 서갑수(200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 28 인용

2) 중소기업의 중요성

우리나라 제조업 통계가 작성된 1963년부터 2006년까지 42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공헌도를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생산,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보다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대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비교해 보면, 60년대와 70년대에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성장정책으로 사업체 수 증가를 제외하고는 고용, 생산, 부가가치 증가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기여했다. 이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대기업에 편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기여율이 81.9%로 크게 확대되었다.

90년대에는 소수 대규모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대기업이 고용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중소기업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었으나, 생산, 부가가치 기여율은 처음으로 앞서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기여율이 각각 98.4%, 67.8%, 68.9%로 나타나 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역할, 고용증대 효과, 수출구조의 다양화, 국가의 균형있는 개발 등 그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산업의 분업화·복잡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진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상범, 2001).

첫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산업간 균형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은 대기업, 경공업은 중공업, 그리고 소비재산업은 산업재산업과 서로 관련되어 있고,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기계화가 어렵고, 노동집약적인 제품 생산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업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자본의 회수기간이 짧고 고용흡수도가 높기 때문에 소득증대와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셋째,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내적 경제구조와 자본 및 기술구조로 봤을 때, 수출산업으로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도로 기계화되고, 대규모 생산설비에 의하여 생산되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대외경쟁을 하기에 불리한 처지가 되어 버린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증대를 위하여 국제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에 높은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중소기업의 발전은 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의 토대가 된다. 중소기업은 지방 중심의 산업으로서 광범위하게 입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 개발에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어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루게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은 경제계획 기간 중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경제개발의 주축인 기간산업은 자본의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기 때문에 투입된 자본의

생산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도 장기적·점진적·간접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효과가 신속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한 중간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민경제와 사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산층의 비중이 커야 하는데, 그러한 중산층의 확대는 2차 산업 다시 말하면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의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시대적인 변천이나 집권정부의 경제육성 의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측면과 효율적인 면을 극대화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기본방향은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 개방경제 체제에 대한 적응력 배양,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며, 정부 및 지원기관의 기능 적정화를 기하는데 있다(김종민 외 2인, 200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개입은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그에 따라 목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핵심 경영자원인 자금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원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시책들이 명시되어져 있다. 이는 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현대화에 관한 시책, 협동화에 관한 시책, 계열화에 관한 시책, 사업 조정에 관한 시책, 조직화에 관한 시책, 정부 수주기회의 확보를 위한 시책, 창업지원을 위한 시책, 수출 및 수입에 관

런된 시책,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시책, 재정·금융·세제 등에 관한 지원시책 등과 관련된 시책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책이라 하더라도 명목상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일부 있다.

또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는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시책들 중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일지라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시책들이 있는 반면에 예상되는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새로운 내용의 중소기업 시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기업 자신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첨단 산업의 유치, 공단 조성 및 물류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 시설의 조성, 세제 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지용희, 1994). 이에 따라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주요 행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산업부문에 걸쳐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제조업이나 유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이 성장·발전해 감에 따라 중소기업도 다양한 산업에 걸쳐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종에 걸쳐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중소기업청 외에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국내 경기 및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하여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지원 수단을 집중하여 육성하고 안정적 기업경영을 뒷받침하며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지식정보화 시대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2)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구축이다. 지식기반경제시대,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아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투자조합 설치 확대,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엔젤투자시장의 활성화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 확대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창업자 양성, 대학·연구소의 창업 및 기술보육기능 강화,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기술 컨설팅기능 강화 등 창업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이다. 중소기업이 지식정보화시대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지원자금 확대, 대학·연구소에서 보유한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개발기술의 거래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기술지도,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기업 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으로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확대 등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지원의 효율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인력 공급 확대,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들 수 있다. 지식정보화시대 및 e-비즈니스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보 공급망 확충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능력 제고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구축이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정비,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정보서비스(SMEs Policy Information: SPi) 제공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인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수립과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소속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총 11개)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판로·인력·기술·창업 및 벤처지원업무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총 50개소)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수립한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시책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기관, KOTRA, 한국은행, 중소기업 전담은행 등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

국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 80년대까지는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90년대 들어서면서 코스닥 시장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벤처 육성정책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관하여 연구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정부의 R&D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김주미, 2006).

예를 들어, 이병헌(2005)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과 그렇지 않은 벤처기업 간에 R&D 자금 투입과 기술혁신 성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과차이의 미비함으로 인해 많은 수의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정부 정책의 목적 상,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금투자가 아닌 업체당 적은 규모의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평가에 있어 기술개발 수요, 기술혁신 능력 및 의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공급자 주도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전략적 관리가 잘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두순(2004)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정책적 효과보다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업가 정신,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 개발 경험 등이 기술혁신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추진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안정화 혹은 고용 증대의 효과이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 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업체 수는 99.8%이고, 종사자 수는 86.5%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가 우리나라 고용 안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에서 직접적인 인력지원, 자금 관련 지원, 수출관련 지원, 창업관련 지원 등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 및 경영안정을 도와 고용안정화 및 나아가 고용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기술 개발 경쟁의 촉진을 들 수 있다. 기술은 있으나 개발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신기술 개발을 포기하는 신기술형 중소기업에게 직간접적인 자금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의지를 주고 이것은 중소기업 간의 기술 개발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들이 해외 거래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출관련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외 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수출 증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3.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그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온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오철호(2003)의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행정 체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중소기업 정책, 그리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정부부처간의 기능분담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집행 기능의 중복적 수행이라는 현행체제의 문제점은 실수요자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행정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직면하는 개혁과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희용과 박태경(2004)은 국내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 재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형 지역혁신체계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기관과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런 연후에 혁신주체들을 조율하고 전반적인 혁신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은행과 R&D와 마케팅 조직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오태석(2004)의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가동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으며, 인천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타 지원기관별로 핵심 추진사업의 업무 분장·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천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핵심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충하고, 인력의 양과 질의 개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제도의 개발 및 운영, 인천시의 기업지원업무 이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사화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 산하 출연기관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1단계로 인천시 직속의 출연기관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2단계로 출연기관과 관련한 모든 예산, 행정, 지원사업이 한 곳에서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단일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창훈(2007)의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지원제도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맞춰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적합하고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기업지원시책들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기업환경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시책의 새로운 활로 모색, 미래전략산업의 예측과 발굴 육성,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과분석과 우수시책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시책추진, 일회성 시책사업 지양, 경쟁력 없는 산업단지의 용도전환 및 기존 산업단지의 기업수요에 맞도록 확장 또는 업종 조정 등과 같은 여섯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원용(2003)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 기능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유관기관간 업무협조 체계의 취약성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행정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일련의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2절 대전지역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본 절에서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으로는 대전시 경제과학국 산하 6개과와 출연기관으로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테크노파크가 있으며,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설립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전시 경제과학국

1) 기능 및 역할

대전시에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제과학국 산하 경제정책과, 과학산업과, 기업지원과, 투자마케팅과, 대덕특구과, 농업유통과 등의 6개과에서 세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과의 역할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물류·유통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서비스 산업의 주요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학산업과에서는 대전시 미래전략산업 기본계획 및 육성계획 수립,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및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용지 공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육성자금 운용·관리,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투자마케팅과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계획 및 실행, 기업 이전 및 창업 촉진, 기업 유치상담 및 고충처리 등과 같은 기업의 투자유치 및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덕특구과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원과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특구 내 토지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지역 내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농업유통과에서는 지역의 농·축산업 및 농산물 유통과 관련

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의 경제과학국 산하 6개과는 각각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지역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조직

대전시 경제과학국은 아래 [그림 2-1]과 같이 6개과(경제정책과, 과학산업과, 기업지원과, 투자마케팅과, 대덕특구과, 농업유통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제반 지원은 기업지원과와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 대전시 경제과학국 조직도



3) 주요 추진사업

(1) 자금지원

대전시에서는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 창업 활성화, 정보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하고, 천재지변 및 노사분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금의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2) 판로지원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상품 판매장 개설,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매출 향상을 지원하고,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벤처프라자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3) 입지지원

대전시에서는 지역 기업의 입지수요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적기에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입지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타 지역의 유망기업 및 신규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일부 대기업 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4) 기술개발·정보화·인력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 R&D활동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경영혁신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기업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및 실업 대책, 각종 교육훈련의 제공 등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 기능 및 역할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상담, 지원정보 및 자료제공, 신기술 개발 지원, 상품전시 및 판매, 창업보육실 및 벤처타운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7월에 설립되었다.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전시와 지역 중소기업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매체로소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지원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민원의 최우선 해결로 기업성장동력 지원, 둘째,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마케팅지원 확대, 셋째,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 넷째,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통한 내부지원역량 제고 등이 그것이다.

2) 조직 및 현황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그림 2-2]와 같이 1실(기업지원종합민원실), 2팀(총무팀, 경영사업팀), 2센터(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직도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는 제4산업단지에 위치한 장영실관과 다산관 등의 벤처집적시설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이들 입주기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

연번	기관명	주요업무	연락처
1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 지원 관련	042-864-0901
2	하나은행	자금지원사업	042-864-0404
3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 품질경영지원	042-864-2301
4	KOTRA 대전충남무역관	무역업무 지원사업	042-864-1717
5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자금지원	042-866-0114
6	벤처진흥원(주)	컨설팅사업	042-864-2231
7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사업	042-864-4620
8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개발지원	042-864-2631
9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운영, TJ마트 임대, 공장 운영	042-864-4502/3/6
10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업	042-864-1700
11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전충청지사	승강기 안전검사 지원	042-864-0171

3) 주요 추진사업

(1) 경영지원

대전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센터 내·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영, 자금, 수출, 회계, 법률 등 경영전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닥터, 사이버컨설팅 등과 같은 직접지원 또는 지역 내 유관기관을 통한 연계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자금/투자지원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운전자금, 유통자금,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

여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중소기업육성 자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대덕밸리 투자 지원 등의 자금 및 투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기술개발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첨단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특허정보컨설팅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및 컨설팅, 인터넷 무역거래사이트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5) 입지지원

대전제4산업단지 내에 장영실관, 다산관 등의 벤처집적시설을 구축하여 기업의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장영실관에 8개 기업, 다산관에 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장영실관과 다산관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 초기단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있다.

(6) 판로지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TJ마트(시청점, 갤러리아점, 사이버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망 바이어와의 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벤처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하여 벤처프라자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대전테크노파크

1) 기능 및 역할

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지역의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산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대전시, 하나은행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003년 1월 (재)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하였다가 2008년 3월 (재)대전테크노파크로 전환하였다.

대전테크노파크는 대전시, 지식경제부, 하나은행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며, 각 기관별 출연금 현황은 다음 <표 2-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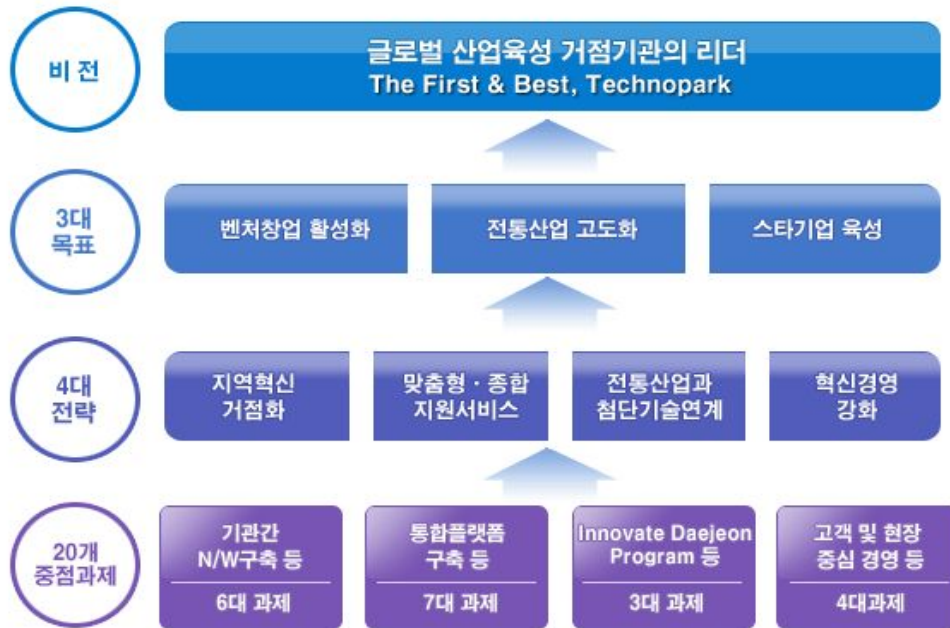
<표 2-6> 대전테크노파크의 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계	대전시	지식경제부	하나은행
60	25	25	10

대전테크노파크는 아래 [그림 2-3]과 같이 '글로벌 산업육성 거점기관의 리더'라는 비전과 '벤처창업 활성화', '전통산업 고도화', '스타기업 육성' 등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3] 대전테크노파크의 비전과 목표



이상의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대전테크노파크의 중점추진전략으로는 첫째,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 거점화, 둘째, 맞춤형·종합지원 서비스, 셋째,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연계 강화, 넷째, 고객가치 창조 극대화를 위한 혁신경영 실천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중점추진전략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 거점화

- 기관간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구축
- NIS와 RIS 체계의 연계 강화
- 타 지역 TP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 지역혁신자원 조사 및 산업동향 모니터링
- 지역기술이전센터(RTIC) 유치 및 기술이전사업
-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

(2)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

-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 기술·경영 및 창업 지원
- 인력양성 및 인력 공급
- 시제품 제작 및 애로기술 지원
- 홍보 및 해외마케팅 지원
- 핵심기술 및 상용화 연구 지원
- 특허정보 종합지원

(3) 전통산업과 첨단기술 연계

- Innovate Daejeon Program 운영
- 첨단기술 이전 및 정보서비스 강화
- 첨단기술과의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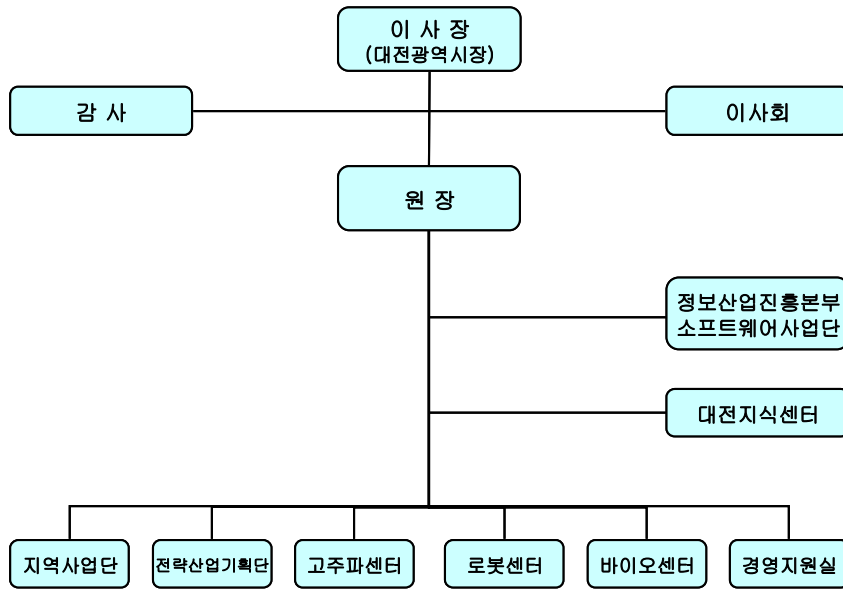
(4) 혁신경영 강화

- 고객 및 현장중심 경영체제 확립
- 조직의 유연성 강화
- 지속적인 변화·혁신을 통한 차별화 실현
- 내부역량 강화

2) 현황

대전테크노파크는 [그림 2-4]와 같이, 이사장과 원장 아래 1본부(정보산업진흥본부), 2단(지역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4센터(대전지식센터, 고주파센터, 로봇센터, 바이오센터), 1실(경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4] 대전테크노파크의 조직도



한편 대전테크노파크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테크노파크 본부동, IT전용벤처타운, 바이오벤처타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등 총 5개 시설물에 연면적 35,235m²로 되어 있다.

<표 2-7> 대전테크노파크 시설 현황

(단위 : m²)

시설(센터)	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계		53,018.7	35,235.6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지하1층, 지상5층	16,528.8	8,325.8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지하1층, 지상3층	7,273.0	3,692.4
바이오벤처타운	지하1층, 지상5층	11,563.3	10,040.6
IT전용벤처타운	지하1층, 지상5층	9,414.9	9,313.4
테크노파크 본부동	지하1층, 지상2층	8,238.7	3,863.4

1본부 2단 4센터 1실로 구성된 대전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은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8> 대전테크노파크의 부서별 기능

구 분	부서별 기능
지역사업단	기업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 및 맞춤형 기업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전략산업기획단	전략산업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산업 기술 지도 작성, 대전전략산업 정보넷 구축, 지역전략산업 평가체계 확립 및 운영, 지역전략산업 커뮤니티 운영 및 확대, 기초역량조사 및 기술진흥 홍보사업
고주파센터	세계적인 Wireless 클러스터 육성, 국제적인 산학연관 네트워크 실현, 고주파부품 및 무선통신산업(이동통신, 텔레메틱스 등) 인프라 조성
로봇센터	지능로봇산업 특성화 및 집적화 지원, 공동장비 활용 기술개발/제품개발 one-stop service 지원, 시제품개발/디자인 개발 지원,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연계 네트워킹 지원, 로봇기술 대중화 지원
바이오센터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벤처생태계 조성,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있는 스타벤처 육성
정보산업진흥본부	대전지역 IT·SW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기업 성장지원, IT·SW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원체계 극대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대전지역 IT·SW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강화
대전지식센터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지역특화사업, 기술권리화 및 특허정보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 대학의 특허기술역량 강화지원, 기술거래 기반 강화,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
경영지원실	이사회 운영, 법인운영위원회와 정관, 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관리, 조직 및 정원 관리와 인력수급, 예산의 종합 조정 및 편성, 인사, 급여, 후생 및 교육 등

4.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 기능 및 역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2005년 9월 1일에 출범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다. 2005년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연구기관 밀집 지역인 대덕연구단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 대덕테크노밸리, 대전3·4산업단지 및 추가개발지역을 포함한 총 70.4km²의 면적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과거 국내 최고의 연구단지에서 연구개발과 산업생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는 대덕R&D특구 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효율적인 지원, 기술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상호교류/협력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특구 개발과 관련된 토지, 건물, 시설, 기자재의 취득, 공급 및 임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5]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지원 체계



2) 조직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사업단 내 3개팀(전략사업팀, 기술벤처팀, 글로벌사

업팀), 기획조정실 내 2팀(기획홍보팀, 전략개발TFT), 경영지원부 내 2팀(기반조성팀, 운영지원팀),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림 2-6]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조직도



3) 주요 사업

(1) 대덕특구기업 조세감면제도 마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국세 감면(소득세, 법인세 최대 5년, 최고 100% 감면), 지방세 감면(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최대 10년, 최고 100% 감면)을 들 수 있다.

(2) 대덕특구 펀드 조성 및 운용

대덕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8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투자에서 인큐베이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유방벤처기업

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대덕 Connect

대덕이노폴리스포럼, 기술사업화포럼 등 다양한 포럼 지원사업을 통해 산·학·연 주체 간 협력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혁신주체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4) 대덕 하이업 프로그램

미국 샌디에이고 커넥트 프로그램 스프링보드를 대덕특구에 맞게 재설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인에게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경영훈련을 제공한다.

(5) 개방형 기술혁신

대덕특구의 우수한 기술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결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전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제3절 기업지원제도의 분류기준

본 절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과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대전지역 내 기업지원기관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분류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유형에 따른 두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1.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본 연구에서 기업지원제도의 첫 번째 분류기준은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사업형태, 지역별 분포 등의 면에서 볼 때, 이질다원적인 기업군이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매우 다양하고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그 성격과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사업목적에 따라 자금 융자·지원,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 인력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수출 지원, 정보화 지원, 창업·벤처 지원,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자금 융자·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및 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시설자금, 시장개척자금,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들 자금은 지원조건에 따라 융자금, 보조금(출연금 포함), 투자금, 보험 및 신용보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종류별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자금은 일반적으로 기업 창업, 설비·원자재 구입, 공장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자금인데, 여기에는 은행이 자체 조달한 자금과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위탁한 자금(정부위탁 융자금)이 있다. 이들 자금간의 차이점은 정부위탁 융자금의 경우 은행 자체자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기간이 길어 유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융자금은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담보가 없는 경우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둘째, 보조금(출연금 포함)은 기술개발비, 교육·훈련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자금이다. 보조금의 규모는 사업 및 지원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셋째, 투자금은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구조조정회사 등을 통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자금을 받는 대신에 회사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형태(유상증자)이다. 이들 투자회사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금(펀드)을 조성하는데, 자금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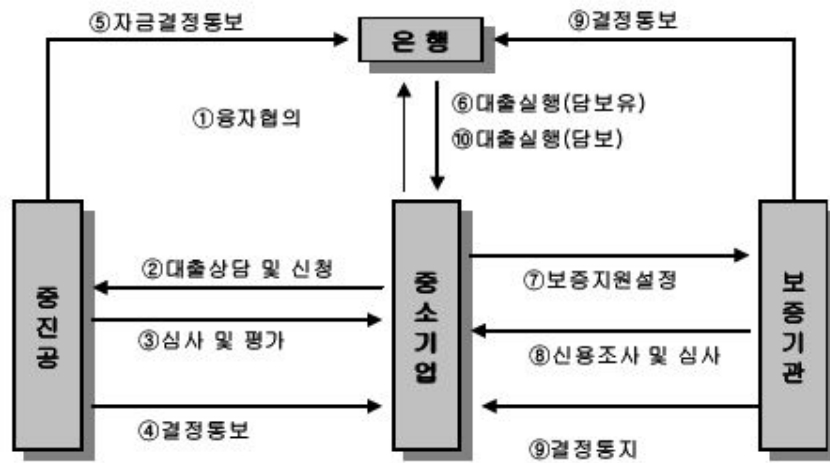
넷째, 보험방식의 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거래기업이 부도·폐업 등의 상황을 맞게 될 경우, 과거 거래과정에서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이 거의 휴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해 주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에서 운용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거래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경우 부금납부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부도어음을 견질 담보로 부도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방식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담보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부분의 자금 융자·지원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력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자금은 창업초기이거나 소규모 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업자금 지원은 업력이 5년 미만인 창업자에게만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자영업 또는 소기업(제조업은 50인 미만, 서비스업은 1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지원제도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며,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이행보증, 수출보험 등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지원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2-7] 중소기업 자금지원 신청 절차



주) ① ~ ⑥ - 담보제공 가능업체
 ⑦ ~ ⑩ - 담보제공 불가능업체

2)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신기술 및 시제품 개발지원, 연구소 설치 지원 및 시험장비 이용 등 기술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기술 해

소·지도, 기술평가·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투자여력을 확대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우수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토록 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이를 통한 재투자 여력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 대비 70%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R&D 역량의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대체로 초기 아이디어 단계로부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요인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 인력, 장비와 함께 기초기술을 공급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매년 1조 3천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 R&D 자금은 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20~30% 수준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고급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대학 내에 중소기업 협력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방의 교수 연구실과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중소기업·교수·재학생이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학생들의 졸업한 후에

는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양산설비 도입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을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용자, 기술평가보증 등의 금융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양산된 제품의 판로확보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담보하는 신기술 성능보험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가 안심하고 신기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영컨설팅, 경영혁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시장가치 평가 및 이전거래 알선지원 등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기술과 사업화 능력을 겸비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지정하고, 보증 및 정책자금, 판로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투입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연구개발 및 경영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3) 인력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인력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 지원제도로는 인력의 직접채용 지원, 인재 알선, 각종 인력관련 지원금 지급, 인력활용 관련 세제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이러한 인력 지원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청, 노동부 및 지식경제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인력양성 및 인력 채용, 인력지원 정책들을 시행하

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조정·고용창출·고용촉진·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주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근무환경 개선 및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판로·마케팅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PR 지원, 브랜드 개발,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공공구매·조달 정책 등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기업체 생산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 인지도 및 효과적인 유통망의 미비 등으로 시장 개척과 매출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통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판로·마케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민간부문의 수요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사업과 공공부문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운영으로 구분되며, 시장개척 사업은 지원내용에 따라 브랜드 지원사업, 홍보지원 사업, 판매공간 확대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을 통한 제품판매 지원제도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이다. 이러한 공공구매제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성능인증제품을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능보험으로 보상하고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하여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구매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민간부문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제도는 다음 <표 4>와 같이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제품 판매공간 확대 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2-9> 민간부문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제도

유형	세부내용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사업	다수의 중소기업이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상표를 도입,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상표 개발비용 및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에 필요한 홍보비용 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을 지원
제품 판매공간 확대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사업 및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지 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전용백화점 개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확대 지원

5) 수출 지원

교통 및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가간 지리적·경제적 거리가 좁혀지고 수송비 및 거래비용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국제 무역과 투자가 용이해지고 있으며, 세계적 자원 및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이 용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와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제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현지 시장정보, 자금과 인력, 기타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의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전지역 관련 기관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지원제도는 지원방식 및 수요에 따라 수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제도와 무역 전문인력 공급,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정보제공을 포함한 기타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의 지원은 지원조건에 따라 용자 형태인 수출금융지원사업과 보조금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사업인 수출금융지원제도를 제외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은 수출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전문기관 등 보조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소요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전문기관 등의 보조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사업은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사업, 민간해외지원센터 사업, 해외 유통망 및 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 외에 기업이 수출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요 자금을 용자, 보험 등의 형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 용자형태의 지원은 지원주체별로 무역금융, 중소기업 수출특례 신용대출, 무역기금 용자 지원제도, 수출금융 직접대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방식의 수출금융지원은 대부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의 원래적 기능을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환변동보험제도가 대표적인 제도이며, 수출보험공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선적 전후에 수출금융을 대출받을 때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무역 관련 인력 지원사업은 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우수 무역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은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교육 후 해외 틈새 및 신흥시장 등에 파견하여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귀국 후 창업 및 취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

비 및 항공료 전액과 파견기간 동안 해외 현지활동비를 8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현지 활동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거점 등 해외진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현지에서의 조기정착과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 설치된 거점은 수출 인큐베이터와 공동물류센터가 있으며, 국내 거점으로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 내의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6) 정보화 지원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인터넷 활용의 급속한 확산에 힘입어 향후 중소기업 경영에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체제의 구축이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보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컨설팅, 정보화 관련 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기업경영에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정보화를 통해 기업 내부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고객이나 공급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외 관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업의 정보화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등 초기비용 투자가 필수적이며, 기업 임원이나 담당자들이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도입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보화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정보화 추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보화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기업환경의 도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 지원,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육성 및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보화 지원제도의 세부 유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들이 쉽게 정보화의 필요성과 효과, 활용분야, 인터넷의 사용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에서부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업을 개선할 수 있는 고급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 세무·회계 자동화, 매출·입 관리, 고객관리, 기업업무 통합자동화(ERP 도입), 기업간 거래 자동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보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기업 정보화 환경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도입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직접지원 형태도 있고, 중소 IT 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등 IT 공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도 있으며, 정보화 도입비용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세제를 감면해 주는 형태의 지원사업도 있다.

이 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안내, 업종별 정보화 우수사례 소개 등 중소기업이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소식지로 전달한다.

한편 대전시 경제정책과에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IT도우미사업을 통해 대전시 소재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중 정보화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7) 창업·벤처 지원

정부(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벤처 지원사업은 창업자금, 벤처 출자, 벤처 인증, 창업보육, 투자·입지(공장설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능력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이 목적이다.

먼저 창업과 관련된 지원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국가경제에서 창업은 국가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임과 동시에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경기활력 회복 특히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창업 지원정책의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제도는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속하게 창업을 통한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보육, 자금 등을 지원하고,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의 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업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유형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창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전문인력과 기관을 통해 창업 희망자를 교육 및 지원해 줌으로써 창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둘째,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그러하듯 창업자금도 크게 융자지원과 투자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을 통해 담보부, 보증서부, 신용부로 대출 지원되며, 투자지원은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술평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셋째, 창업보육 사업을 들 수 있다. 창업보육은 창업 초기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도,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로 대학, 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동

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자는 보육센터 입주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창업과 관련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제도로는 제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일괄 처리 지원을 들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절차적 편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자.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서 성장 유망한 혁신형 기업을 기술력 등 일정기준에 의거 선별한 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에 의거 인력, 자금, 판로, 세제 등 분야별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의거 다양한 지원제도가 적용되는데, 동법은 일반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산업재산권의 출자 특례,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원활한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교환제도 특례,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스톡옵션 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입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립,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실험실공장 특례를 통해 벤처기업의 사업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외에 다양한 제도를 활용,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요금이 할인 적용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 일반기업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8) 기타 지원

이상에서 언급한 기업지원제도 유형 외에 기타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

또한 다수가 존재한다. 그 예로는 소기업 및 재래시장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성기업인 지원제도 등의 특정 기업(경영자) 유형에 대한 지원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편의 및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그것이다.

2. 지원대상에 따른 분류

1) 기업의 성장단계이론에 관한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 기업지원제도의 두 번째 기준은 지원제도의 시행 대상에 따른 것이다. 기업은 창업을 시작으로 제한된 보유자원의 효율적 결합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간다.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해 감에 따라 조직 규모의 확대, 제품 폭과 사업범위의 확장 및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조직구조의 복잡성도 증대하는 등 기업의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이병현, 2005).

경영이론에서 자주 논의되는 제품의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와 같이 중소기업도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발전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영환경은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들이 생존 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행하는 경영전략도 차이를 보이게 되며, 기업이 성장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성공요인과 경영상 애로사항 또한 성장단계별로 달라지게 된다. 즉 기업의 성장과정에는 특정한 시점에 생존 및 성장을 위한 특정한 요구사항이 존재하게 되며(Baird & Mechoulam, 1988),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애로요인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개별기업이 성장단계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마케팅 등의 경영역량이 부족하여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즉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지속성장에 제약이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같은 외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성장단계에 관한 연구의 근간은 1951년 Davis와 1962년 Chandler의 연구가 초기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후 Greiner(1972)에 의해 제안된 5단계 성장단

계이론이 본격적인 성장단계이론 연구의 근간이 되었다(김영배와 하성욱, 1999). 기업의 성장단계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 발전하며, 성장단계 간 순서는 쉽게 바뀌지 않으며,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기업 활동 및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stage of growth)에 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 혹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해 왔다. Kazanjian(1988), Kazanjian & Drazin(1989), 권기대 외 2인(2002) 등의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성장단계를 제품개발(conception & development) 단계, 상업화(commercialization) 단계, 성장(growth) 단계, 안정화(stability) 단계 등의 네가지 단계로 구분하였고, 이들 각 단계별로 경영관리 상의 핵심적인 문제와 성공요인이 달라지게 됨을 제안하였다.

Timmons(1994)는 기업의 연령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창업 이후 3년까지를 창업기(start-up stage), 그 이후 10년까지를 성장기(growth stage), 15년까지를 성숙기(maturity stage), 그 이후를 안정기(stability stage)라고 구분하고, 벤처기업이 성장할수록 창업자는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역할(doing)'에서부터 '관리하는 역할(managing)'로, 그리고 다시 '관리자를 관리하는 역할(managing managers)'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병헌(2005)은 그의 연구에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제품개발 및 매출증대 정도에 따라 첫째, 기업의 창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까지, 즉 최초에 출시한 제품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의미하는 창업기, 둘째, 최초에 출시한 제품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하여 생산 품목이나 서비스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성장기, 셋째, 여러 생산 품목이나 서비스로 다각화되어 있어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성숙기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고, 송무호(2004)에서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 이전 준비기, 창업 후 초기, 성장기 등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였고, 기업의 각 단계별로 경험하게 되는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창수와 이춘우(2003)의 연구에서는 경영자, 인력, 기술, 판매, 자금, 내부 프로세스(process), 전략, 기업환경 등의 여덟가지 한국 벤처기업의 하위경영시스템 요소에 대해 개발기, 성장기, 성숙기의 성장단계에 따른 중요도의 변화패턴을 제시하고,

IT기업과 비IT기업, 고성장 기업과 저성장 기업의 성과차이를 비교분석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발기에는 사업의 핵심요소인 기술요소와 창업 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영 및 인력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에는 판매 및 마케팅 요인이 중요시 되고, 성숙기에서는 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제일 중요시 되던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제품의 판매, 기업 내부 관리와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 및 전략, 환경적 요인들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고성장 기업과 저성장 기업의 비교에서는 인력요인에 있어 고성장 기업이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내부 프로세스 요인 및 전략 요인 또한 성숙단계로 갈수록 고성장 기업은 저성장 기업에 비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경영자요인과 인력요인이 IT기업에서는 성숙단계에서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비IT기업에서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기술요인은 IT기업과 비IT기업이 반대의 현상을 보였으며, IT기업은 창업초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양현과 심상규(2007)은 그들의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재도약기 등의 네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각 단계별 판별이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판별모형에서 활용된 설명변수들로는 경영 전략, 판매현황, 마케팅형태, 환경변화, 경영목표, 시장지배력, 수출비중, 매출액 성장률, 차입금 규모, 수익성 등과 같은 열가지 유형이며, 이들 변수들이 기업의 성장 단계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김주미(2006)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예비창업, 3년 이내, 5년 이내, 7년 이내, 제한 없음 등의 다섯단계로 구분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성장단계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에서 수행한 성장 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분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96.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정책들이 성장단계와는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는 반면 단지 3.5% 만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보다 높은 성과를

언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성장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들과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계획·추진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2) 기업의 성장단계 구분

기업이 특정한 성장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기업이 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오래된 기업도 창업기에 머무를 수 있고, 창업 후 2-3년 이내에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성숙기에 이를 수 있다(이춘우와 서창수, 2006). 즉 기업의 창업 후 연령(age)이 성장단계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으며(Rutherford et al., 2003), 기업의 특성 및 비즈니스 성숙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비즈니스 성숙 정도에 따라 다음 <표 2-10>과 같이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정리 및 재도약기의 네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대상별 지원정책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2-10> 기업의 성장단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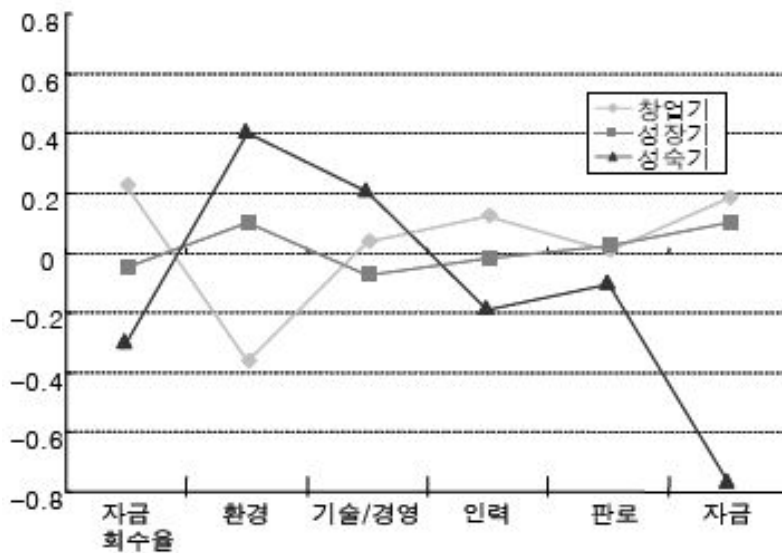
분류	기업 특징
창업기	기업의 창업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반을 수립하고, 기업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단계
성장기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뚜렷한 매출 확대를 통한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성숙기	조직의 규모가 커지며, 조직 내 경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이 관심이 되는 단계

자료원 : 구자원, 이윤철(2007), 기업성장단계 연구에 있어 변수의 사용빈도 및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생산성논집 제21권 2호), 한국생산성학회. p.140. 수정 인용

한편 성장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로 중소기업들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니즈 또한 달라지게 된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영순과 김주미(2007)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단계별 애로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2-8]을 토대로 살펴보면, 첫째, 창업기에 속한 기업은 인력과 자금조달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장기에 접어든 기업은 창업기의 기업에 비해 환경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비슷하다. 또한 성숙기에 있는 기업은 환경 및 기술/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매우 높으며, 인력, 판로, 자금의 애로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2-8] 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자료원 : 장영순, 김주미(20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애로요인의 실증적 연구(IE Interfaces 제20권 3호), 대한산업공학회. p. 424 인용

둘째, 기업이 성장할수록 환경적 요인에 대한 애로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자금을 위한 압박이 낮아지고 있다. 셋째, 창업기에는 기술 및 경영에 대한 애로가 비교적 높았다가 성장기에서는 낮아지고 있으며, 성숙기에 들어서는 기업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경영혁신에 대한 애로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금에 대한 애로는 창업기에 가장 높았다가 성장기, 성숙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납품대금에 대한 자금회수율의 경우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순으로 애로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 성장단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장을 종합하여 국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대상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정리 및 재도약기 등의 네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창업기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창업기(start-up stage)는 기업의 창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내고, 이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시장조사와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며,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 당면문제로 지적된다. 경영자의 경영 스타일은 주로 창업자 주도의 미숙한 의사결정체계를 가지게 되고, 조직 구조 또한 비공식적이며 권력이 창업자 개인에 집중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창업기에 속한 기업이 가지게 되는 위험요소로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제품개발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창업기에 속한 기업은 개발된 제품의 성공적인 상업화 및 매출 성장을 통해 다음 단계인 성장기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2) 성장기

중소기업의 성장기(growth stage)에서는 기업의 주력상품의 시장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본격적인 매출이 실현되고 자금의 조달 및 대량공급체제가 이루어져 가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속한 기업들의 목표는 시장진입에 성공하여 목표한 매출액을 달성하고 최소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기업들은 판매 및 종업원 수에 있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며, 기업들은 수익성을 얻으면서 충분한 규모로 제품을 생산, 판매,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된다. 경영자의 경영 스타일은 분권형태의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며, 조직 구조 측면에서도 기능조직 중심의 공식화가 점차 진행되는 단계이다.

성장기에 속한 기업들이 당면하게 되는 위험요소로는 급격한 매출증가 및 조직 규모의 성장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하기 쉽다는 점과 예상치 못한 경쟁자를 만난 경우 그 대응전략의 수립·추진에 있어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단계에 속한 기업은 재무적이고 운영적인 부문의 성공적 관리를 통해 다음 단계인 성숙기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3) 성숙기

기업의 성장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성숙기(maturity stage)는 성공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안정화되는 시기로서 생산 제품의 다각화와 조직의 안정화가 이루어져 가는 시기이다. 이 단계 기업의 지식활동 특성은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혁신체계가 구축되며, 학습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경영 스타일에 있어 분산된 지배구조를 가지며, 조직구조에 있어서도 사업부에 기반한 조직구조가 구축되고 상당한 수준의 공식화를 완성하게 된다. 하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의 경우, 주력 제품의 매출 성장률 및 시장점유율의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공식화의 정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경직된 조직문화가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숙기에 속한 기업은 고속 성장을 통해 획득한 재무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창업기업가 정신으로 환경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성장에 의해 야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예산관리, 전략적 기획, 목표관리, 표준원가 체계 등의 전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 전략에 있어서는 성장이 정체된 주력상품을 대체할 신제품의 성공적인 개발 및 출시, 혹은 기존 제품의 기능 차별화가 중요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들에 관하여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 <표 2-11>와 같다.

<표 2-11>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징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당면문제	시장파악·제품개발 ·자금조달	대량공급체계·성장관리· 자금조달	제품다각화·조직안정화
지식활동	기술개발 시장파악 및 제품개발	보완적 기술개발·외부조달·경영 노하우 습득	기술개발·지속적 혁신체계·학습체제 구축
문제해결 방법	창업 성공 상업화 성공	재무적 성공 운영적 성공	조직적 성공
경영 스타일	창업자 지배적 미숙한 의사결정체계	분권형태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체계 구축	상위관리자 경영 분산된 지배구조
조직구조	비공식적 구조 권력의 집중화	기능조직 중심의 공식화 진행	사업부 기반구조 매우 공식화된 체계
위험요소	제품개발 실패 규모의 경제 상실	매출 증가 체계적 관리능력 부족	매출점유율 저하로 주식공개 인수 등 회수실패

자료원 : 이양현과 심상규(2007),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판별모형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연구 제29권 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p.27 인용

제 3 장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 고찰

제1절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

제2절 지원사업의 대상에 따른 분류

제 3 장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 고찰

본 절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과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대전지역 내 기업지원기관에서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기준으로 체계적인 분류를 수행하고, 각 분류범주별 지원제도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앞서 2장의 문헌 고찰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전반을 분류·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

본 연구에서 기업지원제도를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분류기준은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사업목적에 따라 자금 융자·지원,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 인력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수출 지원, 정보화 지원, 창업·벤처 지원,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자금 융자·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에서 제공되는 자금 지원제도는 크게 간접 지원제도와 직접 지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 지원제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증에 의해 저리의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직접 지원제도는 기업에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자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자금 용자·지원 방식의 기업지원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3개(중소기업청 8개, 기타 기관 5개)와 대전시에서 3개(대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개) 등 총 18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 사업목적별 지원정책 종합

구 분	사업목적								합계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수출	정보화	벤처	기타	
중기청	8	33	9	10	11	5	14	6	96
기 타	5	12	17	9	19	3	0	4	69
중기센터	3	2	0	3	3	1	6	2	20
특구본부	0	5	1	2	3	0	3	1	15
테크노파크	0	10	0	1	1	0	2	0	14
합계	16	62	27	25	37	9	25	13	214

<표 3-2> 기관별 자금 용자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	중소기업청 (8)	중소·벤처 창업자금
		기술개발 사업화 기금
		경영혁신 자금
		구조조정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기타 (5)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
		보험지원 제도(신용보증기금)
대전시 (3)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3)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기업유통업자금 지원

2.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

현재 기술개발·경영혁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제도는 중앙정부 및 기관에서 45개(중소기업청 33개, 기타 기관 12개), 대전시에서 17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5개, 대전테크노파크 10개) 등 총 62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술개발·경영혁신과 관련된 지원제도의 분포를 보면, 대전시 소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제도가 타 목적의 지원제도와 비교하여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기관별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45)	중소기업청 (3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Inno-Biz 인증 코칭 프로그램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 지원사업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결성 지원사업
		BI 창업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권소사업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표 3-3〉 기관별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사업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제품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사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자금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사업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연수
		여성기업간 경영노하우 멘토링 운영
		벤처투자마트 및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여성기업 T-Commerce 운영
		중앙부처 및 기관 (45)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인프라활용연계 시험분석 지원사업		
미니클러스터 지원사업		
제품·포장디자인 지원사업		
문제해결 멘토지원(코디네이팅) 사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우수기술 지원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사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전시 (17)	중소기업종합지 원센터(2)	시제품제작지원
		기업현장방문
	대전테크노파크 (10)	품질인증 및 표준화지원사업
		대전 IT·SW 스타기업 육성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표 3-3> 기관별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사업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대전시 (17)	대전테크노파크 (10)	특허정보컨설팅 지원
		해외특허출원 지원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RIS 장비지원사업
		상생협력 Jump-up 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u-IT839 전략적 지속성장화 지원사업
	대덕연구개발특 구지원본부(5)	특구연구개발사업
		첨단기술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
		비즈니스 정보센터 구축
		대기업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사업
		대덕 High-Up(첨단기업도약) 프로그램 운영

3. 인력 지원

각 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지원제도 중 인력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정책은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26개(중소기업청 9개, 기타 기관 17개), 대전시 1개(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개) 등 총 27개 사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력지원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청 중심의 중앙부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기관별 인력 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26)	중소기업청 (9)	산업기능요원제도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제도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기타 (17)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지원(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장맞춤형 교육훈련 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활용(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원(CLEAN 사업,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노동부)
		재고용 장려금 지원(노동부)
		교대제 전환 지원금(노동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노동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노동부)
		전직지원 장려금(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노동부)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노동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노동부)
대전시 (1)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1)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판로·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에서 출시한 제품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9개(중소기업청 10개, 기타 기관 9개)와 대전시에서 6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개, 대전테크노파크 1개) 등 총 25개의 지원정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판로·마케팅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기관별 판로·마케팅 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9)	중소기업청 (10)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 운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
		성능인증·성능보협제도
		우수중소기업제품제품마크(GQ)인증제도
		공공구매론
		제조물책임(PL) 제도 대응지원
	기타 (9)	공동마케팅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NEP(신기술 인증제품)인증 지원사업(기술표준원)
		GR(재활용 인증제품)인증 마크(기술표준원)
		우수제품선정지원(구매, 마케팅 등) 제도(조달청)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판매 공급(조달청)
		우수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률구조사업(특허청)

<표 3-5> 기관별 판로·마케팅 지원사업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대전시 (6)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3)	대덕밸리 서울사무소 운영
		지역상품판매장(TJ마트) 운영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대덕연구개발특 구지원본부(2)	대덕특구 테크노마트 개최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대전테크노 파크(1)	개별전문전시회 지원사업	

5. 수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관련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대외 무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수출 증대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자원 기반이 부족한 국내 기업의 특성상 수출을 통한 매출 증대와 경쟁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행 중에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30개(중소기업청 11개, 기타 기관 19개)와 대전시에서 7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개, 대전테크노파크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기술한 각 기관별 수출 지원사업 유형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기관별 수출 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30)	중소기업청 (1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운영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지원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 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사업
		여성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기타 (19)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해외규격 확보지원 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 무역·기술교류단 파견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IT협력단 파견 지원(정보통신부)
		무역구제제도(산업자원부)
		무역기금 용자지원(한국무역협회)
		수출금융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환위험관리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제도(수출보험공사)
		수입규제대응 자금지원(수출보험공사)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수출보험공사)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KOTRA)
		KOTRA 해외시장조사대행 서비스(KOTRA)
		KOTRA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KOTRA)
		KOTRA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KOTRA)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한국무역협회)
		영세업체 수출신고지원(한국무역협회)
		무역운임할인서비스 지원(RADIS, 한국무역협회)

〈표 3-6〉 기관별 수출 지원사업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대전시 (7)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3)	해외지사화사업
		통번역 지원사업
		해외무역거래사이트 운영
	대덕연구개발특 구지원본부(3)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상품 제품 디렉토리 제작사업
		해외자금유치지원사업
	대전테크노 파크(1)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6. 정보화 지원

지식정보화 시대에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지원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진다. 정보화 지원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상당부분 중소기업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지원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8개(중소기업청 5개, 기타 기관 3개)와 대전시에서 1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개) 등 총 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정보화 지원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기관별로 분류·정리해 본 결과, 다음 <표 3-7>와 같이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8건, 대전시에 1건 등 총 9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기관별 정보화 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8)	중소기업청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s)을 통한 정보화 일괄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기타(3)	이러닝인증사업 및 도입지원사업(한국이러닝산업협회)
		IT 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시 (1)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1)	중소기업 IT도우미사업

7. 창업·벤처 지원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우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부처 및 기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가지는 대전시에서도 다수의 지원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지원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4개(중소기업청 14개)와 대전시에서 11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3개, 대전테크노파크 2개) 등 총 2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창업·벤처 지원사업 유형에 포함된 세부 지원사업들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기관별 창업·벤처 지원사업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4)	중소기업청 (14)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빌딩 지정제도
		창업보육사업(BI)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기술창업패키지 100 운영사업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지원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제도
		엔젤투자마트 개최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
		자영업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여성벤처 CEO 포럼
		여성특화창업센터 운영
대전시 (11)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6)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대덕밸리 투자조합(지원)
		공장설립등록 지원
		창업보육실 운영
		벤처타운(다산관, 장영실관) 운영
		벤처프라자 개최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3)	창업경영서비스(기술사업화 종합상담) 지원
		특구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
		기술창업 경영지원센터 운영
	대전테크노 파크(2)	입주공간(바이오벤처타운, 로봇센터, 고주파산업지원센터, IT전용벤처타운) 제공
		창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8. 기타 지원

이상에서 언급한 기업지원제도 유형 외에 기타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 또한 다수가 존재한다. 그 예로는 소기업 및 재래시장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성기업인 지원제도 등의 특정 기업(경영자) 유형에 대한 지원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편의 및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그것이다.

<표 3-9>는 각 기관별로 수행 중인 기타 목적의 지원사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표 3-9> 기관별 기타 지원사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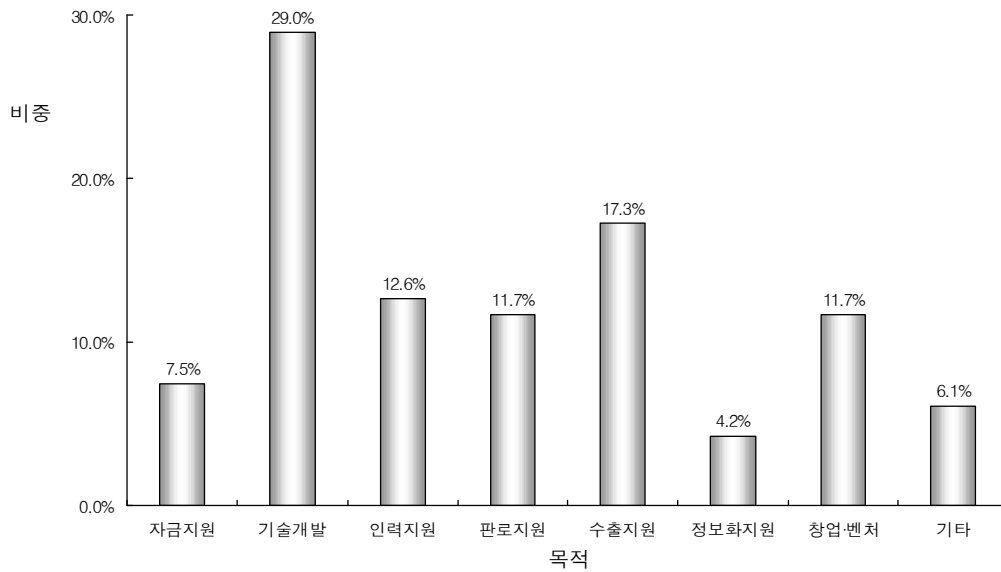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0)	중소기업청 (6)	소기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여성이랜서 전문가양성 확대
		도전 여성스타기업 선정
	기타(4)	Inno-Cafe 운영(한국산업단지공단)
		e-클러스터 통합정보망 운영(한국산업단지공단)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IT산업경쟁력 강화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대전시 (3)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2)	시설지원
		정보제공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1)	특허정보 활용지원

이상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적별 분류결과를 각 목적별 사업수를 기준으로 도식화 해 보면, 다음 [그림 3-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전체 214개 지원정책 중 62개로 29.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수출 지원이 37개(17.3%), 인력지원이 27개(12.6%), 판로지원 및 창업·벤처지원이 각각 25개(11.7%), 자금지원이 16개(7.5%), 기타가 13개(6.1%), 정보화 지원이 9개(4.2%) 등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사업목적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포



제2절 지원사업의 대상에 따른 분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그 대상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본 결과, 다음의 <표 3-10>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창업기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는 19개,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8개,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9개 등 특정 성장단계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제도가 총 36개(16.8%)인 반면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총 214개 지원제도 중 178개(83.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지원제도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정책에 대한 니즈 혹은 경영애로사항이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표 3-10>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현황

구 분	성장단계				합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제한없음	
중기청	13	7	6	70	96
기 타	1	0	3	65	69
중기센터	3	0	0	17	20
특구본부	2	0	0	13	15
테크노파크	0	1	0	13	14
합계	19	8	9	178	214

1. 창업기

창업기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로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11>와 같이 주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4개(중소기업청 13개, 기타 기관 1개)와 대전시에서 5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개)로 나타났다.

<표 3-11>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원제도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4)	중소기업청 (13)	중소·벤처 창업자금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 지원사업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사업(BI)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사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제도
		자영업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여성특화창업센터 운영
	기타(1)	IT우수기술 지원사업
대전시 (5)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3)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업보육실 운영
		벤처타운 운영
	대덕연구개발특 구지원본부(2)	창업경영서비스(기술사업화 종합상담) 지원
		대덕 High-Up(첨단기업도약) 프로그램 운영

2. 성장기

성장기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는 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으로 7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시에서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이루어지는 1개 지원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원제도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7)	중소기업청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Inno-Biz 인증 코칭 프로그램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학협력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엔젤투자마트 개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지원
대전시 (1)	대전테크노 파크(1)	입주공간 제공

3. 성숙기

다음으로 성숙기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9개 (중소기업청 6개, 기타 기관 3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시에서는 별다른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제도는 주로 성숙기 기업의 생산 효율화 및 경영 효율화와 관련된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제도가 대부분이고, 기타 기관에서는 주로 노동부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관련 지원제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원제도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9)	중소기업청 (6)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s)을 통한 정보화 일괄 지원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구조조정 자금
		사업전환 지원자금
	기타 (3)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지원

4. 제한없음

기업의 성장단계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제도의 유형으로는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135개(중소기업청 70개, 기타 기관 65개), 대전시에서 43개(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7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3개, 대전테크노파크 13개) 등 총 18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14개 기업지원제도 중 88%에 달하는 양으로서 대부분의 기업지원제도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성장단계의 기업들에 대하여 동일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5)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경영혁신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사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결성 지원사업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제품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사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제도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표 3-14>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5)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 운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 인증제도
	공공구매론
	제조물책임(PL) 제도 대응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운영
	수출중소기업 Globa Brand 육성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지원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 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사업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빌딩 지정제도
	소기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여성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표 3-14〉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5)	중소기업청 (10)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연수
		여성기업간 경영노하우 멘토링 운영
		여성이랜서 전문가양성 확대
		벤처투자마트 및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여성벤처 CEO 포럼
		기술창업패키지 100 운영사업
		도전 여성스타기업 선정
		여성기업제품 T-Commerce 지원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기타(20)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활성화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이전기술사업화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시제품제작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인프라활용연계 시험분석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지원(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장맞춤형 교육훈련 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해외규격 확보지원 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 무역·기술교류단 파견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미니클러스터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Inno-Cafe 운영(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제품·포장디자인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문제해결 멘토지원(코디네이팅) 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e-클러스터 통합정보망 운영(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마케팅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이러닝인증사업 및 도입지원사업(한국이러닝산업협회)
		IT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표 3-14>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5)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 지원(신용보증기금)
	보험지원 제도(신용보증기금)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활용(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원(CLEAN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인력/장비,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IT협력단 파견 지원(정보통신부)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사업(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교대체 전환 지원금(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NEP(신기술 인증제품) 인증 지원사업(기술표준원)
	GR(재활용 인증제품) 인증 마크(기술표준원)
	우수제품선정지원(구매, 마케팅 등) 제도(조달청)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판매 공급(조달청)
	우수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률구조사업(특허청)
	무역구제제도(산업자원부)
	무역기금 융자지원(한국무역협회)

<표 3-14>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중앙부처 및 기관 (135)	기타 (15)	수출금융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환위험관리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제도(수출보험공사)
		수입규제대응 자금지원(한국무역협회)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수출보험공사)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KOTRA)
		KOTRA 해외시장조사대행서비스(KOTRA)
		KOTRA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KOTRA)
		KOTRA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KOTRA)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한국무역협회)
		영세업체 수출신고지원(한국무역협회)
		무역운임할인서비스 지원(RADIS, 한국무역협회)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전시 (43)	중소기업종합지 원센터(17)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유통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IT도우미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대덕밸리투자조합(지원)
		시제품제작지원
		통번역 지원사업
		공장설립등록 지원
		해외무역거래사이트 운영
		대덕밸리 서울사무소 운영
		지역상품판매장(TJ마트) 운영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벤처프라자 개최
		시설지원
		기업현장방문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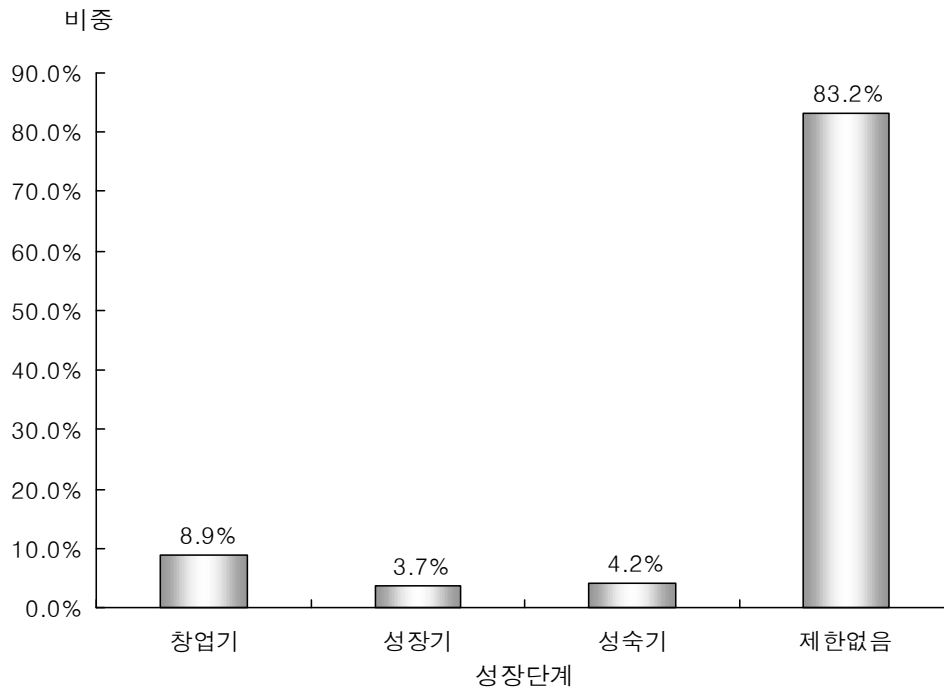
<표 3-14>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기업지원제도 유형(계속)

지원기관		주요 지원제도 유형
대전시 (43)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13)	특구연구개발사업
		대덕특구 테크노마트 개최
		첨단기술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
		특구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
		비즈니스 정보센터 구축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상품 제품 디렉토리 제작사업
		대기업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사업
		해외자금유치지원사업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기술창업 경영지원센터 운영
		특허정보 활용지원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대전테크노파크 (13)	품질인증 및 표준화지원사업
		대전 IT·SW 스타기업 육성사업
		산업재산권출원 지원
		특허정보컨설팅 지원
		해외특허출원 지원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RIS 장비지원사업
		개별전문전시회 지원사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상생협력 Jump-up 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창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u-IT839 전략적 지속성장화 지원사업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의 분포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부분(83.2%)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헌고찰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림 3-2]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분포



제 4 장

현행 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건의

제1절 현행 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

제2절 정책건의

제 4 장 현행 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건의

제1절 현행 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

1. 지원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추진되는 체계를 살펴보면,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본부를 통해 기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산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과학기술국 산하에 경제정책과, 과학산업과, 기업지원과, 투자마케팅과, 대덕특구과, 농업유통과 등의 6개과를 두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대전테크노파크와 같은 2개 기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덕R&D특구의 기술사업화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출연기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있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수의 부서와 출연기관이 존재함으로 인해 보다 세분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들 지원기관들 간에 상호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특정한 체계 없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어떤 특정 목적사업은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대전테크노파크와 지식경제부 출연기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경우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함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기획·추진상에 상호 협조체제가 형성되지 않아 중복된 사업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이 필요한 지원정

책을 탐색하는데 있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즉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기관별로 지원정책의 계획·추진상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비효율성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2.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

중소기업은 그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애로사항과 정책 니즈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창업기에 속한 기업의 경우 인력 및 자금지원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성장기 및 성숙기에 속한 기업의 경우 판로 및 기술개발·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기업들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니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결과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전체 지원정책의 83.2%에 이르는 대다수의 지원정책이 성장단계별 제한이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 16.8%의 지원정책 만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문헌고찰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그 니즈와 정책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과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개발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

3. 지원정책에 관한 통합정보제공 부족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각종 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다양한 지원정책들에 관한 정보 획득상의 어려움을 다수 기업에서 호소하고 있다. 즉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이들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활용방법에 대한 학습이 쉽지 않음으로 인해 그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 내 지원기관 및 지원정책들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주로 오프라인이나 각 기관별 웹사이트의 공지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원의 효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개별 지원기관 별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은 지원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지원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탐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이 존재하게 된다.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정보 시스템인 'SPi-1357'을 활용해 정책 홍보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 각 기관별로 별도의 정책홍보 및 공지를 하는 관계로 각종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하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한 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대전지역 내 자체적인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자사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하는데 있어 1회 방문을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방식으로서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원스톱(one-stop)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 관련 제반 업무 및 상담을 한 장소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루프(one-roof)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지원체계 구축 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4.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개별 지원기관에 의해 지원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앙정보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의 주도로 개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고, 기 구축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지원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수요 혹은 니즈에 대응한 기업 지향적인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인력, 판로 및 수출, 정보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제공과 신속하고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별 지원기관이 지원정책을 정해놓고 기업들은 지원기관별로 찾아다니며 이에 대한 정보를 탐색·활용하는 형태의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개별 지원기관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적합한 지원기관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과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지원기관의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업무별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함으로써 인해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행정업무의 처리에 있어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금, 관련법, 마케팅 및 무역, 경영관리 등과 같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행정가 양성이 필요하며,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재검토하여 기업 지향적인 형태로 재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5. 출연기관의 역할분담 모호성

그간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 및 제도가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 출연을 통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 설립을 통하여 지역 중소

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이 많다보니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 자립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지역 자립형 및 특화형 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대전테크노파크 등의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물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가 존재한다.

이들 대전지역에 소재한 출연기관들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대전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중심형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화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두고,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창업 이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경영 관련 제반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R&D 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특구 내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대덕특구 내 기업·연구기관의 지원에 지원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각각 지원기관별로 본연의 사업목적은 가지고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의 부족으로 인해 기능별로 중복된 지원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연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업무 협력을 통해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하다.

6.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계

기존에 이루어져 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상당부분은 제조업에 치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산업분포에 있어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전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80%에 달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대전시의 경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대전시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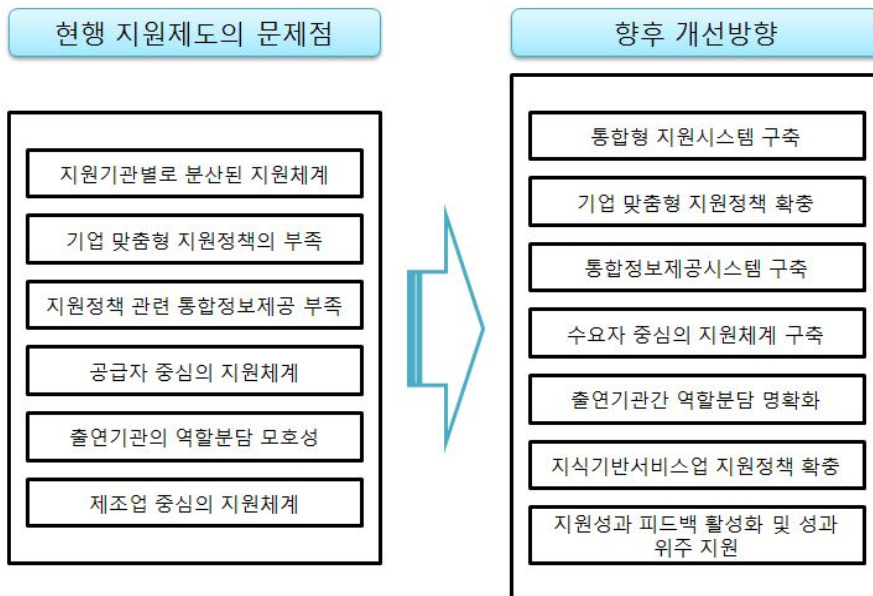
최근 제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성장 및 고용 양면에서 고르게 경제기여도가 높은 반면 제조업은 성장에는 기여하나 고용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중요성에도 그간 정부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지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이 미흡하였다.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진 대전 경제의 향후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2절 정책건의

-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음.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지원체계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절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행 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앞서 살펴본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1] 현행 지원제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제안 1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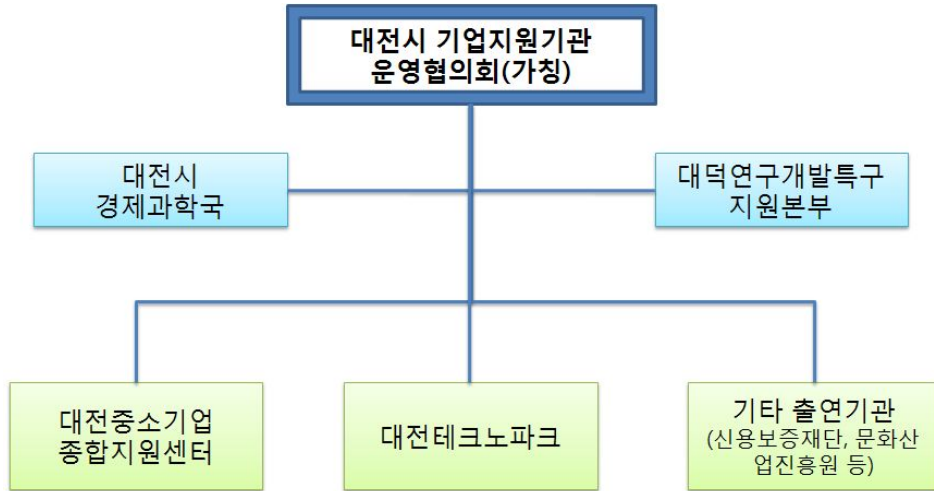
□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다양한 지원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관별·목적별로 유사성이 높은 많은 지원제도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대전시 지원기관들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지원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최소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원제도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대전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대전시 경제과학국,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의 지원주체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각종 지원사업의 분산으로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 주요 사업내용

- 지원기관 간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 지원기관별 담당자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 지원을 통한 신규 사업 기획 시 중복적 추진 최소화
 - 지원기관들의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합적인 지원체계 속에서 운용
- 중소기업 지원정책 운영협의회 구성
 -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 간의 지원사업의 계획 및 수행에 관하여 매개역할 및 상호 조정역할을 수행
 - 개별 지원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협력·조정, 각 지원기능의 충실·강화, 원스톱 서비스 체제 정비 등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한 과제 검토
 -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과 관한 정책 기획·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협의회 구성

[그림 4-2] 대전시 기업지원기관운영협의회(가칭) 운영도



□ 기대효과

- 지원기관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 및 별도의 운영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및 효율적 거버넌스 (governance) 구조 형성 가능

제안 2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충

□ 필요성 및 목적

-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에 관하여 기업의 성장단계 별로 구분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업의 성장단계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기업은 성장단계 혹은 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를 가지게 됨

- 대전지역의 경우, 산업구조 관점에서 볼 때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덕 연구단지 내 다수의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대전지역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의 창업이 활발한 반면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경영·관리적 측면의 애로를 높이 인식함
- 따라서 기업의 성장단계 및 니즈에 적합한 지원정책의 기획과 제공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

□ 주요 사업내용

- 기업성장단계에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은 수익이 없거나 정체수준인 창업기와 성숙기에 속한 기업이 65.6%에 달함
 - 이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창업기 기업에게는 제품 디자인, 시장개척 등의 애로해결을 위한 지원, 그리고 성숙기 기업의 경우 신기술이전, 연구 성과의 상용화 지원을 통한 재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대전지역 기업 특성에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규모에 있어서는 매출 30억 이하가 78.5%, 종업원 20인 이하가 82.5%로 매우 영세한 관계로 독자적인 기술개발이나 시장개척, 디자인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기술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중 특히 기술상용화에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술상용화 부문에 보다 역점을 두고 지원
- 창업 및 경영역량 교육 강화

- 대전지역은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이 핵심역량으로 꼽히고 있음
- 이러한 대전지역의 고유특성들을 반영하여 창업 교육의 활성화, 벤처기업 경영인들의 경영정보 획득 및 공유를 위한 장의 확충, 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등 맞춤형 지원정책의 운용이 필요

□ 기대효과

-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 창업 활성화 유도과 경영안정화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의 양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

제안 3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기업지원제도의 실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대체로 지원시책의 유형, 목적이나 유용성에 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나 활용이 부족한 편임
- 또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들이 담당 지원 기관에 따라 별도로 계획 및 추진되는 관계로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정책들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탐색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됨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경제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
- 대전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산업경제 정보를 정부 기관, 중소기업청, 유관 연구기관,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집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SPI-1357' 이라는 중소기업 정책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대전시 차원에서 제공되는 통합적 정보제공 채널은 존재하지 않음
- 실제로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지원기관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특정기관이 모든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한다는 것도 현행 법·제도 하에서 현실성이 결여됨
- 따라서 대전지역 내 지원기관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들에 대한 정보 및 산업경제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정책 및 경영환경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단순 나열식 정보 제공이 아닌 체계화된 기준과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정보 제공이 필요함

□ 주요 사업내용

- 중소기업 지원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현재 다양한 기관 및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미흡하고, 개별 지원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에 관한 공지를 함으로 인해 기업들의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 최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처럼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업 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경영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용 포털사이트 구

측

- 이는 어느 특정 지원기관에서 전담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운영의 질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대전시 기업지원기관운영협의회(가칭)의 책임 하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 혹은 특정 운영주체에 대한 외주 추진을 통해 포털사이트 운영 및 정보제공이 필요함

□ 기대효과

-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기업의 경영마인드 향상과 지원정책 활용도 향상

제안 4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계획·추진과 관련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개별 지원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실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별 지원기관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개발, 사업화, 인력, 자금, 판로 및 수출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개별 지원기관이 각자의 지원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기업이 찾아가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상당한 비효율과 낭비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지원기관의 조직구조에 있어서도 담당자에 따라 별도의 전담 업무가 존재함으로 인해 수요자 지향적인 편리한 지원 상담과 중개기능이 수행되기 어려움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중개 및 단일상담 창구로서 원스톱 및 원루프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주요 사업내용

- 기업지원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입지, 자금, 신용보증, 판로 및 수출, 인력, 경영정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상담의 일괄 처리
 - 또한 지역 소재 대학, 공공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의 각종 산업지원기관과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통해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행정인력의 확충이 필요
 - 기업과 지원기관, 지원기관간의 연계를 위하여 중개를 담당할 유능한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
 - 기업지원 인력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업을 밀착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이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업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원제도의 수요자-공급자 연계기능 강화
 - 지역 기업 간의 기술교류, 정보교류, 이업종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류회 또는 포럼 등을 지원하여 개별 지원기관이 파악하기 힘든 기업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수요 파악
 - 이를 대학, 공공연구소, 지자체 출연기관 등 기업지원기관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기능 담당

<해외 성공사례>

■ 영국 '비즈니스 링크 서비스(Business Link Service)'

-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 서비스는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서 업계와 정부가 파트너십으로 지역 컨설팅 전문가를 중개·알선해 주는 전국 네트워크임
- 영국 내 42개 주에 비즈니스 링크 운영단(BLO)이 존재하며, 이들 BLO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통합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 정책정보 제공, 2) 기업 진단·평가, 3) 컨설팅 중개 등 3대 기능을 수행함
- OECD에 따르면 비즈니스 서비스가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는 영국이 78.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미국(70.5%), 일본(45.2%)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31.9%에 불과한 실정임
- 2006년을 기준으로 영국에서 약 61만개의 사업체와 18만명의 창업준비생들이 비즈니스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월 평균 100만여명이 온라인 서비스를 방문하였음
- 영국 정부가 이러한 비즈니스 링크 서비스를 통해 지출한 1파운드는 2.26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기대효과

- 공급자와 수요자(지원기관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자(개별 기업지원기관)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지원체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제안 5 출연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 필요성 및 목적

- 대전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별도의 목적사업과 별도의 조직으로 움직

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역할 및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유사중복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 예산낭비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지원정책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재 설립되어 있는 출연기관들은 각기 상이한 주관부서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중복된 지원정책들도 다수 존재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의 3개 지원기관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가 일정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유사중복성이 해소된다면 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지역 내 3개 출연기관들의 경우, 제각기 본연의 사업목적에 의해 설립·운영중에 있으므로 이들을 일원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업의 실제 수요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관별로 발굴·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지원기관 별로 본연의 설립 목적과 전문화된 역량을 토대로 기능별 역할을 분담 및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각 기관들 간의 효율적인 연계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속적·정기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함

□ 주요 사업내용

- 출연기관별 역할 재정립
 - 출연기관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출연기관과 관련한 모든 예산과 행정과 사업을 한 곳에서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통합 관리체제가 구축된다면 출연기관의 통제와 관리, 출연기관의 업무추진의 통일성 및 신속성 등에서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각 출연기관별 핵심기능을 위주로 역할·기능 분담 명확화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각 기관별 역할 재정립 방안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금의 자금투자지원, 기술개발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입지지원, 판로지원, 기타 등의 다양한 역할 중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하고, 주 기능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자금지원, 수출·마케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 대전테크노파크 : 산업단지 조성 및 벤처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전통산업과 첨단산업기술과의 연계 지원에 중점적인 역할 및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 창업지원 및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관 혁신주체 간의 연계를 통한 혁신 클러스터 형성 등의 특구 내 R&D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표 4-1> 지원기관별 기능·역할 재정립 방안

구 분	중기센터	대전TP	특구본부	비 고
자금 융자·지원	◎	▽	▽	●중기센터: 자금융자·지원 관련 창구 단일화 필요
기술개발	▽	◎	○	●대전TP: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중기센터: 기술개발 관련 지원사업 축소
기술이전·상용화	▽	△	◎	●특구본부: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추진 ●중기센터: 기술상용화 관련 지원사업 축소
경영혁신·자문	◎	▽	○	●중기센터: 중소기업의 경영관련 지원사업 전담
인력양성	○	○	○	●각 기관에서 목적별 인력 교육·양성
판로·마케팅·수출	◎	▽	◎	●대전TP: 직접적인 지원 축소
창업보육·입지	○	◎	○	●각 기관별로 분산 지원 필요 ●대전TP: 지역 전략산업별 중점 지원
정보화	◎	▽	▽	●중기센터: 경영안정화 및 자문 지원사업과 연동하여 추진
상담	◎	○	○	●중기센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상담창구로서 중기센터 민원실로 일원화 필요

주) ◎ 주요기능, ○ 일반기능, △ 증가필요, ▽ 축소필요

□ 기대효과

- 대전지역 내 각 기업지원기관별로 고유의 역할·기능을 반영한 업무 재정립이 이루어진다면 유사중복 지원사업의 최소화, 예산 활용에 있어 효율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안 6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정책 확충

□ 필요성 및 목적

- 대전지역의 경우, 전체 산업구조에 있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전체 서비스업 중 65.3%에 달하는 기업들이 영세서비스업으로 분류될 만큼 서비스업 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영세한 서비스 산업 구조를 고부가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우, 현재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므로 대전의 4대 전략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신성장산업의 육성계획, 새롭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주거·산업용지, 그리고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식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대전지역에 콜센터 유치 등 지식서비스 부문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생기고 있어 서비스업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대규모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기존 제조업과 비교하여 인력과 소프트 차원의 인프라만 구비가 된다면 단기간에 성장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업 기반이 강한 대전시 차원에

서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성장 유망분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계획·추진에 있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수요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사업내용

- 지식기반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지원
 - 대학생 혹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한 지식기반 서비스분야 마인드 제고와 우수 아이디어 발굴
 -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역 내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예. 지역전략산업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대전테크노파크),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덕 High-Up(첨단기업 도약) 프로그램(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과 연계하여 창업 및 성장 지원
- 주요 지식서비스 기업 및 조직의 유치
 - IT서비스, 경영·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 주요 선도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식서비스 기업군 비전 제공자 형성
 - 지식기반 서비스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추진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집적지 조성
 -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고차사업서비스업으로서 다양한 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집적지의 조성이 필수적임
 -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관관계가 밀접하므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연계하여 특구 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집적지 구축 필요

□ 기대효과

- 3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는 대전지역의 지식기반 제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향후 추가적인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가능

제안 7 지원성과 피드백 활성화 및 성과 위주 지원

□ 필요성 및 목적

- 앞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는 않았으나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 및 이를 토대로 한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은 지원정책의 효과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
- 기업지원제도의 경우도 기업의 경영활동과 마찬가지로 PDS(Plan, Do, See)의 순환체계 속에서 추진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때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주 지적되어 온 사항이 별도의 사후평가 없이 지원 일변도로 지원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관한 것임
- 사실 기존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은 중소기업들의 지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원 효과성 및 성과를 상당부분 희생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의 해결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에는 충실하였으나 실제 지원성과가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생명을 일정기간 더 연장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이는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지원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현실적 상황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공공정책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예외일 수 없음
-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행에 있어 사업수행 과정 중 중간평가를 정례화하거나 지원효과에 대한 사후검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지원수요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와 정교화 된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과제 평가시스템 구축
 - 사업수행 과정 중 중간평가 정례화
 - 지원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
 - 평가 시 증가된 생산, 고용, 매출 등의 정량적 지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무형의 투자, R&D, 경영혁신, 교육훈련 등의 정성적인 지표도 포함
-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일부 회수 및 성공부담금 조성
 - 수혜기업의 사업수행 책임감 향상 및 도덕적 해이의 제거를 목적으로 지원 사업 수행 후 평가 시 성공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타 기업에 기회 제공
 - 회수금이 기업의 사업 신청 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 참여가 저조하지 않도록 수용가능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사후관리 및 연계사업 발굴·제공
 - 단발성·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마케팅 등의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

- 제한된 사업자금 조건 하에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수혜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 수행 책임감 증가 및 도덕적 해이 감소 가능

제 5 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현재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대전시, 그리고 유관기관 등 다양한 지원기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의 고찰,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들에 대한 포괄적 조사 및 정리,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관점별 분류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지원주체별 혹은 목적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어져 왔으나, 실제로 중소기업은 이러한 지원정책의 존재 및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의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운용에 유사·중복성을 가지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요자의 입장에서조차 이처럼 복잡하고 산재한 지원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수요자 지향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과 동시에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일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의 파악을 통해 대전시에서 주안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하여 모색해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대전시, 그리고 지역 내 지원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대상으로 이들 지원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왔다. 그리고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상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서 보다 세부적인 실행전략 설계에 관한 내용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 및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만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점진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점들이다.

지역 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이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방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기초로 하여 향후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및 실행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에 대한 관련 주체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실수요자인 지역 기업들의 정책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주체들 및 기업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동희, 김상수, 문준연(200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안산시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중소기업연구 제23권 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구자원, 이윤철(2007), 기업성장단계 연구에 있어 변수의 사용빈도 및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 -ser-M Framework을 활용한 생산성요인 도출을 중심으로-(생산성논집 제21권 2호), 한국생산성학회.
- 권기대, 김승호, 구자열(2003), 벤처기업-대기업의 협력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중심으로(대한경영학회지 제35호), 대한경영학회.
- 김선배, 정준호(200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의 효율적 확충방안, 산업연구원.
- 김영배, 하성욱(1999),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실증조사: 핵심 성공요인, 환경특성, 최고경영자역할과 외부자원 활용(기술혁신연구 제8권 1호), 한국기술혁신학회.
- 김종민, 신상복, 유원범(2003),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과 개선방향(전산회계연구 제2권 1호), 한국전산회계학회.
- 김주미(2006),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김창훈(2007), 기업지원 실태분석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박상범(2001), 중소기업의 전략·운영론, 삼영사.
- 서창수, 이춘우(2003), 벤처기업 경영요소 중요도의 조직성장단계별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전략경영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전략경영학회.
- 송무호(2004),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및 단계별 애로사항에 대한 연구(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4호), 한국창업정보학회.
- 심우일(2007), 지방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안두순(200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명제 -애로요인 조사 자료와

- 문헌 서베이 결과를 중심으로-(경상논총 제31호), 한독경상학회.
- 이윤재(1999), 국가정보화기반이 중소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미국사례와 우리나라 중소기업 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중소기업학회.
- 이희용, 박태경(2004),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 오철호(2003), 중소기업정책의 지원체계 개선방향(한국정책학회 특별기획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 오태석(2004), 인천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이병헌(2005),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혁신 전략과 정부의 R&D 지원 효과(벤처경영연구 제8권 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이양현, 심상규(2007),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판별모형에 관한 연구(중소기업연구 제29권 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장영순, 김주미(20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애로요인의 실증적 연구(IE Interfaces 제20권 3호), 대한산업공학회.
- 지용희(1994),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한국기업의 경쟁우위강화방안(경영학연구 제23권 2호), 한국경영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7), 2007년 중소기업 현황.
- 최원용(200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방안: 반월·시화공단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ird, L. & Mechoulam, I.(1988), "Managing Two Fits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3, No. 1, pp. 116-126.
- Greiner, L.E.(1972), "Evolution and Revolution as Organizations grow", *Harvard Business Review*, Vol. 50, No. 4, pp. 37-46.
- Hanks, S.H., Watson, C.J., Jansen, E., & Chandler, G.N.(1993), "Tightening the

Life-Cycle Construct: A Taxonomic Study of Growth Stage Configurations in High-Technology Organiz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pp. 5-29.

Kazanjian, R.K.(1988), "Relation of Dominant Problems to Stage of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1, pp. 257-279.

Kazanjian, R.K. & Drazin, R.(1989), "An Empirical Test of a Stage of Growth Prograession Model", *Management Science*, Vol. 35, No. 12, pp. 1489-1503.

Rutherford, M.W., Butler, P.F., & McMullen, P.R.(2003),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blems over the Life Cycle of Small to Medium-Sized Firms",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42, pp. 321-335.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4th ed., Boston, MA: Irwin.

대전시청, <http://www.metro.daejeon.kr/>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tssc.or.kr/>

대전테크노파크, <http://www.djtp.or.kr/>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http://www.ddinnopolis.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부 록

지원기관별 기업지원제도 요약

1. 중소기업청
 2. 기타 기관
 3.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대전테크노파크
 5.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1. 중소기업청

1) 중소·벤처 창업자금

□ 지원제도 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은 경영혁신자금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용자지원

□ 용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예비창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등은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 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기계공제조합(생산자)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활용하여 융자지원 가능(대출기간은 거치기간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운영)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12),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2)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 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
 -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 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보증서부(기술보증기금) 또는 담보부로 직접대출

- 총 자산 10억원 미만의 신청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기술금융) 위주의 평가를 통해 용자여부 결정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3) 경영혁신 자금

□ 지원제도 개요

- 혁신형 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지원대상

- 시설개선사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사업, 기업간 협력사업으로 구분
- 시설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시설개선사업 용자지원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 중소기업은 용자지원 시 우대)
 -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용자지원
 -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용자지원. 다만,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용자지원
- 지식기반 서비스육성사업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운전자금 용자지원 시 전업률 30% 이상. 단, S/W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 기업간 협력사업은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 기업으로 보지 않음)

□ 용자지원 범위

○ 시설개선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 임차기업의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및 기술개발비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사업

-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기업간 협력사업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등

- 운전자금 : 사업장 가동,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용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시설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용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용자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기업간 협력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 45억원, 참가업체 40억원
- 운전자금 : 추진주체 10억원, 참가업체 5억원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 용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대출 절차
 - 승인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고 협동화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신청
 - 평가 및 승인 : 참가업체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실시 후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 결정
 - 용자지원 및 사후관리 :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서 용자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실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4) 구조조정 자금

- 지원제도 개요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
- 신청대상
 -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회생특례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사업전환지원사업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사업전환 대상업종 또는 품목(현재 영위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단, 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 또는 품목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회생특례지원사업은 <별표 1>의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또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정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별표 10>의 업종별 용자제외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전환한 기업
 -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

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강력한 자구노력(대주주 감자, 종업원 감축,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기업

□ 용자지원 범위

○ 사업전환지원사업

■ 시설자금

- 생산 및 기술개발시설, 정보화 시스템 및 설비,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회생특례지원사업

-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용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사업전환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용자지원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용자지원 포함)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회생특례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용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1-453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5) 긴급경영안정 자금

- 지원제도 개요
 -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구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은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지원 제외(다만, '07년도에 용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 가능)

-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용자지원 범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재해복구지원사업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 용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 용자지원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어음 매입 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 수출계약 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 1 이내로 5억원 한도 → 수출 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 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용자지원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방식으로 직접대출
- 재해복구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용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042-481-4375),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6)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¹⁾ 발행사업

- 지원대상
 - 신용등급이 B 이상이고, 성장잠재력과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발행금리 : 만기 3~5년, 4.0~10.0%(신용등급별 차등화)
 - 상환방식 : 만기일시 및 분할상환
 - 발행한도 : 업체당 평균 25억원 수준에서 신용등급별 차등화

1)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무보증회사채를 인수 및 유동화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율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발행 절차

- 회사채 발행 → 증권사 인수·대금 지급 → 유동화전문회사(SPC) 양도 → 은행·신보의 신용 보장 → 유동화증권 발행 → 채권시장 매각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042-481-4377),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
(02-769-6893)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으로 육성

□ 주요 지원내용

- 산업·기업은행 등 13개 Inno-Biz 금융지원 협약은행의 신용대출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일반보증 및 기술평가보증 시 우대(100% 전액 보증,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기술보증료 감면, 보증금액 1억원 이하 사정생략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구조개선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의 신인도 평가 시 우대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으로서 정상가동 중인 기업(업종제한 없음)

□ 선정기준

- Inno-Biz 분야별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평가결과(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점수가 B 등급 이상인 기업

■ 개별기술 등급의 유형 :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 방식(Inno-Biz 관리시스템 : <http://www.innobiz.net>)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49),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8) Inno-Biz 인증 코칭 프로그램

□ 지원제도 개요

- 저비용 맞춤형 인증교육 및 코칭을 통해 예비 Inno-Biz 기업의 인증획득 유도

□ 지원대상

- 30개월 이상의 업력 및 기술 혁신성 평가 500점 이상 획득기업

□ 지원내용

- Inno-Biz 인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도를 통해 예비 자가진단의 객관화 및 현장실사 대비 서류준비 및 보완 지도
- 신청업체당 15만원 자기부담(약 30%)

□ 지원절차

- 사업계획공고(중소기업청) → 신청 및 접수 → Inno-Biz 인증 코치 모집 및 신청업체에 코치 지정 → Inno-Biz 인증 실무 코칭 → Inno-Biz 인증 현장평가(평가 주관기관) → Inno-Biz 인증 가능성 향상 유도

□ 기대효과

- 혁신형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건설한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7),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02-2187-9600)

9) 기술혁신 소그룹²⁾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율적인 기술 혁신 소그룹 결성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기술혁신 시스템이 구축된 Inno-Biz를 자발적인 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

□ 지원조건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각 지방중소기업청) → 현장평가(각 지방중소기업청) → 최종 선정(중소기업청 소그룹 운영위원회) → 평가결과 통지(Inno-Biz협회) → 사후관리(Inno-Biz협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4)

2)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공정 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서 기업 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

10)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타당성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과제당 평가 소요비용의 75%를 평가 주관기관에 출연(1,500만원 내외)
 - 매년 2회 신청
- 신청자 부담 25%
 - 중소기업 : 현물 15%, 현금 10%(150만원)
 - 예비창업자 : 현물 20%, 현금 5%(75만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공고(중소기업청) → 신청 및 접수 → 평가지원과제 선정(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 평가협약 체결 → 사업화 타당성 평가(평가 주관기관) → 평가 결과의 활용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8)

11)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업종이 다른 기업간 이업종교류그룹을 결성하여 개별기업이 가진 경영 및 기술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기술 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이업종 교류 그룹 결성 및 활동 지원
 - 교류활동의 자문과 지도를 위한 교류전문가 파견
 - 세미나, 이업종교류 프라자 등 각종 교류활동 지원
 - 기업간 기술융합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업무위탁(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진행(중소기업진흥공단) → 평가 및 사후관리(중소기업청)
- 기대효과
 - 교류그룹 활동으로 다른 업종간의 유익한 경영, 기술정보 교환
 - 회원사간 기술, 설비, 인력 등 자원교류를 통하여 애로문제 해결
 - 회원사와의 기술융합화를 통한 신기술, 신사업 진출 가능
 -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판로 확대 등 비즈니스 기회 확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정책팀(042-481-4435),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 기획팀(02-769-6783),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http://www.koshba.or.kr>, 02-786-5506)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 지원분야

- 일반과제(1년, 1억원) : 단기간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 전략과제(2년, 3억원) : 성장유망품목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공고하는 개발과제

□ 지원대상

- 공장등록 보유 중소기업체
 - 다만, S/W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함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총 소요비용의 75%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20%를 기술료로 회수

□ 사업일정 및 접수방법

- 전략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매년 1월경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4~5월경 업체선정
- 온라인 신청접수(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51),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3)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개발비용의 절감, 개발기간의 단축 등 기술개발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과제로 기초·핵심기술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하

여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

□ 지원내용

- 과제당 2년, 3억원 한도, 기술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 지원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산업기술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및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 참여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각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 심사(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선정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전문기관)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4)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및 공정혁신 범용장비 개발 지원으로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컨소시엄 과제 : 주관기관, 2개 이상 실수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향후 보급·확산을 전제로 개발하는 과제(2년, 5억원, 75% 이내)
- 중소기업 과제 :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과제(1년, 1.5억원, 75% 이내)
- 보급·확산과제 : 동 사업으로 개발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보급

(1년, 5,000만원, 60% 이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대학, 연구소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각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 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선정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전문기관)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5)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1억원까지 1년 이내의 과제를 지원
-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S/W업체, 디자인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 가능
-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술거래·평가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지원절차

- 사업공고/신청접수(중소기업청) → 현장경영평가(각 지방중소기업청) → 기술성/사업성 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업체선정(중소기업청) → 협약체결/자금지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진도/최종점검(각 지방중소기업청) → 완료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후관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4, 4447),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21~3)

16)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결정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업종별 단체(협동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술 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 지원내용

- 기술연구회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4억원(연 2억원)까지 지원
 - 민법상 조합형태로 구성하며 사업기간은 2년 이내
- 기술개발 성공시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 지원대상

- 대표회원(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 + 일반회원(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현장실사(각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선정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전문기관)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7)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창업보육센터(BI)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내용

- 과제당 2년, 3억원 한도, 기술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 지정 BI 내 2개 이상의 창업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동일 BI 내 또는 다른 BI와의 창업기업간 동정·이업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BI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컨소시엄(BI 센터장은 컨소시엄 자문위원으로 참여)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현장실사(각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선정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전문기관)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2, 4445),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18)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독창적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5,000만원 한도, 6개월 이내의 과제 지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지 3년 이내인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CI, BI, 제품GUI, 포장, 캐릭터 등)

□ 지원절차

- 사업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현장평가(각 지방중소기업청) → 기술성·사업성 평가(한국디자인진흥원) → 업체선정(중소기업청) → 협약체결/자금지원(한국디자인진흥원) → 중간점검(한국디자인진흥원) → 최종평가(한국디자인진흥원) → 사후관리(한국디자인진흥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4, 4447),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031-780-2082, 2085)

19)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

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정보화 지원사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경영혁신자금 등
- 경영혁신 기술개발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 신청방법 : <http://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을 한 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의한 자가진단 완료 후 신청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연중, 중소기업) → 현장평가(연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경영혁신형 기업 선정(중소기업청) → 사후관리(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연계지원(중소기업청,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지원팀(02-3787-0531)

20) 경영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일정수준 이상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후보기

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활동 촉진

□ 지원내용

- 제조업의 경우, 쿠폰제 경영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위한 R&D 과제
-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기술 및 제품혁신,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 분야	주요 과제내용
서비스 기술 및 제품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서비스 프로세스 및 구조 개발 •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 • 디지털 서비스 개발 등
고객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스템 혁신 • 셀프서비스 • 아웃소싱 • 공동생산모델 개발 등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경영혁신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 획득 기업)
- 지원조건 : 과제당 1억원 한도, R&D 비용의 75% 출연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현장실사(각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선정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지원팀(02-3787-0531)

21)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산업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교육 및 보안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내용

- 산업보안교육 : 보안수준·대상별로 기술유출사례 및 대응방안, 영업비밀관리 등 산업보안교육 실시
- 보안기술개발 : 독립형 보안장비·솔루션 신규개발, 중소기업용 보급형 응용기술개발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산업보안교육 : 혁신형 중소기업, 기업연구소 보유기업, 신기술인증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보안기술개발 : 보안장비·솔루션 개발능력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연구소 및 대학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보안기술개발 : 과제당 1억원 한도, R&D 비용의 75% 출연

□ 지원절차(보안기술개발)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현장실사(각 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심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선정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1)

2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출연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자격

-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1년 이내

○ 지원비율

- 산학컨소시엄(대학) : 정부(50%) + 지방자치단체(25%) + 참여기업(25%)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75%) + 참여기업(25%)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Inno-Biz 자가진단(신청기업) → 신청·접수(신청기업) →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각 지방중소기업청) → 심의·조정 및 확정(중소기업청)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참여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 진도관리(중간점검 등, 각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완료(성과평가, 각 지방중소기업청, 평가 전문기관) →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담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042-481-4459),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23)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주 지원대상 : Inno-Biz 기업, 일정기간 내 Inno-Biz 선정 가능기업
 - 연구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연구전담직원 인건비,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등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Inno-Biz 자가진단(신청기업) → 신청·접수(신청기업) →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각 지방중소기업청) → 심의·조정 및 확정(중소기업청)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신청기업/대학·연구기관/전담기관) → 진도관리(중간점검 등, 각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완료(성과평가, 각 지방중소기업청, 평가 전문기관) →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담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042-481-4458), 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팀)

24)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R&D 장비 사용료를 지원, 공공부문 R&D 장비의 이용극대화 및 중소기업의 장비부족애로 동시 해소

□ 지원대상

- 주관기관과 2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주관기관 : 연구장비(1,000만원 이상) 100대 이상을 보유한 4년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50인 이하 소기업 우대

□ 지원형태

- 정부지원 60%, 기업부담 40%
- 클러스터당 2억원~4억원 내외, 참여기업당 1,000만원 내외
 - 주관기관에 대해 장비운용전문인력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수요자 만족도 및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장비이용료(40%)는 바우처를 구입

□ 지원절차

- 기본계획 수립(중소기업청) → 클러스터 신청·접수(산학연전국협의회) → 바우처 구매(참여기업) →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중소기업청) → 최종평가(산학연전국협의회) → 클러스터 장비이용(참여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042-481-4443)

25)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 지원제도 개요

-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이용 개방

□ 이용개방장비

- 서울지방청을 제외한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전 장비(4,500여대)

□ 이용수수료

- 무료(단, 인증요건 유지를 위한 '설비사용계약'은 제외)

□ 이용절차

- 사전 이용협의(참여기업, 각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 이용신청(수수료 납부)
→ 사전교육 → 장비이용 전 이용장비 이상유무 확인(각 지방중소기업청) → 장비이용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26)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현장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대학, 연구소, 모기업의 전문가 등 전문기술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생산현장 애로기술을 해소·지원
 - 지도비용의 25% 업체 부담, 정부 75% 지원

□ 지원체계

- 신청·접수(온라인) → 예비진단(지도위원) → 선정통보(각 지방중소기업청) → 부담금 납입(지도업체) → 지도실시(지도위원) → 중간점검(각 지방중소기업청) → 보고서 제출(지도위원) → 수당지급(각 지방중소기업청)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27) 제품환경규제대응 기반구축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국제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온라인 진단·교육·정보제공 및 연계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율적 대응능력 확충기반 구축

□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가·업종별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온라인 자가진단, 교육 및 소기업형 유해물질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
- 국제제품환경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순회교육 실시
 - 국제제품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경영 전략 및 기법 등 교육
- 국제제품환경규제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대상분야 : 전기전자(RoHS), 자동차(ELV), 화학(REACH)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SPI-1357을 통한 무료 다운로드 제공
- 특정유해물질 시험분석지원
 - 경기, 부산, 광주, 대전지방중소기업청에 6대 유해물질(Pb, Hg, Cd, Cr+6,

PBB, PBDE) 분석장비의 확충 및 분석지원으로 비용부담 완화 추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042-481-4460)

28)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e-쿠폰제 도입 : 웹(<http://www.smbacon.go.kr>)상에서 중소기업에게 경영컨설팅 쿠폰을 판매하고, 이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컨설팅 서비스 선택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 지원조건 : 정부 50~80% 지원, 나머지 업체 부담
 - 컨설팅 과제에 따라 지원금액 및 보조율 차등 적용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온라인) → 자가진단 및 신청접수(신청업체) → 지원업체 e-쿠폰 구입 → 컨설팅사 선정 및 협약체결(중소기업청) → 컨설팅 실시
- 신청·접수·쿠폰발행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e-쿠폰제 도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1-4553)

29) 사업전환 지원자금

□ 지원제도 개요

-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 시책수단을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지원내용

- 사업전환 무료 자가진단 및 계획수립 지원
 - 사업전환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http://www.sbc.or.kr>)
 -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상담 및 보완
- 컨설팅지원
 - 지원내용 : 사업구조 개편, 재무구조, 신제품개발 등 사업전환계획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컨설팅 비용의 80%)
-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업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8년, 거치 3년, 운전 3년, 거치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 사업전환 절차 간소화,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 정보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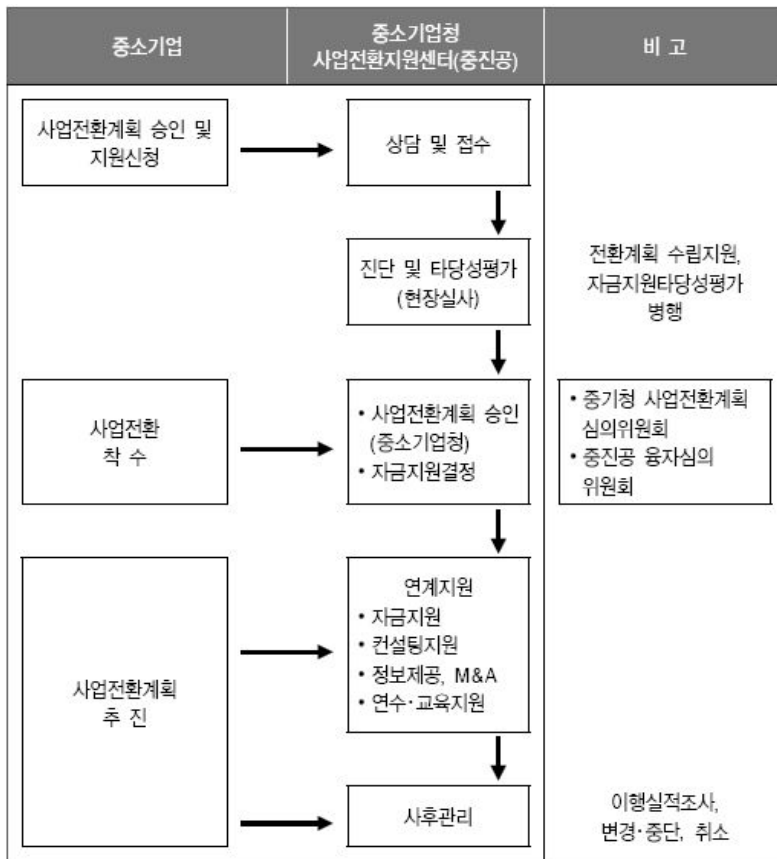
□ 신청요건

- 승인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자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상시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자
- 전환대상 업종 및 품목 전업률이 35% 이상이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적용 제외 업종으로 전환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진행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1-4553)

30)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술품질 등 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규격 인증이 없어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상시종업원 수 20인 이상). 다만, 수출실적 20만 달러 이상 보유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UL(미국), CSA(캐나다), CE(유럽), CCIB(중국) 등 87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TS 16949, TL 9000, AS 9100, ISO 14000 4개 분야(단, ISO 9000 및 QS 9000은 제외)

□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 한도(제품 1인증은 800만원, 시스템 1인증은 300만원 한도)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정액지원(1개 기업당 3개 인증까지 지원)

□ 신청·접수

- 필요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며 평가 및 선정은 5회(3,4,6,8,10월)에 걸쳐 지원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http://smba.standard.or.kr>) 접수 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지방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7),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31)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장등록 기업으로서 공정혁신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공정혁신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구조개선자금 등 차입이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 참여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 공정혁신을 위한 진단 및 설계비용의 50% 이내 지원
 - 2단계: 공정혁신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이내 지원
 - 1단계의 진단 및 설계 지원금을 포함하여 1억원 한도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042-481-4508),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32)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사업

- 지원대상
 - 컨소시엄 개발과제
 - 대학·연구기관, 설비제작업체, 실수요중소기업(3개 이상)이 컨소시엄 구성
 -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
 - 중소기업 개발과제
 - 직무기피요인 해소효과가 크고,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컨소시엄 개발과제
 - 과제당 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2년)
 - 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12.5% 이상)는 참여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개발과제
 - 과제당 1.5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1년)
 - 사업비의 25%(현금부담비율 12.5% 이상)는 기업이 부담
- 신청·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2),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33) 산업기능요원제도

- 지원제도 개요
 -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중소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산업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07년 지원규모 : 현역 4,500명(보충역은 지원규모 제한없음))
- 신청자격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상시근로자 수 : 공업분야 15인 이상, 광업분야 10인 이상)
 - 소기업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

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m² 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 매년 6월 1일~6월 30일

□ 신청·접수기관(광·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

○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신청구비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공장등록증명서 2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추천기준 별 증빙서류 각 1부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매년 6월 1일~6월 30일

○ 심사·추천 : 매년 7월 중 공·공업, 에너지 분야 병무청에 추천

○ 선정 및 배정 : 매년 11월말까지 병무청에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398),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0)

34)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청년미취업자에게 직무교육 및 현장연수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 중소기업

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 인력부족률이 높은 생산직 신청자 우선 지원, 지원대상은 만 29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

□ 지원내용

- 4~5개월간 실무교육 참가
- 수당지급 : 집합교육(2개월, 30만원/월), 현장연수(3개월, 50만원/월)

□ 지원절차

- 채용수요 파악 →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 채용예정기업 현장연수(중소기업) → 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중소기업청, 업종별 조합, 회원기업)

□ 신청 및 절차

- 업종별 조합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채용수요를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한 교육훈련(5개월) 개설·실시 및 교육 수료자 취업 알선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서류 :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신청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2),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78)

35)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산업체와 공고를 연계,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공업고등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써 2005년 이래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지원대상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또는 해당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Inno-Biz 기업 등 정부인정기업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해당 지식기반 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매년 초
- 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부인정서류 사본, 회사소개서, 회사 홍보자료, 기타 입증이 필요한 서류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공고연수생 최소 2년간 채용, 정부지원정책 참여시 우대(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등), 교육훈련 장비구입, 시설설치, 자금 지원우대(연리 1~2.5%)
- 참여학생 : 학자금에 해당하는 훈련비 지급(1년 120만~150만원), 졸업과 동시에 최소 2년간 중소기업 취업, 2년 근무 후 상급학교 진학 희망 시 기업복귀 조건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
- 참여학교 : 자율학교 및 연구학교 지정, 교과프로그램 개발비 및 실습기자재 구

입비, 기타 프로그램 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지원절차

- 참여학교·참여업체 모집(각 지방중소기업청) → 참여학교·참여기업 선정(각 지방중소기업청) → 교육훈련 프로그램 편성 및 교육훈련 위탁계약(학교, 참여기업) → 취업·채용협약 체결(학교·학생, 참여기업) → 교육훈련 지정(노동관서) → 교육훈련 실시(참여학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8)

36)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인력수급 실태파악에서 고급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업종·지역별 조합을 통해 해당 조합원사에게 공동인적자원개발·공동채용활동 등 조합 및 회원사가 원하는 인력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 조합 및 회원사의 인력구조고도화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추진비용을 매칭 지원(정부 70%, 조합 30%), 계속 참여조합은 추진실적에 따라 매칭 비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로 사업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인력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고, 계획 시행의 개시가 당해연도에 가능해야 함

□ 지원절차

- 업종조합 등이 사업을 주관하되, 분야별 전문기관(대학·연구원·전문 컨설팅

기관 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행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512),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79)

37)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 존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국가산업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규모의 편견 등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는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사 연수 : 현직교사의 중소기업의 역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로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우수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 유도
- 공고 2학년 대상 중소기업 이해연수(1박 2일)
- TV 및 라디오 공익캠페인 광고 : 5개 케이블 TV, 3개 라디오 채널 및 공중파 TV를 통한 인식개선 홍보
- 영화관(전국 50여개 극장, 영화시작 전)을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
- 중소기업의 개념, 위상, 역할, 장점 등을 소개하는 경제교재를 제작하여 일반국민에게 배포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392),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1)

38)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 지원제도 개요

-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대한 강의, 우수중소기업 견학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취업을 유도하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5인 미만 가능)
- 인력 : 대학생(휴학생, 전역장병 포함)

□ 지원내용

- 참여학생 : 교육비(30만원 한도) 지급, 대학별로 학점 인정
- 참여기업 : 수출기업화 사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방학기간 중점 지원)
- 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업지원과, 약정 대학
- 신청서류 : 참가 시 신청서, 체결 시 약정서, 완료시 결과보고서, 출근부 제출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업지원과

39)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으로 주거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지원조건

- 제조업 및 해당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소기업 근무기간과 동일직장 재직기간, 무주택기간, 중소기업 근무기간, 직계존속 부양가족, 기타 수상경력 등을 선정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시기는 중소기업 소재 시·도의 주택건설기관에서 공급 공고 시 신청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40)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제도

□ 지원제도 개요

-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인증기업에 인증서 수여 및 마크의 활용(유효기간 : 3년(3년 경과 시 간편 심사에 의해 재인증))
- 학습조직화 구축 등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관련 각종 지원사업 우선 대상 선정(노동부)
- 재직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및 e-러닝 학습 콘텐츠 개발 지원

(지식경제부)

- 100개 기업 산학네트워크 혁신사업에 참여 우선권 부여(교육과학기술부)
 - 산학협력사업의 우선 대상 선정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회원자격 우선 부여(지식경제부)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지식경제부·노동부)
 - 인증 획득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우대(중소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042-481-4512)

41)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고,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또는 일정기간 내 고용예정)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단, 연구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연구소 : 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지원(3명 이내, 6,000만원 한도)
 -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지원(3,000만원 한도)
 - 연구소 운영비, 전담교수 자문료 등 지원(1,000만원 한도)
- 참여기업 : 소요비용의 25% 이상을 부담(현금 또는 현물)
 - 현금부담은 기업부담금의 75% 이상(또는 2,500만원 이상) 부담
 - 현물부담은 연구기자재로서 취득가액에서 현물인정가를 별도 산정하여 계상

■ 참여기업은 자체예산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함(단, 1년 단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참여기업 신청·접수 → 평가 및 선정(중소기업청, 각 지방중소기업청) → 협력 대학 공모 및 선정(참여기업·전담기관 공동) → 사업수행(참여기업·대학·전담기관 간의 협약체결 등) → 사업완료(각 지방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등) →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의 지속지원 등)

□ 접수처

○ 중소기업 소재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업협력팀(042-481-4458), 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팀

42)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홍보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공동 판로개척 지원

■ 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5개 이상 중소기업, 조합 및 법인(참여 중소기업이 5개 이상)

○ 지원방식

- 개발지원(연 1회) : 정부(70%), 민간(30%) 매칭 지원(5,000만원 이내)
- 홍보지원(반기별 1회) : 정부(80%), 민간(20%) 매칭 지원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의지, 결속도, 전망 및 성장성 등
- 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 참여업체의 경영지원(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브랜드전략 교육지원, 협동화 사업 자금지원, 글로벌 브랜드 사업 연계지원 등
- 지원절차
 -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공동상표 개발 신청(상표 대표자) → 실태조사(중소기업청) → 지원대상 선정·통보(중소기업청) → 상표개발 업체 선정(상표 대표자) → 공동상표 개발(상표개발업체) → 상표개발 완료보고, 보조금 신청(상표 대표자) → 상품개발비 지급정산(상표대표자, 중소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042-481-4461)

43)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전시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회제공을 통한 판로증대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10개 내외의 업종을 통합하여 연 2회(5월, 11월) 공동 개최
 - 지원내용 : 장소임차료 및 고객유치 홍보비 정부지원
- 지원대상
 -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하여 성장 및 수출유망 품목
 -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 지원대상 선정

-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 지원절차

-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참여단체 모집공고(중소기업청) → 서류심사·종합심사(중소기업청, 선정위원회) → 지원대상 참여단체 선정·통보(중소기업청) → 행사추진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주관단체 선정(참여단체) → 보조금 신청·지급(주관단체, 중소기업청) → 전시회 개최(주관단체, 참여단체) → 개최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주관단체) → 정산 및 잔금지급(중소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042-481-4577)

44)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A/S 불안으로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신인도 제고를 통한 판로확대 지원

□ 지원내용

- 공동 A/S 콜센터 운영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의 제품사용 안내, 소비자 불만접수, 업체연계를 통한 제품 수리·교환·반품

□ 지원대상

- 국내에서 생활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자체 A/S 시스템 구축 업체, 제조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업체, 신용불량 업체 등

제외

□ 추진체계

- 사업지원 및 총괄(중소기업청) → 콜센터 관리 및 운영(중소기업유통센터) → A/S 접수 및 처리(공동 A/S 콜센터) → A/S 처리(수리·교환·반품 등, 중소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042-481-4577)

4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 지원제도 내용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직접생산확인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은 공사에서 분리하여 분리구매토록 하고 있음
-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및 규모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에서 위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66), 각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

4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 지원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도급자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지원내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고 있음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반공사는 2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서 소요되는 해당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분리구매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66), 각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

47)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확

대 지원

□ 지원내용

○ 우선구매 요구대상기관

■ 3,000여개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NEP, NET, GS, 성능인증제품, 조달우수제품

○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

○ 계약방법

■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비목) 및 지명·제한경쟁(성
능인증제품 중 '06.7.1 이후 신청제품)

○ 공공기관의 성능인증, 성능보험제품 구매 시 우대조건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제한·지명경쟁입찰에 우선참가자격 부여

□ 신청·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업안내 자료 : <http://www.smba.go.kr>/정책마당/관료·
수출·공공구매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75), 각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

48)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

- 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 대상품목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 제품, 식·음료품은 제외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필요시 3년 연장)
 - 성능인증 절차
 - 신청(중소기업) → 접수(기술개발제품 적합성 검사, 평가기관) → 구매공공기관 규격 확인 → 공장심사(각 지방중소기업청(시험 불가시 시험연구원 위탁) → 성능검사(각 지방중소기업청(불가시 시험연구원 위탁) → 성능인증 부여
 - 성능인증·검사 수행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 S/W시험인증센터)
 - 성능보험 가입대상 제품
 -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성능보험 운영
 - 보험형태 : 보증보험 형식(보험료 저렴, 보험료율 0.5% 정도)
 - 보험담보 범위 : 제품자체의 교체 또는 수리가액
 - 보험기간 : 납품 후 1년(성능인증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등
 - 신청·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성능보험은 보험사업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75), 각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

49)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인증제도

- 지원제도 개요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GQ)를 부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
- 인증절차
 - GQ마크 인증대상 품목 전담 7개 민간시험연구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거쳐 심사에 합격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인증서 발급
 - 품질인증절차
 - 신청·접수 → 자체검사 → 7개 시험연구원 신청기업 해당 시험연구원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수행 → 인증서 발급요청 → 해당 시험연구원 및 중소기업청이 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평가 시 우대
 -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병역특례요원 배정 시 우대
 - 1인 생산자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58), 7개 전담 시험연구원

50) 공공구매론

□ 지원제도 개요

- 공공기관에 낙찰된 업체의 계약 건을 근거로 하여 100% 무보증 신용대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

□ 신청대상 및 기간

- 7개 공공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 연중 수시

□ 지원조건

- 은행금리 : 일반대출과 비교하여 0.5~1% 정도 저리 지원
 -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및 은행별 조건에 따라 대출금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보증서 생략에 따른 수수료 절감(1% 내외), 선급금 미수령 시 선급금 이행보증 절감(2% 내외)
- 대출한도 : 계약액의 최대 80%(계약액 중 선급금 제외)

□ 신청방법 및 절차

-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우측 중간에 위치한 공공구매론 배너 클릭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
 - 온라인 신청 시 신용평가사, 은행은 업체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공공구매론 온라인 회원가입 및 대출신청(신청업체) → 신용평가 실시(신용평가사) → 공공기관 계약내용 확인(공공기관, 은행) → 상담 및 대출결정(은행, 신청업체) → 대출 협약체결(은행, 신청업체) → 계좌고정(공공기관, 은행) → 계약 이행(납품, 신청업체, 공공기관) → 대금지급(공공기관, 신청업체)

□ 참여기관

- 공공기관 :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 금융기관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신용평가사 :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디앤비코리아,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75), 각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관

51) 제조물책임(PL) 제도 대응지원

- 지원제도 개요
 - 2000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발효되면서 제조, 유통업체가 생산 또는 유통시킨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PL 수준평가 및 PL제도에 대한 교육, 사고발생에 따른 업체부담 최소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 등 지원책 강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PL교육은 해당 시기마다)

□ 지원내용

과제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절차	수행기관
PL 수준 평가	PL수준평가진단 희망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PL Risk 종합진단서비스 제공 •진단비용 25% 업체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신청접수→평가범위협의→사전점검→평가실시→수준평가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인정 및 결과통보 •신청서류 : PL평가수준신청서 1부, 팩스 및 온라인 신청 	(사)한국PL협회
PL 교육	PL교육희망중소기업인(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관련교육수강 사내인재양성프로그램, 온라인교육, PL전문가양성과정, PL수준평가시양성교육 •교육비 25% 업체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PL협회 및 PL교육위탁기관 신청접수→해당 PL교육수강 •신청서류 : 신청서(온라인, 팩스 신청) 	(사)한국PL협회
PL 보험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부품제조업체 OEM업체수입 유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사고발생시 보험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사고발생→가입업체 중앙회.손해보험사 사실통보→사고내용조사→보험금지급 •신청서류 : 중앙회PL보험가입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PL 분쟁 조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 : 기업, 소비자 •알선조정 : PL분쟁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분쟁상담, 알선, 조정/PL분쟁관련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PL사고사례 등, PL관련정보수집 및 제공 등 •손해배상액 500만원 이상 최소설비 비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선/합의알선신청→당사자의견수렴→사고조사→합의알선의뢰→합의알선→합의안 승낙 및 작성→공증 및 이행 •신청서류 : PL분쟁알선신청서(팩스)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한국PL협회(02-2000-5715)

5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신청 전년도 수출실적(L/C 수출실적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제조업 전 업종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업체)

- 지원내용
 - 수출지원기관의 소관 수출지원사항의 우선지원
 - 지원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중소기업청 각종사업에 우선 지원
- 지원절차
 - 신청공고·접수 → 현장평가 → 지정대상통보(지정서 발급)
- 신청·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신청서류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2-481-4474),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53)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 지원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제조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단, 참여횟수 총 3회로 제한)
 - 다만, 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하여 첫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참여횟수 및 실적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에 지원
 - 기초 마케팅 능력 배양 : 무역실무교육, 해외홍보지 상품광고, 동영상 e-카탈

로그 제작, CEO 수출마케팅전략과정, 수출컨설팅 및 통·번역사업 등

- 해외시장 개척 : 국내외 전시회(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해외 시장조사 및 해외 바이어 알선, 해외 지사화 사업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exportcenter.go.kr>)
- 신청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서 등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신청대상업체 선정 → 유관기관 지원 실시 → 추진현황 점검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54)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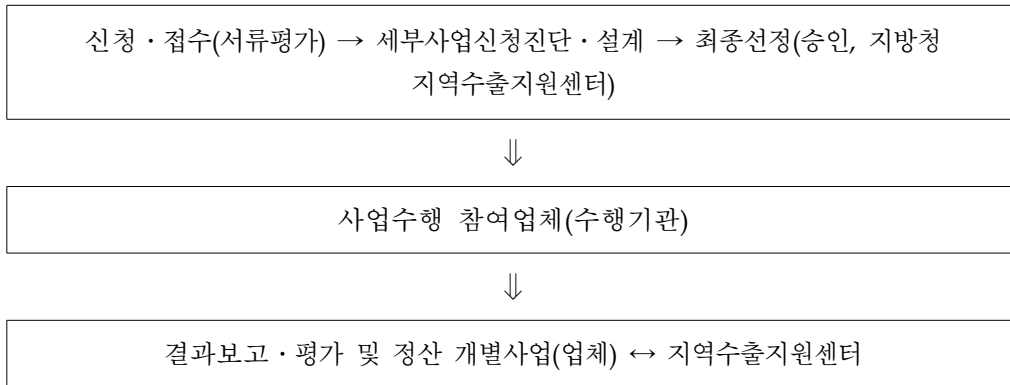
□ 지원제도 개요

-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 수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여 자체 수출역량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기업부담금 10%)
 - 전년도 직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선정기준 : 수출유망성, 경영자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청별로 선정
- 세부 지원내용
 - 수출실무교육, 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추진체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74)

55)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무역협회, 중소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디자인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이 한 곳에 모여 수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처리 해 주는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수출마케팅 지원
 - 아리랑 TV, CJ39쇼핑 등 언론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지원
 - 홈페이지, 수출용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EC Plaza)
- 교육지원
 - 무역실무 기초교육 지원(수출현장 전문인력 활용)
 -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전문분야는 외부전문가 활용

- 외국어 통·번역 지원
 -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전문분야 통·번역(대학 등)
 - 카탈로그, 서신, Offer Sheet, L/C 등 번역
 -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 계약 등 국매 방문 시 통역 지원
- 산업디자인지원
 - 기술지도사업과 연계하여 Mock-up 제작
 - 디자인진흥원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인터넷 무역지원
 - 영문 홈페이지 제작, Inquiry-Offer 관리 Tool 제공
 - 해외 바이어 정보 제공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56)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

- 지원제도 개요
 -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 제품을 Global Brand로 육성하여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향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또는 수출실적 500만 달러(혁신형기업은 2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브랜드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기업 브랜드 경영실태에 대한 컨설팅(진단)에 따라 해외 타겟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의 해외마케팅을 지원

□ 지원조건

-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세부 사업별 참여형태에 따라 최대 1억원(매칭 비율 50%)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브랜드 전문기관 모집·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업체 모집·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 브랜드 전문기관과 업체간 계약(사업자와 참여기업) → 실적평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4493),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724)

57)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전문업종 중심으로 해외 유명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파견하여 구매력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단체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및 단체 등

○ 지원내용

-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 부스임차료 및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등 공통 경비
-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버스임차료, 통역비, 바이어 섭외비 및 광고비,

통신비 등 공통경비

□ 추진체계

-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전년도 12월) →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1~12월) → 파견후속지원 및 결과보고 → 사후정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
(02-2124-3221)

58)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하여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거점과 BRICs, 중동 등 신흥시장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

- '98년 시카고에 최초 개소 후, 현재 6개국 9개소 운영 중

□ 지원내용

- 현지 마케팅 고문, 법률, 회계 고문을 활용한 자문 제공
- 현지수출거점으로 활용가능한 사무공간(3~4평), 공동회의실, 사무용집기, 전화·인터넷 등 사무여건 제공
- 현지진출 기업에 통합 물류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단기 출장직원의 비즈니스 편의 제공

□ 입주업체 선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업체 선정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954)

59)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주요 수출지역에 신뢰성과 전문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인력 및 정보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진출 성공가능성이 큰 업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사업으로서 수출·해외투자를 위한 시장조사, 협력파트너 발굴, 계약 성사 등 컨설팅서비스 제공
 - 해외유통·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도 '06년부터 민간해외지원센터에서 통합 지원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60~80% 지원(일반기업, 혁신형기업, 수출초기기업 등에 따라 차등)
- 지원한도 : 지역별로 1,000만~1,600만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센터사업자 모집·평가 → 지원업체 모집·평가 → 센터사업자와 업체간 계약 → 센터별 실적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02-769-6722)

60)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 지원제도 개요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 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조사 요령 및 시장특성 분석, 세일즈기법 강화 등 현장실무 중심의 국내교육 및 중소기업 현장연수 실시
 - 국내교육 3주간(미취업자는 배제하고 근로자 위주)
- 국내교육 이수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KOTRA, 해외무역관, 해외지사 등에 파견(기본 6개월, 300명)
- 파견 개척요원은 중소기업 자사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상담 및 수출계약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출능력 배양

□ 지원대상

- 근로자 45세 이하, 인턴사원, 미취업자 40세 이하(단, 근로자는 공고일 현재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하며 인턴사원, 미취업자는 대학 재학생 제외함)
 - 다만 동 요원으로 1회 이상 선발, 파견된 자는 제외(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외부 공인성적서 보유(영어 TOEIC 600, TOEFL 500, TEPS 530, 중국어 6급, 일어 JPT 600 이상)

□ 지원내용

- 국내교육비 및 왕복항공료 전액지원, 실적우수자 성과급 지급
- 현지 체재비는 참여기업의 수출능력별로 차별화 지원(50~100%)

□ 지원절차

- 사업시행 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개척요원 및 후견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각 지방중소기업청) → 1차 서류심사(각 지방중소기업청) → 2차 면접·필기전형(중소기업청) → 최종합격자 발표(중소기업청) → 국내교육 및 중소기업 현장연수 실시(연수원, 각 지방중소기업청) → 해외파견 및 현지활동(KOTRA 수출인큐베이터 등) → 사후관리(중소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65),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지원처 (02-769-6727/25)

61) 해외규격 인증취득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L/C 개설, 원자재 구매 자금지원 등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지원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까지 지원

구분	지원비율	자체 부담비율	수출실적
수출초보기업	70%	30%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수출유망기업	40%	60%	수출 10~500만 달러

□ 지원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등 5개 분야

□ 지원절차

- 신청(각 지방중소기업청) → 지원업체 평가·선정(각 지방중소기업청 선정위원회) → 협약체결(중소기업, 관리기관) → 인증획득추진(중소기업, 컨설팅기관) → 인증획득, 완료보고, 출연금 지급(중소기업 및 컨설팅기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65), 각 지방중소기업청

62)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정보화 전문인력(IT 코디네이터)을 통해 신청기업의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사전진단을 통한 과제 발굴
 - 정보화 전문인력(IT코디네이터)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성과평가 및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 정보화경영체제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영체제 규격과의 부합성 평가(인증)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기업은 제외됨
 - 유형·향락업, 숙박·음식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질서문란자로 관리 중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사업수행 감리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총 사업비용의 50% 범위 내(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

□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정보화진단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i-sme.kimi.or.kr>)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전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T코디네이터)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수행(IT업체) → 평가 및 선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정보화진단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IMS기관에 배정한 후 사업 착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02-3787-0452)

63)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시스템 혁신으로 비용 절감,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생산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S/W 개발 및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비용
 - 시스템 구축형태 : MES(제조실행시스템), POP(생산시점관리), CIM(컴퓨터통합생산), SCM(공급망관리), PDM(제품정보관리) 등

□ 지원대상

-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5,000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년 1/4분기 중 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 공장 소재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i-sme.kimi.or.kr>)
- 신청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표, 사업계획서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 및 선정(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성과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수행(IT업체) → 협약체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T업체, 중소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기반팀(02-3787-0481)

64)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업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정보화 클러스터화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조합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촉진

□ 지원내용

- 조합 회원사의 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유과제 선정지원
 - 조합 포털사이트, 전자카탈로그 구축
 - 전자상거래시스템, 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클러스터 내 유관기관(지자체, 대학, 연구소, 회원 중소기업 등) 간의 협력 네트워크화 기반구축 등

□ 지원대상

-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 제조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 사업, 정통부 업종별 ASP 사업 선정단체 등 유사사업의 정부지원을 받은 단체는 참여 제한

□ 지원조건

- 클러스터 당 최대 2.5억원 이내 정부지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중소기업청) → 클러스터 신청·접수(중소기업중앙회) → 클러스터 선정(정보화추진위원회) → 사업결과 완료확인(중소기업중앙회) → 사업수행(지원기관) → 협약체결(중소기업중앙회, 클러스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508),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화지원팀 (02-2124-3158)

65) 정보화 혁신 전문기업(TIMs)을 통한 정보화 일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을 주대상으로 하되, 50인 이하라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기업은 지원

□ 지원내용

- 기본형
 -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 구축(ERP, KMS, SCM, CRM, EIP, 그룹웨어 등)
- Trigger-Ring형
 - 모기업 책임 하에 2,3차 협력업체(중소기업)의 정보화를 공동 추진

□ 지원조건

-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기업당 5,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이내에 S/W 구입, 컨설팅비용 등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상반기)에는 1/4분기 중 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i-sme.kimi.or.kr>)
- 신청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표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481~4)

66)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임직원들을 정보화 전문인력으로 재교육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문인력 부족 해소 및 자율적인 정보화 촉진여건 조성

□ 지원대상 및 교육내용

- 산학연계교육, 현장방문교육 및 이러닝(e-learning) 교육 3개 과정

구분	산학연계교육	현장방문교육	e-learning 교육
교육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목표	사내 정보화 추진을 위한 실무능력 제고	주문형 교육을 통한 현장으로 지원	격오지 재직자의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방법	교육기관 활용 실습위주 집합 교육	기업, 조합 등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교육수행기관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정보화 전문강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총 교육인원	예산내역에 따라 변경 가능		
1회당 교육인원	예산내역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범위

- 교육비 전액지원(단, 교재비는 교육생이 부담)

□ 지원절차

- 사업공고(중소기업청) → 교육기관 평가·선정(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교육생 모집 및 교육실시(교육기관) → 교육기관에 교육비 지급(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042-481-440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기반팀(02-3787-0481)

67)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 대상업종

- 43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숙박, 음식점 업종, 부동산 및 임대업종, 오락 및 문화업종, 공공수리 및 기타서비스 업종)

□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유형	벤처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기관(창투자, 신기술금융회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할 것 • 최소 5,000만원 이상 투자할 것 •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T 이상일 것 (최소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은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의미 • 기보·중진공으로부터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보증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또는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보증·대출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것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기보, 중진공

- 벤처기업 확인 신청
 - 웹상의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벤처확인증 유효기간
 - 벤처유형이 벤처투자기업과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1년
 - 벤처유형이 연구개발기업은 2년
 - 유효기간 경과 후 벤처기업 확인 재신청 시, 연구개발 기업은 사업성평가를,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기술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042-481-4386)

68) 벤처빌딩 지정제도

- 지정요건
 - 전용면적이 1,200m² 이상인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층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 집적시설은 '先지정 後요건충족'인 제도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의 일부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4개 이상의 벤처기업(최소충족요건),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연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정절차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신청방법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벤처법 제22조에 의거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건축비의 1%)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이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됨
- 세금 및 부담금의 감면
 - 벤처빌딩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함
 - 벤처빌딩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립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을 면제함
- 벤처빌딩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입주비용지원제도
 - 협동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 조건으로 자금지원 가능
- 벤처집적시설 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구분	감면내용	비고
법인세 (소득세)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조세특례법 제6조
등록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100% 감면	조세특례법 제113조
취득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 감면	조세특례법 제114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조세특례법 제115호

□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구분	감면내용	비고
등록세	•대도시* 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증가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취득세	•대도시* 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3배 증가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재산세	•대도시* 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5배 증가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 : 대도시 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함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용자사업처(02-769-6885)

69) 창업보육사업(BI)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및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에게 개인·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등을 통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제도

□ 입주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입주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 대기업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외국인인 발생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휴·폐업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기타 이사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기간

- 6월 이상 2년 이내(보육센터 운영자와 입주자간 협의하여 연장 가능)

□ 입주신청 및 입주조건

- 보육센터와 입주자간의 계약에 의함

□ 지원내용

- 시설지원

- 개별보육실로 공동이용공간(공동작업장, 회의실, 전시실 등)과 공동이용설비
(범용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설비, 사무기기)

- 지도연수

-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

- 시험, 분석, 설계, 제작 등 기술분야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허용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도시형 공장설치자)은 공장등록 가능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12)

70)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 지원제도 개요

- 확장사업비
 -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한 보육센터의 확장 건립을 지원
- 운영비
 - 보육기업의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센터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등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 지원조건 및 규모
 - 확장사업 : 사업자당 최고 15억원 이내
 - 운영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보육센터
 - 보육센터의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될 것
 - 운영비 지원 : 사업자당 최고 5,000만원 이내
 -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 지원절차
 - 지원계획 수립·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접수(사업자, 각 지방중소기업청) → 1차심사 및 추천(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 자금지원신청(사업자, 각 지방중소기업청) → 선정결과 통보(각 지방중소기업청, 사업자) → 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중소기업청) → 자금지원(각 지방중소기업청, 사업자) → 사후관리(각 지방중소기업청)
- 지원시기
 - 확장사업비 : 2월초 공고, 3월 중 지원
 - 운영비 : 2월 초 공고, 3월 중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13)

71) 기술창업패키지 100 운영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자금, 입지, 경영·기술지원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

□ 강좌기관 지정

- 창업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 지원시스템 및 노하우를 갖춘 창업교육기관

□ 교육내용 및 방법

- 기업가적 자질함양, 창업실무 능력제고, 업종별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교육
- 교육과목은 창업기술(96시간), 업종심화(24시간), OJT(100시간 이상) 교육

□ 교육 사후관리

- 교육수료자에게 교육, 자금, 판로 등을 패키지로 집중 교육 및 창업성공을 위한 사후관리(교육 우수자 순수 신용대출)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12)

72) 엔젤투자마트 개최

□ 지원제도 개요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 지원절차 및 방법

- 투자마트 참가 희망업체 모집
- 모집업체에 대한 평가 및 선정

- 지역별로 투자마트 개최
- 투자완료 시까지 사후관리
 - 사업주체 : 한국컨설팅협회 사무국(엔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 결성된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결성된 엔젤투자협력체)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042-481-4421, 042-471-0291)

73)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결성 시,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원활한 투자조합 결성을 유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지원
- 제도내용
 -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결성된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
 - 투자조합별 주요 투자대상
 - 창업투자조합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
 -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기타 투자조합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주요 투자방법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지분의 취득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 지원절차

- 출자공고(한국벤처투자) → 투자조합 결성 신청(창업투자조합 등) → 심사 및 투자조합 선정(한국벤처투자) → 투자조합 결성(창업투자조합 등)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행(투자조합)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042-481-4422, 4417)

74)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사업계획승인 신청대상

-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
- 등록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74개 인허가(36개 법률) 일괄 승인처리

□ 처리기간

- 사업계획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민원사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보완서류 소요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처리절차

- 창업자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군·구 창업민원실) → 인허가사항 처리기관에 협의요청 → 협의결과 창업민원실로 통보 → 창업사업자에게 승인통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09)

75)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제도

□ 지원제도 개요

- 창업기업이 컨설팅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상담회사에게 컨설팅 지원을 받는 제도
 - 컨설팅 비용의 80%는 중소기업청 지원
 - 업체 부담금 중 7%는 세액공제

□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사업타당성 검토	업종·규모·기업형태 등 사업계획의 합리성·사업성·기술성 등 검토	300만원
창업절차 대행	-법인설립 대행 -사업자등록신고 및 관련 인·허가 대행 -조세감면 검토 및 세액감면신청 대행 -창업초기 경영상담	100만원
창업공장설립 대행	입지선정, 창업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검토, 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 승인) 신청대행, 조세감면 검토	500만원
경영·기술 지도	창업초기 기업의 경영·인사·재무·판매관리, 기술지도 등	500만원

□ 신청·접수

- 웹사이트(<http://www.smbacon.go.kr>)에서 중소기업회원가입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인터넷으로 접수
- 컨설팅 신청업체 모집은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042-481-4553)

76) 소기업지원제도

□ 소기업 적용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하는 기업
-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소기업 중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m²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 창업투자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으로 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봄
-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

-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금 5,000만원 미만으로도 가능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77)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도·소매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개별 컨설팅 지원(자영업 종합컨설팅)
- 소자본 및 업종별 실전창업강좌 개최
- 현장입지분석서비스, 사업계획서 검토 등 소자본창업에 관한 제반 사항

□ 센터설치운영 현황

- 설치센터 : 전국 76개소
- 주관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팀
- 총괄운영 : 소상공인지원원(1588-5302)
- 위탁운영 : 지자체(시·도)
 - 시·도별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위탁 운영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팀(042-481-4569), 소상공인지원원(1588-5302)

7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 지원제도 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 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급

□ 지원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중 일정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폐업공제 : 공제가입자의 폐업, 사망 시 일정한 폐업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 : 법인대표 지위의 공제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해 법인의 임원에서 퇴임 시 퇴직공제금 지급
- 노령공제 : 10년 이상 공제가입 기간이 경과하고 만 60세에 도달시 노령공제금 지급

□ 부금종류

- 최저 1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각 지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팀(02-481-4566),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사업추진팀(02-2124-3267~8)

79) 자영업 5단계 패키지 창업지원

□ 지원제도 개요

- 건전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창업 전 단계에 걸친 철저한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자영업 창업성공모델 정착 목표

□ 지원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자영업 창업 예정자를 선정, 컨설팅, 교육, 현장실습,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의 5 단계 패키지형 지원을 실시

- 자영업자 부담 : 1인당 5만원 내외(교재비, 현장실습 등 실비부담)

□ 지원절차

- 모집공고 및 대상자 선발 →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교육이수자 특례보증 → 교육이수 창업업체 사후관리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수처 : 각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영업지원팀(042-472-0551)

80)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

□ 지원제도 개요

- 자영업의 과잉공급 및 준비 안 된 창업으로 인한 사업실패 방지를 위해 지역별·업종별로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

□ 상권정보 제공 내용

- 창업 희망·예정 지역을 인터넷 전자지도에서 실제 상권 형태로 구현, 총 31종의 상권정보 무료 제공
- 879개 세부 업종별로 상권 내 동종·경쟁업소 점포의 개수, 위치, 연도별 증감 추이 등 점포 정보
- 상권 내 연령별·성별 등의 인구정보 및 아파트·병원 등의 주요시설 정보

- 「전국 100대 주요상권 현장조사보고서」, 「상권·입지분석 노하우」 등 발간
- 상권정보 제공 방법
 -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sbdc.or.kr>)의 전자지도 상에서 이용자가 직접 상권을 선택하거나, 100대 주요 상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상권 내의 각종 정보 검색
 - 자영업 예비창업자들은 동 시스템의 상권정보와 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상담사의 '상권·입지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영업지원팀(042-481-4355)

81)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촉진, 공급과잉 업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중심의 컨설팅 지원체제를 구축, 점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 사업내용
 - 자영업체의 시설개선, 매출확대, 업종변경 등 경영개선과 사업전환 촉진 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 → 5배수 컨설턴트 추천 → 협약체결 → 컨설팅 실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수처 : 각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자영업지원팀(042-472-0551)

82)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 주차장, 진입로, 소방도로, 고객지원센터, 캐노피 등 설치
 - 건물 개·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
 - 장옥 개·보수, 건물 리모델링, 내·외부 도색, 바닥 보수, 통신·기계·전기·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 설치
 - 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설치, 시장입구 표식아취 설치 등
- 지원조건 및 한도
 - 매칭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 지원한도
 - 점포수 700개 이상인 시장 : 국비 최대 70억원
 - 점포수 700개 이하인 시장 : 국비 최대 50억원

□ 신청요건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으로서 다음 중 하나인 사업추진주체를 보유한 시장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수처 : 시·군·구 지역경제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042-481-4560/3)

83)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상인혁신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고객 및 매출증가로 상권 활성화 유도

□ 지원내용

- 구조개선공동사업의 활성화 :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배송센터, 물류창고 등 공동시설 설치 및 시스템구축, 상인교육장설치 등
- 시·도별 공동상품권 발행, 시장별 활성화연구용역 지원
- 판로촉진·홍보지원 : 이벤트·홍보행사, 관광상품개발, 쿠폰발행
- 정보화지원 :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브리마켓), 컴퓨터 보급, 공동구매판매
-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상인대학, 맞춤형교육, 단기교육과정(해외연수, 상인워크숍 등), 시장자문 및 점포지도

□ 신청요건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로서 다음 중 하나의 사업추진주체를 보유한 시장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접수처 : 시·군·구 지역경제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042-481-4560/2)

84) 재래시장 시장정비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각종 특례 부여
 - 건물의 용적률·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 특례 적용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공사비 용자
 -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한도, 연리 5.9%, 5년 거치 10년 상환

□ 신청요건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 고객의 증가로 건축물 및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 화재 또는 홍수·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장 또는 건축물이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시설의 보수·수선으로는 시장 또는 건축물의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시행구역 선정절차

- 시장측 : 시장정보사업추진위원회 결성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결의 → 사업추진계획 추천의 신청
- 시·군·구 : 사업계획 등 추천서류(관계부서별)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추천
- 시·도 : 사업계획 검토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고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042-481-4563)

85) 여성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수출유망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의 분야에 지원을 통해 수출능력 향상 및 신규 거래선 발굴
- 여성기업의 특수한 여건과 성격에 맞는 시장개척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유망 전시회 참가지원
 - Houseware, Fashion, Jewelry, Gift, 건축자재 등 해외 유망박람회 집중 지원

- 수출능력 향상 지원
 - 수출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구축(타 지원사업과 연계)
 -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유망박람회 참가지원
 - 산자부 선정 유망 전시회, 국제인증(UFI), 조달제품 전시회 등
- 선정기준
 - 수출실적, 정책호응도,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02-369-0900/0922)

86)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
- 지원대상
 - 월소득 117만원, 재산규모 5,000만원 이하인 자
 -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배우자의 장기실직,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배우자의 심신장애,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만원 이내(지원자 결원시 지원)

■ 융자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대출이자 : 연리 3%(이자는 분기 납부)

□ 지원조건

○ 금리 연 3%(고정금리), 1인당 3,000만원 한도(2년, 단 1회에 한하여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시기

○ 연중(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자금지원신청(여성가장) → 사업계획서 평가(선정위원회) → 임대차계약(건물주) → 자금지원(협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87)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여성창업자에 대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공간, 경영,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지원대상

○ 창업 2년 이내의 업체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보육센터 설치 현황 : 전국 각 시·도별 14개소 설치

- 입주공간 제공 및 시설 설치비, 공동 사무기기 사용, 전문가 POOL 운영 등 창업 초기 지원
-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IP 부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전문가 POOL을 통한 상담 체제 운영
- 여성기업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지원절차
 - 입주신청(입주신청서 제출) → 운영위원회 심사(업종,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입주계약 체결(입주업체 승인) → 입주(입주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원시기
 - 수시모집으로 상시 입주신청서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02-369-0900)

88)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 지원제도 개요
 - 여성유망직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한 여성창업의 활성화
 - 성공기업인과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여고생, 여대생, 주부 등 예비·신규 여성창업자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강의장 임차료, 교재비 등 공통경비 지원

□ 개최강좌 유형

○ 여성신사업에 대한 전문가 양성

- 디지털전문교육 : 애니메이션 및 IT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기술인력 양성
- 문화산업창업교육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재가공을 통하여 문화산업과 전통문화를 연계하여 문화콘텐츠 사업기획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
- 전문가 양성 교육 : 21C 유망직종(웨딩, 파티플래너 등) 전문가 집중 양성

○ 사례 및 실습 위주의 실전 창업을 위한 3단계 창업전문교육

- 이론, 사례(이론중심에 사례를 가미한 교육) → 실습(창업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견학) → 컨설팅(창업 멘토과정을 개설하여 창업가 자질 함양)

□ 개최일정

- 각 강좌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강좌 개최 30일 전 홍보 및 접수 시행

□ 신청방법

- 전화(02-369-0923~5) 신청 및 인터넷(<http://www.womanbiz.or.kr>)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02-369-0900)

89)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연수

□ 지원제도 개요

- 글로벌 수준의 역량과 지식을 갖춘 전문경영인력 양성 및 선진 경영기법 보급

□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임직원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강의장 임차료, 기타 행사경비 등 지원

□ 개최유형

- 여성CEO 경영혁신 교육

- 기업 변혁의 주체로서 여성CEO를 육성하고자 의식의 전환, 경영혁신 교육 등 전문 비즈니스 스쿨 개최

- 여성경제단체 협력 여성CEO 월례 조찬회

-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경제 현안에 대한 고급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의 사고혁신과 거시적 안목 배양

- 여성CEO 전국경영혁신 연수

- 여성경제인의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올바른 경영관 및 리더십 정립

□ 개최일정

- 각 연수일정에 따라 연구개최 30일 전 홍보 및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02-369-0900)

90) 여성기업간 경영노하우 멘토링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업종 여성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1:1 맞춤 또는 그룹별 경영컨설팅 운영

□ 지원내용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경영상담

- 노하우 전수, 마케팅, 판로확대에 대한 의견 교환
- 월 1회 정기적 교류(현장방문)를 통한 컨설팅
- 반기별 멘토링 워크숍 개최
- 멘토링 전략과정 교육 이수 및 네트워크 구축
- 개최유형
 - 1:1 맞춤형 멘토링
 - 초기사업자 여성기업인과 성공요성기업인 간의 멘토링 운영을 통한 경영지도
 - 그룹 멘토링
 - 동종업종 여성기업간 그룹 멘토링을 운영하여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지원시기
 - 지역별 접수 및 행사 추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02-369-0900)

91) 여성이랜서 전문가양성 확대

- 지원제도 개요
 - 여성들에게 이랜서(e-Lancer: 인터넷을 통해 프로젝트를 입찰·수주받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함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전문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함
 - 여성들에게 창업 및 직업 마인드를 고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랜서 역할 모델 제공

-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유경험자들의 조언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이랜서가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이랜서에 관심있는 모든 여성
- 이랜서로 활동 중인 여성
- 직장생활 중인 여성
- 주부 및 여대생
- 소기업 창업 희망 여성 등

□ 지원시기

- 이랜서 양성과정 운영
- 각 교육과정의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연중 신청·접수 가능
- 오프라인 세미나 :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 교육내용

- 일반과정 : 이랜서 기초
- 교양과정 : 콘텐츠 매니지먼트, CS 강사, 창업설계, 웹피디, 마케팅홍보, 쇼핑몰 운영자 등
- 전문과정 : 번역사, 웹운영, 웹콜마케터, 모니터요원, 구성작가 등
- 신규전문과정 : 쇼핑몰창업과정, 라이팅이랜서, 웹카피 라이팅,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등

□ 사업구분

- 이랜서를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 중소기업 및 이랜서의 구인, 구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거래 시스템

-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 진행절차
 - 홈페이지에서의 회원가입으로부터 프로젝트 거래까지 수립된 절차에 의해 진행
 - 해당 교육기간동안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오프라인 세미나 및 수료식에 참가
 - 프로젝트 거래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수행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elancer.or.kr>, <http://edu.elancer.or.kr>)를 통한 인터넷 직접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업팀
(02-369-0900)

92) 벤처투자마트 및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여성벤처기업인과 개인/기관투자자와의 공식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및 제휴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및 경영전략 등 IR 관련 교육
 - 여성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인/기관 투자자 발굴을 위한 IR 설명회
 - 여성벤처기업 경영혁신 성공사례 교육 등
- 신청·접수
 - 기술, 사업성, 내부수행능력, 시장매력도, 수익성, 사업성이 우수한 참여업체 위주로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기업평가

- 1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IR 기업의 2배수 선발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최종 IR기업 선정
- 기업평가·선정 절차 : IR기업 → 1·2차 심사(서류 및 현장실사) → IR기업 선정
- 선정기업의 IR 자료 보완 → IR비용 지원
- 투자기관 IR 자료 배포 및 IR 설명회 개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벤처협회(02-6009-8503)

93) 여성벤처 CEO 포럼

- 지원제도 개요
 - 여성 중소·벤처업계 내부의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으로 여성중소·벤처인들 사이의 정보 교류 및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여성기업간 사업협력 및 효과적 여성중소·벤처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포럼 주제
 - 여성벤처업계 핫이슈들과 산업 내 정책 및 경영과제
 - 글로벌화를 위한 이론적 실질적 접근 방안 및 과제 등
- 개최시기
 - 격월
- 참여대상
 - 신생 여성기업 및 신규 여성기업, 벤처확인기업 CEO 등

□ 참가신청

- 전화(02-6000-8500) 및 인터넷(<http://www.kovwa.or.kr>)에서 참가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30), 한국여성벤처협회 사업팀
(02-6009-8503)

94) 여성특화창업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창업한지 2년 이내의 업체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보육센터 전국 14개소 입주 시 우대
 - 입주 공간 제공 및 시설 설치비, 공동사무기기 사용, 전문가 POOL 운영 등 창업 초기 지원,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IP 부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여성 기업 지원 참여시 우대

□ 지원조건

- 입주업종 : 지역경제와 밀접한 특화 산업군을 형성
- 입주기간 : 기본입주기간 1년(최대 3회 연장가능)

□ 신청·절차

- 접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전시품목상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부인증서 등
- 신청방법 : 팩스 및 인터넷 신청(<http://www.womenexpo.or.kr>)
- 신청절차 : 입주신청 → 운영위원회 심사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95),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95) 도전 여성스타기업 선정

□ 지원대상 및 응모자격

- 예비창업자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 창업자 개인 또는 팀
- 우수 비즈니스모델 부문 :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여성스타기업 부문 : 창업 3년 이상 여성기업으로서 매출, 고용, 기술개발에 뛰어난 기업

□ 지원내용

- 포상 종류 및 인원 : 대상(2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2명)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매년 2월~4월
- 접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각 지회
- 신청절차 : 지역 예선(9월), 중앙 본선(10월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95),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96) 여성기업제품 T-Commerce 지원

□ 지원대상

- 자기브랜드를 보유한 여성기업
 - 국내외 품질인증, 지적재산권 보유, 수출기업화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 지원내용

- TV 홈쇼핑사와 연계를 통한 T-Commerce 지원
 - GS, CJ, 농수산, 현대, 우리 홈쇼핑 등 주기적 상품 선정
- 인터넷 쇼핑몰(우먼비즈몰)의 활성화를 통한 상품판로 확대
 - MSN 쇼핑몰 및 네이버, 옥션, 베스트바이어, 링크프라이스 입점
- 점외 판매(B2B)
 - 정부 및 98개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

□ 지원절차

- 입주신청 → 선정(선정위원회 심사) → T-Commerce 및 우먼비즈몰 입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지원팀(042-481-4495),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2. 기타 기관

1)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점차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연계·육성함으로써 산업집적화 효과(Clustering Effect) 제고를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역산업발전사업(4개 지역 산업진흥사업) : 대구·경북 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 광주 광(光)산업, 경남 기계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동 지역 내 기업

○ 지역산업발전사업(9개 지역 산업진흥사업)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등 9개 지역의 지역특화산업 관련 동 지역 내 기업 및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재단법인

○ 지원 세부내용

4개지역 지역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지역-섬유, 나노·모바일·생물, 메카트로닉스 • 부산지역-신발, 부품·소재, 해양생물 • 광주지역-광(光), 전자부품 • 경남지역-기계·로봇, 지능형 홈네트워크, 생물화학
9개지역 지역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 충북지역-바이오,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차세대전지 • 충남지역-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 전북지역-자동차부품, 기계 • 전남지역-생물, 신소재·조선 • 제주지역-바이오 • 울산지역-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해양 • 경북지역-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 신소재부품 • 강원지역-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 지원내용

○ 생산성 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 집적 등을 위한 부지매입·건축(재단법인 및 입주기업에 한함)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53% 차감('08년 1/4분기 5.1%)
- 지원한도 : 20억원
- 용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상환)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02-6300-5922), 각 지역 창업경영팀, 산학협력팀

2) 산업단지활성화 사업

□ 지원사업 개요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 및 설비자동화, 업종전환 추진기업 지원, 공장의 신·증설, 자금지원 등 기반환경 조성사업 지원으로 구조고도화 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 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우선지원대상 : 산업기반 취약지역 및 미분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이전 관련 비용, 노후시설 개체, 시설자동화, 산업집적 촉진사업 관련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100%까지(단,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 이내)
- 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28% 차감('08년 1/4분기 5.35%)
- 지원한도 : 20억원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상환)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02-6300-5922), 각 지역 창업경영팀, 산학협력팀

3)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 지원분야

- 산학연 및 혁신지원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핵심애로기술개발

□ 지원대상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여도가 높고, 기술·경제·산업적 중요성과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 과제
- 대기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5% 이내(200백만원 이내)
 - 단, 단독개발인 경우 및 대기업이 주관사업자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에서 현금으로 부담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금액의 20%를 성공환수금으로 3년 이내 납부
- 불성실 수행과제의 경우, 지원금액의 100%를 반납하여야 하고, 향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사업 참여가 제한됨

□ 사업비 지원

- 협약에 따라 선금지급 및 중간점검 후 잔금지급,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정산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2)

4) 이전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분야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사업화사업

□ 지원대상

- 경제적 가치는 있으나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로서, 신청일 당시 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특허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등)의 사업화 과제
- 대기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5% 이내(100백만원 이내)
 - 단, 단독개발인 경우 및 대기업이 주관사업자로 기술사업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에서 현금으로 부담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금액의 20%를 성공환수금으로 3년 이내 납부
- 불성실 수행과제의 경우, 지원금액의 100%를 반납하여야 하고, 향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사업 참여가 제한됨

□ 사업비 지원

- 협약에 따라 선금지급 및 중간점검 후 잔금지급,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정산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2)

5) 시제품제작지원사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된 우수 제품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신상품 개발촉진 및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시제품을 제작 지원(양산금형 제외)

□ 지원대상

-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제품 제작도면 또는 Working Mock-up 제작도면을 보유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 금형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이내(5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

- 협약에 따라 선금지급,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잔금지급
- 성공환수금 비징수 과제임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2)

6) 인프라활용연계 시험분석 지원사업

□ 지원분야

-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업간 시험분석 네트워크를 통해 실험실 및 연구개발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술·제품개발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시험분석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분석

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업

- 시험분석에 따른 별도의 기술·컨설팅 필요시 「문제해결 멘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 이내(10백만원 이내/업체당)
 - 1회 지원한도 : 3백만원
 - 주관사업자의 시험분석 비용이 월 백만원 미만일 경우 단일과제로 취급하여 주관사업자는 추진단에 월 1회 비용청구 가능
- 사업비 지원
 - 주관사업자가 사업종료(비용 완납) 후 지원금 지급신청(비용완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성공환수금 비징수 과제임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2)

7)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의 만남을 통한 기업의 인력 확보 및 구직자 취업기회 제공
 - 입주기업에 우수인력의 적기·신속한 공급 및 취업알선을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과 고용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역별 취업알선센터 운영

- e-cluster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 <http://www.e-cluster.net>, <http://www.kicox.or.kr>
- 취업알선센터 홍보용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구인·구직자에게 적기·적정 인력 수급 채널 제공
- 채용박람회 개최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 종업원 수가 15인 이상이며 제조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법인)
-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입주기업에게 기술인력을 지원함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경쟁력지원팀(02-6300-5924) 및 각 지역본부

8) 현장맞춤형 교육훈련 사업

- 지원분야
 - 기술인력의 양성 및 신기술 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 전문직무 분야별 재교육 사업, 기업 기술경영 능력향상 및 교류협력을 위한 CEO 테크노 혁신아카데미 등 혁신클러스터 인력양성 과제
- 지원대상
 - 클러스터 시범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 소재의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공공훈련기관 및 시범단지 내 기업, 단체(협의체)로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경험 등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는 과제
 - 피교육자는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또는 시범단지 기업체 소속 임직원에 한함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 이내(30백만원 이내/1건)
 - 단일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체 교육훈련은 지원 제외
 - 총 교육비용을 피교육생으로 나눈 1인당 교육비용 중 추진단 지원금은 백만원 이내로 함
 - 주관사업자는 미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피교육자에게 교육비 징수 가능
- 사업비 지원
 - 협약에 따라 선금지급 및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잔금지급
 - 결과보고서 확인 및 실태조사, 지출증빙 검토 후 지급
 - 성공환수금 비징수 과제임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3)

9)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 지원분야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문박람회 개최 및 참가, 국내 해외전문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해외 홍보활동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해외 마케팅 연수단 파견
- 지원대상 : 상기 지원분야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 지원기간 : 협약기간 이내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80% 이내(8백만원 이내/업체당)

□ 지원범위

-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마케팅연수단 파견
 - 편도항공료, 바이어섭외비, 상담장소 대여비, 홍보비 등
-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 부스임차료(48m² 이하), 장치비 및 홍보물 인쇄비
- 해외 홍보활동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 실소요 비용

□ 사업비 지원

- 주관사업자가 사업종료(비용 완납) 후 지원금 지급 신청
 - 결과보고서 확인 및 실태조사, 지출증빙 검토 후 지급
- 성공환수금 비징수 과제임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4)

10) 해외규격 확보지원 사업

□ 지원분야

- 수출주력기업,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서 개발완료단계 또는 양산제품 중 수출을 위해 해외규격 취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해외규격 취득을 지원
- 제품규격인증에 한정하며, 시스템인증분야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단, 해외시장진출 등 제품의 특성상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역별 클러스터 추진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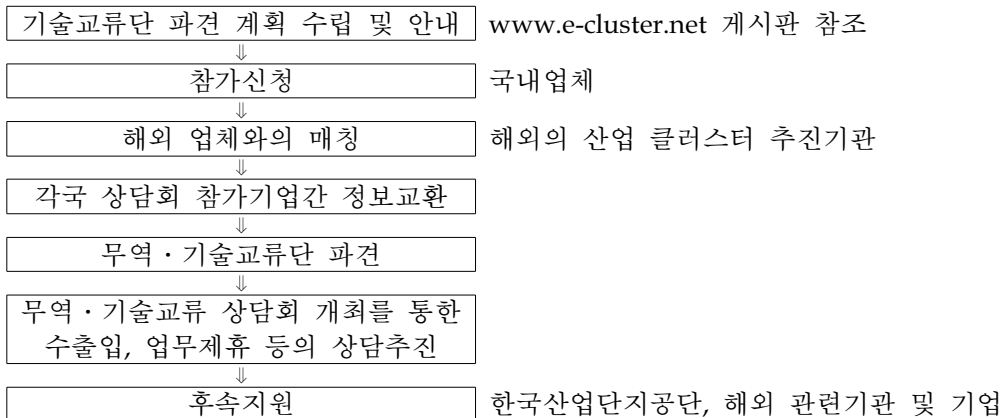
- 양산체제의 상품이나 개발완료단계의 상품을 보유하고, 이들 상품에 대해 해외규격취득을 계획 중인 기업
- 미개발 상품에 대한 지원은 진행단계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이내(20백만원 이내/업체당)
- 사업비 지원
 - 주관사업자가 사업종료(비용 완납) 후 지원금 지급 신청
 - 보고서 확인 및 실제집행내역 정산 후 지원금 지급
 - 성공환수금 비징수 과제임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3)

11) 입주기업 무역·기술교류단 파견사업

- 지원사업 개요
 -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기술교류 지원사업
 - 산업기술 교류확대 등 포괄적 무역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무역·기술교류 상담회」 추진
 - 공동연구개발, 기술교류 및 제휴, 합작, 무역, 투자 등

□ 진행절차



- 지원대상 :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 지원금액
 - 해외 현지 기업활동 관련 제비용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교통, 통역, 상담회장 등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제협력팀(02-6300-5641~3)

12) 미니클러스터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클러스터 내의 세부업종별, 기술별, 완성품 및 부품업체별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포럼, 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
 - 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친 혁신활동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상호협력, 공동학습, 정보공유 커뮤니티를 제공
- 사업내용
 - 애로과제의 발굴 및 해결
 - 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등 개최
 - 각종 경영정보 제공
 - 분야별 클러스터 지원사업 수행
 - 기술, 인력, 마케팅, 법률·특허, 시제품개발, 창업·벤처,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 기업수요 및 애로 발굴 → 해결방안 모색 → 과제해결 및 사후관리 → 운영실적 (과제수행) 관리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4)

13) Inno-Cafe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지역혁신주체간 교류와 미팅이 활성화될 경우, 정보획득 및 거래비용의 축소, 대면접촉을 통한 암묵지 획득,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 발생이 가능함
- 이에 혁신주체간 교류와 미팅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지원서비스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위해 이노카페 및 네트워크 허브 설치·운영

□ 지원내용

- 지역내 산학연 전문가들의 비공식적 의견교환 장소 제공
 - 휴식공간, 각종 간담회와 기술 포럼을 위한 회의공간 제공
- 대학, 지원기관,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opinion leader)를 발굴·확보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공
- 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으로 기업애로 해결 촉진
- 기술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제도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기업지원제도 관련 정보 제공
- 산학연 등 지역 혁신주체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세미나 및 포럼, 각종 설명회, 교류회 및 간담회 개최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5), 각 지역본부

14)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 지원분야

- 국내 : 상표출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 해외 : 해외특허 및 PCT 출원

□ 지원대상

- 우수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에 추진단별로 구성된 전문인력 풀(코디네이터)을 활용하거나 변리사 또는 출원대행기관을 통해 국내외에 산업재산권 확보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금액 : 10백만원 이내(업체당)

구 분	지 급 기 준	지원한도
○ 상표출원	- 건당 20만원 이내(전액지원)	1백만원 이내
○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출원	- 건당 2백만원 이내 (소요비용의 70% 이내)	5백만원 이내
○ 해외특허 및 PCT 출원	- 건당 5백만원 이내 (소요비용의 70% 이내)	10백만원 이내

* 산업재산권을 공동으로 출원할 경우, 주관사업자의 권리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권리지분에 대해서만 지원

* 동일제품으로 상표 및 국내특허, 해외특허 등을 동시에 출원할 경우에는 단일과제로 신청가능(지원한도 이내)

- 사업비 지원
 - 주관사업자가 사업종료(비용 완납) 후 지원금 지급신청 : 결과보고서 확인 및 실태조사, 지출증빙 검토 후 지급
 - 성공환수금 비징수 과제임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2)

15) 제품·포장디자인 지원사업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 동일제품은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 동시지원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제는 선정 제외
- 지원대상
 - 주관사업자와 디자인개발 전문기관(또는 디자인 개발 전문가)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과제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이내(30백만원 이내/업체당)
 - 제품디자인 : 30백만원
 - 포장디자인 : 15백만원
- 지원과제 선정 : 평가위원회 선정 또는 지역별 클러스터 추진단 선정
 - 선정대상 제외 과제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

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사업비 지원

○ 협약에 따라 선금 지급, 사업종료(결과확인) 후 잔금 지급

■ 결과보고서 확인 및 실태조사, 지출증빙 검토 후 지급

○ 성공환수금 비징수 과제임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3)

16) 문제해결 멘토지원(코디네이팅) 사업

□ 지원분야

○ 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 대상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법률, 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전문가 및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컨설팅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 상기 지원분야의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기업

○ 기업에서 멘토지원을 희망하는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추진단 선정을 통해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90% 이내(8백만원 이내/업체당)

○ 비용지급은 코디네이터 수당지급 기준에 준함(단, 법인기업(기관)에서 종합적으로 멘토지원을 할 경우 견적서 금액(계획서 첨부)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동일업체에 대해 사업기간 내 동일분야 중복지원 불가
- 사업비 지원
 -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부담금(10%)을 멘토지원사업자에 온라인 입금
 - 결과보고서 평가 및 현장확인 후 추진단에서 멘토지원사업자에 지원금 지급
 - 성공환수금 비징수 과제임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3)

17) e-클러스터 통합정보망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대학·연구소·지원기관 간 정보의 교류촉진과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자 산학연 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
- 지원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전국 제조업체 정보 수록
 -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정보를 담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과의 연계를 통한 최신 공장등록 정보 제공
 - 기업의 주요 생산제품 정보 수록
 -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인력 및 기술/지식의 집중육성을 위한 대학 및 연구소 정보 제공
 -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정보와 전문인력, 연구장비, 기술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의 제공
 - 자금, 법률, PR지원센터, 민원서비스, 세무/회계 정보 등 기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 통합정보망 웹 주소

○ <http://www.e-cluster.net>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716)

18)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홍보 및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동영상품 제작 지원, 사이버마케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상기 지원분야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및 추진단

□ 지원기간 : 협약기간 이내

□ 지원금액 : 10백만원 이내/업체당

○ 국내홍보 및 판로지원

■ 잡지등 광고·홍보 : 총 비용의 50% 이내(최대 5백만원)

■ 방송광고·홍보 : 총 비용의 50% 이내(최대 10백만원)

■ 국내 전시회 참가 : 총 비용의 80% 이내(최대 2.5백만원)

○ 중소기업제품 동영상품 제작지원 : 총 비용의 50% 이내(최대 5백만원)

○ 사이버 마케팅 지원 : 총 비용의 70% 이내(최대 5백만원)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추진팀(02-6300-5623)

19) 이러닝인증사업 및 도입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이러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이러닝 운영 인프라(H/W, S/W) 지원 및 이러닝 도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러닝 도입과 활용 지원

□ 지원대상

- 이러닝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업종 불문)

□ 지원분야

지원분야	주요내용	지원기간
이러닝 도입 컨설팅	이러닝 도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모델 도출	1회
사이버 연수원 구축	사이버 연수원 구축과 운영 지원 (365일 무정지시스템)	1회
콘텐츠 활용	이러닝지원센터가 보유한 콘텐츠 선택/활용	1회

□ 신청방법

- 이러닝 도입 컨설팅 : 신청방법 및 기간은 별도 공지
- 사이버연수원 구축 : 이러닝지원센터(<http://www.elrc.or.kr>) 내 '기관활동-이러닝도입지원-ASP-도입지원대상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콘텐츠 활용 : 이러닝지원센터(<http://www.elrc.or.kr>) 내 '기관활동-이러닝도입지원-시범콘텐츠' 페이지에서 콘텐츠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02-557-7601~2)

20) IT우수기술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정보통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인 또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기술의 시제품개발 지원

□ 지원분야

- 특허 등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았으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IT기술
- IT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능의 확장·개선을 통해 시제품 개발이 가능한 기술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의 기업
 - 개인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포함

□ 총 지원규모 : 95억원

□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 지원
 - 시제품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출연지원(최고 1.5억원),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업이 부담하며, 이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
 - 시제품개발기간 : 1년 이내(추후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문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42-710-1252, 1521, 1253)

21) IT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 지원제도 개요

- IT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개발과제를 지원(총 지원규모 : 90억원)

□ 지원분야

- IT R&D 발전전략 10대 분야에 대해 38개 세부분야 지정
- 우수기술지원사업 연계 지원(지원규모의 20% 이내)
 - 자유공모로 우수기술지원사업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되, 시제품 평가결과가 '우수'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은 참여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은 제외

□ 지원내용

- 정부와 수행기관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금은 과제별로 최고 10억원, 주요 연구개발비 합계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 인건비에 상응하는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상기 지원은 해당과제 종료 후 정부지원금의 30%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출연정률기술료제)으로 지원
-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1년 이내이며, 과제의 특성에 따라 2년까지 가능
 - 단, 과제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부지원은 초년에 한하여 지원
- 공동연구인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목표(내용) 및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이상을 수행해야 함

□ 문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42-710-1251~4)

22)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용자

□ 신청대상

- IT분야의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IT 중소기업

□ 용자규모

- 총 1,430억원(상반기 : 1,000억원, 하반기 : 430억원)

□ 지원내용

- 용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1.0%)
- 용자한도 :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업체당 20억원까지
- 용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2단계 접수)

- 전산접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ita.re.kr>)에서 고객지원 시스템 하단의 PECoM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 서류접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방문 제출
 - 기술담보대출 신청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평가에 대한 평가수수료 20만원 (예비평가, 본평가)는 신청사업자 부담

□ 문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용자사업팀(042-710-1271~6)

23) IT 설비투자확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 및 중소제조서비스산업 부문의 비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의 IT 설비자금 용자

□ 지원분야

- 경영정보화 설비, 생산공정자동화 설비, 의료기관 정보화설비 등 각종 IT 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입 분야

□ 지원방법

- 일반담보대출 : 과제수행계획서 접수(취급은행) → 선정 및 통보(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취급은행)
- 신용/기술담보대출 : 과제수행계획서 접수(신용/기술보증기금) → 선정 및 통보(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채권보전조치 및 대출(신용/기술보증서를 지참하여 취급은행에서 대출)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재정경제부 공고 금리)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
-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90% 이내

□ 문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융자사업팀(042-710-1271~6)

24)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지원제도 개요

- 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용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용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용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5.4%(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외환, 우리, 신한, 한국씨티, SC제일, 지방은행(광주, 전북,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17개
- 용자지원절차
 -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 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신청·접수처
 -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및 각 지역신용보증재단·협약은행

25) 신용보증 지원

- 제도의 개요
 -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신용력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중개시스템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근거법률 : 1976년 6월 신용보증기금법
 - 수출기업 등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보증기금
 - 근거법률 : 1989년 4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벤처기업 또는 Inno-Biz 기업 보증 전담)
 - 지역신용보증재단

- 근거법률 : 1999년 9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지자체별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 보증 조건 및 보증 한도

- 신용보증기금 : 시설자금은 소요액 범위 내, 운전자금은 연간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3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시설자금은 소요액 범위 내, 운전자금은 연간매출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범위 내에서 업체당 30억원 이내이나 특별보증의 경우 100억원까지 보증 가능

□ 신용보증 신청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률 및 이들의 단체(일반적)로서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별 각 재단의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 보증료

-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보증금액에 따라 가산보증료를 적용하고, 정책지원 대상 업체는 차감보증료율을 적용
- 신용보증기금 : 0.5%~3.0%까지 차등 적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 0.7%~3.0%까지 차등 적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 0.5%~2.0%까지 차등 적용

□ 신용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 보증기관 방문 보증상담 → 신용보증 신청 → 신용조사(보증기관) → 보증심

사(보증기관) →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실태조사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02-710-4571), 기술신용보증기금(02-789-9200)

26) 보험지원 제도

□ 매출채권보험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1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도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별근보험, 개별보험 계약자는 당기 결산기 말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인 기업(포괄근보험 계약자는 2년 이상인 기업)

○ 지원조건

- 외상매출금 : 물품인도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80일 이내
- 어음 : 어음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150일 이내
- 납입보험료 : 포괄근보험(최저 0.1~최고 10%), 개발근보험 또는 개별보험(최저 0.5~1.0%)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한도 : 최고 10억원
-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처 : 신용보증기금
 - 신청서류 : 매출채권보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최근 4분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절차 : 보험상담 → 청약접수 → 신용조사 → 보험심사 → 보험료납부 → 보험증권발급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본점(02-710-4571~84) 및 지점
- 어음보험³⁾지원
- 어음보험가입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 관련 도매업,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인 기업(단, 도매업은 2년 이상)
- 어음발행인 요건
-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어음발행인의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당좌개설이 1년 이상인 기업
- 보험가입대상어음
- 당좌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0일 이내인 기업. 단, 어음발행인이 대기업일 경우에는 120일 이내인 어음
 - 보험청약서 접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가 30일 이상인 어음
 - 책임유예기간 설정 : 보험 가입 후 5일 이내 어음부도 사고 시 책임 면제
 - 보험계약자 한도 : 8억원, 어음발행인 한도 : 3억원
 - 보험금액(보험가일비율) : 어음금액의 60~80%

3) 어음보험제도는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보험료율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율 0.5~5.0% 이내에서 어음발행인,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및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요율 적용

○ 청약절차

- 보험상담 → 보험청약 → 발행인 및 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 보험인수심사 → 보험계약체결 →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교부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2-710-4164)

27)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 활용

□ 지원대상

○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 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건립주택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공사의 건설업,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 300억원 이하 건설업, 가사사용인, 간병인 또는 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외국국적 동포 채용 가능

□ 신청자격

- 고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으로서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5개월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실이 없는 사업주,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사업주

□ 지원시기

- 연중수시

□ 지원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3~7일) → 인력부족 확인서('06. 7. 1 이후 고용허가서와 통합)

발급 및 오기구인 추천(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 근로자
입국(취업교육 및 사업장 배치)

□ 지원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범위 내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28)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연구인력지원

□ 지원제도 개요

-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학사) 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4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써 지정업체에 특혜인력 지원
- 보충역 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가능

□ 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

종류		선정기준	추천권자
기업체 연구기관	대기업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중소·벤처 기업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선정절차 및 방법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연구기관이 매년 7.31까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신청·접수) → 교육과학기술부(검토·추천, 8.31까지) → 선정(병무청, 11~12월)
- 신청기간 : 매년도 상반기(1.21~1.31)/하반기(7.1~7.31)

- 신청방법 : 직접신청 및 등기우편으로 송부(FAX 접수불가), 마감일(1.31 및 7.31) 도착·접수분까지만 유효인정
 - 단, 상반기(1.21~1.31)에는 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2185-8810~9),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02-2124-3121),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2)

29)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정보통신, 전문설계 및 공정기술 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 고급기술인력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외국기술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전업률 30% 이상)나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
- 지원내용
 -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사업 : 비자발급 지원, 입국항공료 지원, 도입 시 체재비 지원(700만원 한도, 기간별 차등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운영팀(02-769-6993~4)

30)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

□ 신청자격

- 미취업자 : 이공계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취득 예정자 포함) 중 미취업자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자격기준

-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30인 이하인 기업
- 정부의 고용지원금(70%) 이외에 고용지원인력에게 정액(3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기관
-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자격기준)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원규모

- 석·박사 : 석사 1,440만원/년, 박사 1,800만원/년(기준연봉 70%)
 - 단, 기준연봉은 석사 2,200만원/년, 박사 2,800만원/년
- 중소기업 : 업체당 2명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신청절차

- 석·박사 고용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인력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http://www.rndjob.com>)'의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직접 등록 또는 지방 채용박람회 참가 등록

- 중소기업 및 인력은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http://www.rndjob.com>)'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찾아 상호간 협의과정을 거쳐 고용확정
- 고용희망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라인 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출력, 공문형태로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문의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인력과(02-2110-5206),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지원팀(02-6009-321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02-2185-8868)

31)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지원(CLEAN 사업)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안전보건시설 개선 시 최대 3,000만원(작업환경 취약업종은 4,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장당 3,000만원(주물·도금·피혁·염색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000만원)
 - 기본보조 1,000만원(무상), 추가보조 2,000만원(투자금액의 50%)
- 지원절차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종합컨설팅을 실시한 후 자금지원 결정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CLEAN사업팀(1544-3088)

32)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인력, 장비)

□ 지원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총 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상주 파견(파견 지원)
-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출장지원 등(기술자문)
-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선진기술 전수)

□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02-3488-5141),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5616)

33) IT협력단 파견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의지가 있는 유망 중소IT기업(연간 15억원 규모)

□ 지원내용

- IT기업 설명회장 및 상담회장 임차비, 차량 임차비 등 지원
- 연 11회 내외 11여개 전략국가에 민·관 합동의 IT협력단 파견
- IT기업 설명회,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개최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참가 신청(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 평가 → 참가기업 선정

→ IT협력단 파견

□ 문의처

- 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02-750-1424), 한국통신수출진흥센터(02-2022-1475)

34)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단,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과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 기업 제외)

□ 지원규모

- 업체당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75% 지원(업체측 25% 부담)
 - 1일 지도수당 9만 7,000원(기타수당 별도)

□ 지원내용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방문지도
- 대기업 퇴직인력 중개센터를 통한 온라인 자문 및 무료 상시상담 제공

□ 지원분야

- 경영전략 : 사업계획 작성, 전략수립 등 경영전략 분야
- 일반경영 : 인사, 노무, 교육, 성과관리 등
- 기술 : 싱글 ppm, 6시그마, 품질관리, 경영혁신 등
- 마케팅·판로 : 국내외 마케팅, 수출입, 해외판로 개척 등
- 재무·회계 : 투자유치, 재무, 회계 등
- 정보화 : 정보화전략(ISP), 정보시스템구축(ERP, SCM 등)
- 기타 : 중소기업 경영 전반

□ 이용절차

- 회원가입(<http://www.kscore.or.kr>) → 퇴직전문인력 검색/선정 → 현장방문 지도 신청 → 승인 통보 → 방문지도 수행 → 만족도 평가표 작성 및 제출 → 완료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협력진흥팀(02-784-8444)

35)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 전보다 월평균 근로자 수가 초과한 경우
- 신규업종 진출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종진출을 완료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180만원, 기업당 30명 한도
- 지원기간 : 신규업종 진출 후 1년간 지원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36)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훈

련·인력재배치 및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 등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다음 달부터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37) 전직지원 장려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 또는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지원수준

-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2분의 1)를 12개월 한도로 지원
- 지원상한액 : 1인당 300만원

□ 지원절차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및 실시 → 실시 후 다음 달부터 매 월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38) 재고용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부터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씩 6개월간 지급

□ 지원절차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39)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지원대상

- 법정시행일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단축 전보다 증가한 경우

-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 지급수준

-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법정 시행일까지 지원

□ 추진방법 및 절차

- 근로시간 단축 → 개정규정 적용 특례신고서 제출 → 근로자 신규채용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40) 교대제 전환 지원금

□ 지원대상

-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 : 2→3조, 2→3.5조(근무조 7조), 3→4조, 2→4조 등

- 교대제 전환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 전환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교대제 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 수 -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 수) * 분기당 180만원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41)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동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CLEAN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 CLEAN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 수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기간 : 1회 한정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42)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전문인력 1인당 1분기 360만원(월 120만원 가량), 기업당 30명 한도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채용 후 1년간 지원
 - 전문인력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5-57호) : 경영기획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경영전략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우수기술·기능인력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43)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지원조건

-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년간 지원
 - 채용 후 6개월 매월 6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급

□ 지원절차

- 채용 후 다음 달부터 매 월단위로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실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44)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고용안정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기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고시 제 2004-42호)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은 노동부 고시 제2004-82호 참조하여 지원대상자별로 정하고,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함

□ 문의처

- 노동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

45)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지원제도 개요

-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지원

□ 지원대상

- 자가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
- 품질인증 및 신기술인증 제품(GQ, NEP, NET 등)
- 특허·실용신안 획득 제품
- 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중간재·부품소재 기업제품
- 지원대상은 제조업체에 한함(단, IT기업은 서비스업도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접수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중소기업) → 사전검토(중소기업유통센터) → 홍보상품 선정(홍보 실무위원회) → 매체별 홍보(안) 제작 → 매체별 홍보 → 업체별 사후 모니터링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시책사업팀(02-6678-9320, 9312)

46) NEP(신기술 인증제품) 인증 지원사업

□ 인증대상 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써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 인증대상 제외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인증유효기간

- 3년

□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자금의 융자지원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
-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등

□ 문의처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02-509-7281~5)

47) GR(재활용 인증제품) 인증 마크

□ 지원제도 개요

-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마크(GR) 부여 및 우선구매 등 지원

□ 지원내용

-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국가품질인증마크 부여
- 인증마크 제품에 대한 내수 및 수출 촉진 유도

□ 문의처

-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팀(02-509-7261~5)

48) 우수제품선정지원(구매, 마케팅 등) 제도

□ 지원내용

- 계약가능한 우수제품은 수의계약(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지원
-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언론 홍보를 통한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 분리발주 확대 추진 : 조달성 감리공사 중 일괄대행공사에 대하여 우수제품 우선 설계·반영

□ 선정대상 및 분야

- 선정대상 :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NET), 신제품(NEP), 전력신기술, GQ, GR 등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품질인증 제품
 - 신기술·신제품 인증제품으로서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 특허·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제품
- 선정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기계장치, 사무기기, 의료기기, 기타 분야

□ 신청·접수

- 조달청(본청, 중앙보급창 및 각 지방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창구

□ 신청서류(각 2부)

- 제품 및 기술명세,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정서 사본, 형식등록·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처

- 조달청 구매제도팀(042-481-7285)

49)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판매 공급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비철금속과 임산물 등 원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보완하였다가 원자재 파동 등 유사시에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지원제도

-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 주석, 니켈, 펄프, 생고무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단체 포함)로서 비축원자재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계획량을 판매

- 외상판매 시 이자율 차등 적용 : 중소기업(연 4%), 대기업(연 6.5%)

- 6개월 외상판매에 대하여 무이자기간 2개월 적용

- 중소기업에 한도지급보증제도 도입 시행

- 한도 내에서는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하는 포괄적 지급보증제도

- 원클릭서비스체제로 구매신청에서부터 대금납부 및 물자인수에 이르기까지 조달청 방문없이 사무실에서 원클릭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

□ 문의처

- 조달청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실(042-481-7184)

50) 우수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e-Marketplace)

□ 지원제도 개요

- 인터넷상에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특허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 지원절차 및 방법

- 온라인(<http://www.buyinvention.com>) 신청
- 우수 특허특제품 이마켓플레이스에 입점 신청 → 품질 평가 → 입점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62)

51)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투자 자금 회수 및 적정 이윤확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권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하여 받은 자

□ 지원체계

- 우선구매 신청(한국발명진흥회) → 우선구매 추천대상 심사 → 우선구매 추천의뢰(한국발명진흥회) → 우선구매 추천(특허청장)
- 심사기준 : 품질의 우수성(기존제품과의 성능비교), 구매효과성(수입대체효과, 능률의 향상 등), 제품의 경제성(예산절약, 경비의 절감 등), 구매대상기관의 적격여부, 기타 제품생산 및 공급능력 등
- ※ '06년부터 우수특허상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제도(NEC)와 연계하여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계

□ 지원대상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 및 승계인
- 전용실시권자 또는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의 벤처기업

□ 지원규모 및 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추천 여부심사를 한 후 수요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 수요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02-3459-2861), 특허청(042-481-8182)

52) 특허법률구조사업

□ 지원제도 개요

- 특허등록(특허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등)을 받은 자로서 학생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소기업, 영세업체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여 주는 제도

□ 법률구조 대상자

-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 제6조 제1항에 근거를 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은 제외),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단독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수행능력이 없는 영세 개인발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사건의 공익적 파급효과가 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로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등임

□ 지원조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사회·경제적 약자가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거나 주장하는데 따른 심판 또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 특허법률상담 → 특허법률구조사업 신청 →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 심사 → 심판 또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무료 특허 법률상담
-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 심판 200만원 이하/건당, 소송 500만원 이하/건당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190), 대한변리사회(02-3486-3486)

53) 무역구제제도

- 구제대상
 -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제도 유형
 -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 덤핑 차액의 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보조금 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 수입수량 제한, 관세율 인상 등 조치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수출입거래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기타 건전한 무역질서 저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을 때 →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 교역상대국의 WTO 규범 위반 사건 조사 → WTO에 제소 등 조치
- 문의처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02-2110-5573)

54) 무역기금 용자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용자대상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지원내용
 - 수출계약 이전단계의 해외시장개척(해외시장개척지원 용자)
 - 수출계약 이후의 수출이행(수출지원 용자)
 - 지원한도 : 3억원
- 지원조건
 - 연 4%, 2년(1년 거치)
 - 수출보험공사 부분보증(80%), 은행자체 신용(20%)
- 지원시기
 - 반기별 1회, 연 2회 시행
- 지원절차
 - 용자신청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
 - 대상업체 추천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11대 국내지부
 - 추천업체 해당기업 및 은행통보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용자확정 : 용자취급은행
 - 수출신용보증서 등 발급 : 수출보험공사 등

- 융자대여금 은행배정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융자실행 : 융자취급은행
- 신처·접수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융자대상수출실적증명서, 추천관련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02-6000-5232) 및 11개 국내지부

55) 수출금융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담보부족 등으로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자금 신용지원
 - 수출계약(L/C, D/A,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소요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리 : 기준금리 연 4.74%(변동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지원기간 : 180일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 수출계약 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2분의 1 이내로 5억원 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과(02-769-6871)

56) 환위험관리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수출, 수입, 외화차입,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내용

- 거래규모가 적어도 외환거래 가능 : 3,000달러 이상이면 현·선물환 거래 가능
- 환율 우대
 -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을 기준환율로 하여 은행 영업점 마진을 없앤 우대환율 적용하므로 대기업 수준의 거래환율 적용
- 선물환거래 보증금 추가 인하 : 3~20% → 0.4~5.5%
- 거래수수료 인하 : 1~5원 → 0.2~2원/\$
- 외환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환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 실시간 온라인 외환거래로 편의성, 신속성, 효율성 제고
 - 환위험관리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여 외부 컨설팅 없이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환위험관리 가능
- 환위험관리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순회세미나, 직원교육, 컨설팅 등 환위험관리 지식과 노하우 제공

- 거래은행 변경없이 선물환거래가 가능한 차액결제시스템 실시
 - 가입업체가 결제은행 변경없이 헤지거래가 가능하도록 차액결제시스템 구축 (05년 3월)하여 가입업체의 선물환거래 편의성 확대
 - 차액결제시스템(Net Settle) : 업체가 선물환 만기 시 전액결제 부담없이 만기 환율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결제하는 시스템
- 지원절차
 - 가입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 → 가입심사 및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 → 외환거래약정(우리은행) → HTS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거래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우리은행 각 지점 및 본부 시장운영팀 (02-2002-4183)

57)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 지원대상
 - 보험 측면에서 필요한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및 기업휴지 등 위험을 종합담보 지원
- 지원조건
 - 가입대상 : 신뢰성 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
 - 담보지역 : 국내 및 해외거래를 담보
 - 보험가입방법 : 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 특정 공급계약(또는 특정 거래처별) 기준
-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신뢰성보험팀(02-399-6128, 5792)

58)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제도

□ 지원대상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중계무역 : 수출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
- 재판매거래 : 국내생산·가공물품,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가공물품 또는 외국 위탁가공물품을 수출자의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지원조건

- 수출기업의 필요에 따라 개별 및 포괄보험으로 이용

□ 지원절차·방법

- 수출단계별(계약체결·제조조달·선적협상·대금회수)로 수출보험 서비스를 제공

□ 이용절차

- 일반적으로 신용조사 → 한도책정(증권발급) → 수출통지 → 보험료 납부 순

□ 신청서류

- 거래현황표, 재무제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주식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인 경우)

□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영업본부(02-399-6571)

59) 수입규제대응 자금지원

□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서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제소를 당해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건당 총 소요금액의 2분의 1 이내)

□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소(피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국 관보 등) 사본 1부, 계약서(변호사·회계사 등) 사본 1부 등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팀(02-6000-5194)

60)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 지원대상

-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내 수출기업

□ 지원내용

-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 추심기관 및 Law Firm 등과 연계하여 채권회수를 대행

□ 신청·접수

- 채권추심위임장 제출(채권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 첨부)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eportingkorea.com>)에서 회원가입 후 채권추심 의뢰서 작성
- 문의처
 - 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사업본부(02-399-6851)

61)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 지원대상
 - 해외무역관을 해외지사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무역관이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출 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제공 등) 4가지의 참가 목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참가목적에 따라(1개 항목선택)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지원(My office 서비스 : 직원을 해외무역관에 파견근무 가능)
- 지원절차
 - 참가희망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신청 →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검토 및 참가업체 선정 → 협약체결 → 자사화사업 시행
- 문의처
 - 서울소재 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213)
 - 지방소재 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62) KOTRA 해외시장조사대행 서비스

□ 지원대상

- 해외시장조사대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업체가 요청하는 유망 바이어정보 등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유료서비스)
- 서비스 구분 및 서비스별 수수료 내역

서비스 구분		수수료	조사기간	비고
거래선 발굴조사	해외투자 잠재합작 파트너 발굴	150,000~ 250,000원	15일	무역관별 차등책정
	사이버상담	50,000원/ 1개 바이어	15일	바이어당 최대 2회 제공
시장동향조사	수요, 수입, 수출, 생산경 쟁, 가격동향, 유통구조 등	70,000~ 160,000원 (항목당)	15일	무역관별 차등책정
해외투자정보 사전조사	물류, 생산, 고용, 환경, 서 류지원 등			
해외바이어 수출대금관련 정보확인 서비스		100,000원	15일	
프로젝트조사 및 기타조사		사안별 결정	사안별 결정	신청시 협의
단순 해외현장 확인 정보		무료	10일	무료서비스

□ 지원절차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신청 → KOTRA 검토 및 선정 → 수수료 납부 KOTRA 홈페이지 Digital KOTRA 상단의 My KOTRA 접속 → '나의 맞춤서비스' 클릭 → '사업신청내역'에서 입금형태 선택 → 납부 → 현지 무역관에 조사 의뢰 → 현지 무역관 조사 → 조사결과 보고서를 조사 의뢰사에게 전달

□ 문의처

- 서울소재 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213)

- 지방소재 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63) KOTRA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해외출장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서비스 구분별 수수료 내역

서비스 구분	서비스 유형	수수료	서비스 내역
출장 지원	단순 지원	무료	호텔예약, 통역알선, 비자지원 중 최소한 한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기본 패키지 수수료 적용
	상담 주선	무역관 별 책정	상담주선에 더하여 출장업체 사전접촉, 출장자료 제공, 호텔예약, 통역알선, 무역관 내 상담장 이용이 제공됨 KOTRA홈페이지(http://www.kotra.or.kr)의 '세일즈 출장지원' 내에서 '무역관별 서비스 내역 및 수수료' 참조

□ 신청·접수

- KOTR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 문의처

- 서울소재 기업 : KOTRA 서울무역관(02-3460-7384)
- 지방소재 기업 : KOTRA 지방무역관

64) KOTRA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대상

- 해외전시회 참가 희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 단독 혹은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업체들의 전시회 참가지원
- 상품전시 및 전 세계에서 내방하는 바이어 상담을 통하여 시장개척을 지원
- 직접소요경비(임차료, 운송비, 장치비 등)의 50% 국고지원. 단, 체재비(항공, 숙박비 등)는 개별업체 부담
- 한국관 면적 임차, 장치디자인 시공
- 기타 행정 서비스

□ 문의처

- KOTRA 전시사업팀(02-3460-7250~9)

65) 수출상품 온라인 홍보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자체 전자 상품 카탈로그 제작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체(단, 협회 신규회원 등 록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e-카탈로그 오퍼(offer) 무료제작 및 전송
- 업체당 최대 5개의 e-카탈로그 오퍼를 제작하여 협회보유 바이어 DB(10만 여개)를 통한 홍보 지원
- 상품 블로그 제작 대행 및 무역거래알선사이트(<http://www.ec21.com>) 상품등록
- e-카탈로그 품목군별 검색 기능지원 대상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02-6000-5534)

66) 영세업체 수출신고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통관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 수출금액 8만 달러 이하 업체
- 이용가능업체 여부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소규모업체 통관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지원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지원내용

- 수출신고, 간이정액환급, 수출신고 취하 및 정정 신청 지원

□ 지원절차 및 신고서류

○ 수출신고

- 신고방법 : 서류 FAX 송부, 늦어도 선적 1~2일 전에 신청
- 수수료는 없으나 EDI 전송료(건당 2,057원)는 업체 부담
- 신고서류 :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 간이정액환급

- 전화상담 후 내방
- 신고서류 : 간이정액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세관 지정 개설은행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02-6000-5339)

67) 무역운임할인서비스 지원(RADIS)

□ 지원대상

- 무역협회 RADIS 가입 회원사

□ 지원내용

- 협력 포워딩업체를 통한 운송서비스
-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2,000여 복합운송주선업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협력포워더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 제휴 관세사업체를 통해 관세율, 상품분류, 관세환급 등의 관세상담 및 수출입 통관업무 할인 서비스 제공
- 개별업체 차원의 투자나 인력투입 없이 주요 해외 수출 거점지역에 위치한 제휴업체의 해외물류센터를 할인가격으로 제공

□ 참여방법

- 회원자격 : 무역협회 회원업체 가입비 및 이용료 무료
- 가입신청
 - 인터넷 신청 : <http://shippersgate.kita.net>에서 RADIS 가입신청 클릭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하주지원팀(02-6000-5384~5)

68) 산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

□ 지원대상

-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

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금리	용자기간	용자 한도액	용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5.0%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 이내	1) 시설자금 • 시설구입비 • 공정설치비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2) 운전자금(지원액의 50% 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 내)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884), 한국전자거래협회(02-551-1459)

69)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핵심 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 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 지원대상 및 기술분야

- 각 세부사업의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4개 지역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광주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9개 지역	강원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사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대전	바이오(생물의약품),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울산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전남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전북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제주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콘텐츠(통방융합서비스)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재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콘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충북	바이오(생물의약품),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재),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세부기준	사업별 적용 여부		
				선도	전략	연계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	○	○
	단독 기술개발	1/2 이내		○	○	해당 없음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	○
	단독기술개발	1/3 이내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기타(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 기관)	공동기술개발 (산·학·산·연, 산·학·연)	3/4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협약기간 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 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함.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기술료율	납부조건
기업	대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5년 균등분할
	중소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분할
기타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분할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5년 균등분할

□ 지원제외 사항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 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지역산업선도기술분야에 한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02-6009-8291, 8161, 8180~1)

3.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 경영안정자금

□ 지원제도 개요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규모 : 1,000억원(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력 6월 이상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우수신제품인증기업, 특허·실용신안권 사업화 기업 등)

□ 지원 제외 업체

- 용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지원조건

- 용자기간 : 2년
- 용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은행 선택 가능
 - 이차보전의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600-223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42-867-4000)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제도 개요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2008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분야 대상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수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처리업 등)
 - 건설업 :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 지식기반 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 지원조건 및 한도
 - 융자금리 : 6.7%(변동금리)
 - 단,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다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 이차보전

- 용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용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600-223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042-867-4000)

3) 중소기업유통업자금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대전광역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업자의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과 시장정비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하여 이들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유통업시설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시장정비사업 자금
 -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시장 우선지원
- 지원대상 사업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점포시설 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 전문상가 설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
- 시장정비사업 : 기존 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

□ 지원조건 및 한도

- 용자금리 : 6.0%(변동금리)
 - 단,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 이차보전
- 용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용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 5억원 이하)

□ 용자조건 및 금액

구 분	용자금리	용자기간	용자금액
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사업 전문상가·공동창고건립사업	6.0% (변동금리)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 내에서 10억원 이하
운전자금	"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 내에서 1억원 이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	15년 (거치기간 5년 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하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042-600-221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업지원종합민원실(042-867-4000)

4) 중소기업 IT도우미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서비스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고 IT 도우미를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청년실업을 해소

□ 지원대상

-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체)으로 정보화 추진 효과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지역경제적 효과, 전담인력 확보 및 정보화 추진 의지 등 별도 선정 기준 마련
- 선정방법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컨설팅 기간

- 3주 내외(기업의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

□ 컨설팅 내용

- 경영컨설팅트를 통한 기업 일반현황 및 정보화 현황 진단
- 맞춤형 고급 정보화 지원(시스템 점검, 홈페이지 개선, 솔루션 도입 자문 등)
- 직원 대상 OA 교육, 솔루션 사용자 교육 등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042-600-2265, 2213)

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에 대하여 해외특허 출원 시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제도

□ 지원규모

- 10억원(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 지원대상

- 국내특허 출원을 완료한 기업으로서 1.5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특허(타 지적재산권 포함)를 출원·등록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1건당 1억원 한도, 연리 3% 고정금리, 3년 거치 5년 상환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600-2231)

6) 해외지사화 사업

□ 지원제도 개요

-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대전시 해외사무소(중국 남경, 심양)를 통하여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알선 등 수출업무를 지원

□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중 특허보유기업, 수출유망기업 등으로 현지 시장성 검토 후 선정

□ 지원내용

- 현지 시장조사, 유력 바이어 발굴 지원,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등

□ 지원규모

- 시장조사비, 출장 및 체재비(해외사무소 관계자에 한함), 운영비 등
※ 업체부담 : 항공료, 숙박비, 현지체재비 등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 문의처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600-3672)

7) 대덕밸리투자조합(지원)

□ 지원제도 개요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특구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내 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9. 18 ~ 2013. 9. 17(7년간), 3년 연장 가능
- 총 소요액 : 총 100억원(1차 50억원, 2차 25억원, 3차 25억원)
-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업무집행 조합원 :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 지원대상

- 대덕특구 내 기업 50%, 대전광역시 기업 70%, 기타 30%

□ 지원내용

- 벤처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술금융

□ 지원방법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방법에 의한 지원

□ 지원조건 및 한도

- 출자약정액의 15% 범위 내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총무팀(042-864-4502)

8) 시제품제작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역 4대 전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전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품 도면 또는 Mock-Up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업체

- 본사나 사업장, 기업부설 연구소가 대전 시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동일한 제품에 대해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 대전 4대 전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및 과제
- 신청내용이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시제품

※ 우대기업

벤처등록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RIS 사업 선장기업(스타기업,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디자인진흥사업 등), 대전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금형제작비 등)의 70% 이내 무상지원
 - 과제당 최고 3,000만원 이하, 연간 2개 과제 이내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042-867-4000)

9) 통번역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전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계약서, 사업제안서, 회사 및 제품소개서 등의 문서에 대한 통·번역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

□ 지원분야

- 언어 : 영, 일, 중국어를 비롯한 통·번역이 가능한 모든 언어(외국어→한글 포함)
- 수출계약서 등 관련 문서 번역
-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및 제품소개서(catalogue 포함) 등
- 외국인 바이어와의 순차통역 등
- 센터 지원사업 관련 통·번역

□ 지원방법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번역 협력업체를 통하여 지원

□ 지원규모

- 번역 요율표에 의한 통·번역료 산정
- 업체당 최대 2회 100만원 지원(초과 시 업체 부담)

□ 지원절차

- 통·번역 신청 : 신청기업 →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통·번역료 산정 : 신청기업,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통·번역 협력업체
- 통·번역 시행 : 통·번역 협력업체 →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통·번역물 송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통·번역 협력업체 →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신청기업(e-mail 발송)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042-867-4000, 4115)

10) 공장설립등록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공장설립·등록시 지역기업을 대신하여 설립할 공장의 입지상담에서부터 신청서 작성, 인허가 신청, 완료신고까지 공장설립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대행 처리

□ 지원내용

- 공장설립 절차와 입지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무료 대행
- 공장등록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대행
-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 컨설팅 및 자료 제공

□ 지원절차

- 신청인(입지상담 및 공장등록 신청 의뢰) →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공장설립승인 신청 및 서류작성·신청) → 관계기관(시·구,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승인) → 신청인(공장건축 준비, 설계도면 작성) → 관계기관(시·구, 건축허가) → 신청인(공장건축(증축)) → 신청인(공장건축 준비) → 관계기관(시·구, 건축허가) → 신청인(공장건축(증축))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042-867-4000)

11) 해외무역거래사이트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관내 중소수출기업들의 인터넷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 개설·운영
- 세계적인 무역알선 사이트인 ec21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인터넷 무역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관련 무역정보를 제공

□ 제공서비스

- 제품홍보 : 제품 종류별 카탈로그 제공
- 업체소개 : 업체 목록 및 소개
- 거래알선정보 : 판매 및 구매 오퍼정보 제공
- 대전 관련 안내 정보제공 : 대전광역시에 대한 영문 정보 제공
- 무역정보 제공 : 무역관련 뉴스, 박람회 정보 및 정책 등 무역지원 정보 제공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042-867-4000)

12) 창업보육실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참신하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업보육실 운영

□ 입주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이내
 - 단, 아래 모집분야에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변경 시 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함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외지전입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기업, 여성대표기업 등 일부 성공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도 입주할 수 있음
- 모집분야
 -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업종
 -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술
 - 타 산업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환경, 산업기기제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기술 등)
- 모집대상 제외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휴·폐업 중인 자
 - 상기 모집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
 -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입주조건

- 임대기간

- 1~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총 3년), 단 사업성 검토 후 적격업체에 한함)
- 부담금
 - 월임대료 : 전용면적 기준 m²당 3,3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월관리비 : 공용면적포함 전체면적에 대하여 m²당 3,49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 월임대료 및 관리비 해당 금액의 3개월분을 보증금 형식으로 계약시 선납하며, 특이사항 없을 시 만기 졸업 시 반환
- 지원사항
 - 인터넷 전용선 지원
 - 지원기관간 업무협약 : 대전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연계한 업무협약을 통한 신용보증 및 자금 알선
 - 재단에서 각종 기술, 경영, 판로, 자금, 법률, 특허, 창업상담 등 정보제공
 - 국내외 기술(제품) 전시회 참가지원
 - 센터 내 다목적실, 종합연수실, 회의실 등 시설물 이용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사업팀(042-864-4502~3)

13) 벤처타운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서 다산관, 장영실관 등의 2개 벤처전용타운의 운영을 통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 초기단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함

□ 신청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업체로 생산화 단계에 있는 기업
- 벤처기업으로 전환 중인 기업
 - 단, 금융신용불량거래자, 공해발생업체, 환경오염 및 타 입주업체에 소음, 악취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체는 제외
- ※ 대전 이외의 타 지역 소재업체는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조건

□ 입주조건

구 분		다산관	장영실관
년간 m2당 임대료(전용면적기준)	1층	38,720원	27,320원
	2층	35,700원	24,500원
	3층	34,180원	22,990원
	4층		22,080원
관리비 (전용면적기준)		m ² 당 월 3,630원 (전용면적기준, VAT별도) * 전기료 별도	m ² 당 월 3,630원 (VAT별도)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별도
입주기간		3년(연장가능)	3년(연장가능)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사업팀(042-867-4502~3)

14) 대덕밸리 서울사무소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활성화 도모
- 수도권 최적의 비즈니스 요지에 공동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고 최대 이익 창출 지원

□ 운영현황

- 개소일 : 2003. 6. 25
- 위치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하나은행 고객센터 8층, 무상임대
- 규모 : 433.06m²(전용 201.32m², 공용 231.74m²)
- 주요시설 : 입주공간 12실, 회의실 1실, 상담실 1실, 빔프로젝터, 프린터, 노트북, 복사기 등 공용장비지원
- 운영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입주현황 : 12개 입주업체

□ 지원내용

○ 시설이용

■ 이용시간

- 시간상 제약 없으며, 최종퇴근자가 문단속과 소등
- 문이 잠겨있을 경우, 로비 경비실에 요청하여 사용가능함

■ 이용공간

- 해당실, 미팅룸, 회의실
- 회의실 : 10명 회의 가능, 화이트보드 · 인터넷 제공

■ 사무기기 및 기타 장비

- 가구 : 1개실별 책상, 서랍장, 의자 각 2개씩, 사물함 1개 제공
- 장비 : 팩스, 복사기, 프린터, 문서세단기, 링제본기, 빔프로젝터 공동 사용

■ 통신이용

- 전화 : 2대까지 개별 신청가능, 전화기만 제공
- 팩스 : 공용팩스(02-562-1749)
- 인터넷 : 2개 IP 제공(즉시 사용가능)

- 관리비 : 1실당 월 40만원(VAT 포함)

- 산출기간 : 매월 1일 ~ 말일, 청구일 : 매월 10일 전후
- 포함내역 : 건물유지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용장비 유지보수비
- 납부기한 : 매월 말일까지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사업팀(042-864-4502~3)

15) 지역상품판매장(TJ마트)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선정, 홍보하기 위하여 사이버점, 오프라인점(시청점, 타임월드점)을 운영
- 생산업체에서 중간유통과정을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시중 최저가격 수준으로 공급

□ TJ마트 현황

분 류	시청점	갤러리아점	사이버점
개장일	2000. 1. 6	2004. 12. 28	1999. 1. 29
규모	대전광역시청사 1층 393.39m ² (판매장 231.4m ² , 창고 67.1m ²)	갤러리아 타임월드 지하2층 341.82m ² (매장 274.38m ² , 창고 67.1m ²)	-
입점업체	119개 업체	98개 업체	94개 업체
입점품목	의류, 가구, 식품, 공예, 민속주, 생활용품, 잡화 등	웰빙, 섬유류, 공예품, 의류, 식품, 민속주, 벤처기업제품 등	가정생활용품, 식품류, 유아/아동용품 등
운영요원	3명(관리 1, 판매원 2)	3명(관리 1, 판매원 2)	1명
주요 매출품목	식품, 의류, 잡화, 생활용품, 공예 등	공예품, 잡화, 생활용품 등	식품류, 유아/아동 등

□ 입점대상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대전광역시에 공장을 둔 업체
- 위 사항에 해당되는 업체의 추천을 받은 유통업체
- 충청남·북도지사가 추천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
- 기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사업팀(042-864-4502~3)

16)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전국 13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바이어와의 매칭 실시

□ 사업개요(2007년 기준)

- 기간 : 2007. 10. 11(목) ~ 13(토), 3일간
- 장소 : 서울무역전시관(SETEC) 제1,2,3관
- 주관 : (사)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참가기업 : 총 300업체(대전 20업체)
- 특기사항 : 해외 바이어 1,000여명 초청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총무팀(042-864-4502,3,6)

17) 벤처프라자 개최

□ 지원제도 개요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출범 후 성과물의 사업화 유도 및 투자유치 촉진
- 수도권 기업과의 기술교류 강화 등 지역 벤처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 지원

□ 사업개요(2007년 기준)

- 기간 : 2007. 9월 중(3일간)
- 장소 : 서울 COEX 인도양홀
- 참가기업 : 60업체(시도별 20업체)
- 내용 : 벤처기업 우수기술·제품 전시회 및 부대행사
- 주최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주관 : 충남 테크노파크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총무팀(042-864-4502~3)

18) 시설지원

□ 지원제도 개요

-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종합연수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 지원센터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이용 안내
-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변환경 및 편리한 근린시설, 넓은 주차공간, 최신설비를 갖춘 회의장 등 다양한 시설 제공

□ 시설현황

- 1층 다목적실

■ 면적 및 규모 : 574.68m², 200석

■ 부속설비현황

- 전동스크린, 무대, 음향, 조명장비, 마이크(유선 5개, 무선 1개), 이동식 책상 (50개, 개당 3석), 접의자(194개), 사무의자(4개), 개인책상(33개), 발언대(2개), 냉난방기(2대)

○ 6층 종합연수실

■ 면적 및 규모 : 252.59m², 50석

■ 부속설비현황

- 전동스크린, 무대, 음향, 조명장비, 마이크(유선 2개, 무선 1개), 고정식 책상 (29개, 개당 2석), 사무의자(63개), 발언대(1개), 냉난방기(1대)

□ 시설사용료 적용기준

○ 회의실 임대료

구분	사용기준요금표			비고
	사용시간	기본사용료	냉난방비	
다목적실 (101호)	1일	100,000원	8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별도 • 냉난방비 관련 세부내용은 담당자 문의
	5시간 이하	70,000원	70,000원	
	3시간 이하	40,000원	40,000원	
종합연수실 (601호)	1일	50,000원	50,000원	
	5시간 이하	40,000원	40,000원	
	3시간 이하	30,000원	30,000원	

○ 장비 임대료

구분	대여료			비고
	사용시간	내부 (일반기업·기관)	외부 (일반기업·기관)	
빔프로젝터	4시간	15,000원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별도 • 세부내용은 담당자 문의
	1일	25,000원	30,000원	
OHP	1일	10,000원	15,000원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사업팀(042-864-4502~3)

19) 기업현장방문

□ 지원제도 개요

- 지역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경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이동민원서비스
- 벤처닥터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 방문을 통하여 민원의 현장 처리

□ 사업개요

- 방문주기 : 월 2회(2,4주 수요일)
- 방문자 : 본부장, 팀장, 관련분야 벤처닥터(필요시)
- 방문기업 :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선정을 통해 1회 2기업 방문
- 결과평가 : 분기 1회 방문기업에 대한 개선사항 등의 평가 실시

□ 지원대상

- 연간 40개 업체 정도
- 전통기업, 대덕밸리 외 지역기업 우선
- 1인 1사 후견인제 확대
- 분기별 방문업체 간담회 실시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총무팀(042-864-4502)

20) 정보제공

□ 지원제도 개요

-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일반현황 및 상품정보를 통합 DB화하여 Website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분야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업체 상품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관련 기관에는 지원시책 수립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 사업내용

- 구축대상 : 대전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 제공방법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연계 제공
- 자료갱신주기 : 연 1회 정기실태 조사 및 연중 수시

□ 제공서비스

- 구축범위 : 기업체 일반정보 및 생산제품정보
- 제공내용
 - 기업체 정보 :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전지역 약 1천여업체를 수록하여 업체별, 업종별, 지역별 등 다양하게 검색 가능
 - 상품정보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하여 각 업체의 우수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품목분류별 상품검색 가능
- 특징
 - 관내 중소·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관련기관에 산재한 정보통합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손쉬운 정보이용 가능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042-867-4000)

4. 대전테크노파크

1) 품질인증 및 표준화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전지역 소재 IT·SW 기업의 기술, 제품 인지도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TTA GS 인증 취득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지역 IS·SW 기업 중 '07년 매출이 30억 이하인 기업
※ TTA GS 인증 취득일이 사업공고일 이후 사업종료일 이내여야 함

□ 지원내용

- 인증비용 250만원 이상 : 50% 지원(최대 250만원)
- 인증비용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75% 지원
- 인증비용 200만원 미만 : 100% 지원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소프트웨어사업단(042-930-3224)

2) 대전 IT·SW 스타기업 육성사업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대전인 IT·SW 기업
- 2007년 매출액이 15억 이상인 기업
- 2008년 내에 TTA GS 인증 취득예정이거나 취득한 rldjqe

※ 지원자격 제외(취소) 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
- 동일 과제에 대해 타 기관 유사기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2008년 내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업체
- 사업수행 중이라도 제출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적격 내용이 드러날 경우 즉시 취소함(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한 사업수행 계획에 근거한 지원
- 지원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단, 인건비 제외)
- 선정기업당 최고 9천만원 지원(지원비의 20%를 현금 의무 매칭)

□ 지원분야

- 홍보·마케팅 분야
 - 국내외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등
 - 기업 및 제품의 홍보물 제작지원
- 비즈니스 분야
 - 직원 업무 향상 교육(무역실무, 경영, 재무, 회계, 기술교육 등) 분야
 - 해외진출 대상지역 시장조사 및 바이어 알선, 기업가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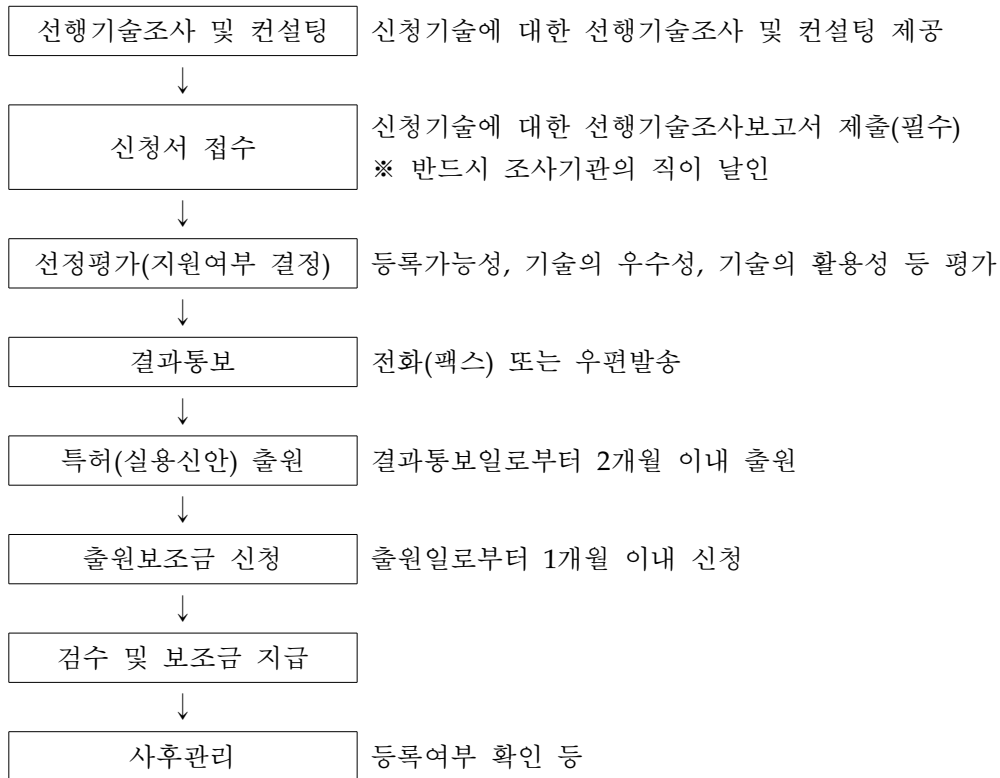
- 해외시장 진출 분야
 - 해외시장 인증획득 및 수출 시제품 제작지원
 - 제품의 현지화 지원(번역물 등)
 - 해외현지 시장조사 등
- 컨설팅 분야
 - 기업진단 및 기술컨설팅(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상세분석, 강·약점 분석 및 약점 해결 컨설팅 등)
- 전통산업의 고도화 분야
 - IT·SW 기술의 연계지원으로 전통 제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여
 - 전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기술 교류회 등
- 기타 분야
 - 기업의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
나 신규 추진 계획 중인 분야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소프트웨어사업단(042-930-3232)

3) 산업재산권출원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대전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의 우수기술이 특허로 자산화 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 지원분야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디자인, 상표·서비스표 제외)

- 지원내용 :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용 일부 지원
 - 특허출원 1건당 70만원, 실용신안출원 1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의 70% 지원
 - 신청인당 연간 3건 이내 지원(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3건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042-867-4002)

4) 특허정보컨설팅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 R&D 기반 구축

□ 사업예산

- 총 39억(국비 20억, 지방비 19억)

□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장 지원
 - 특허 정보분석 및 사업화 컨설턴트 2명이 상주하여 기술개발에서 권리화·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시제품제작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
 -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과 연계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관 및 특허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특허경영 컨설팅 제공
 - 지역특화산업 종사기업에 대한 맞춤형 PM 작성·보급
 - 지역별 10여개 기업 대상 선행기술조사, 분쟁대응방법 등에 대한 상세분석 제공
- ##### □ 운영방법
- 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특허청과 지자체간 공동사업으로 추진
 - 매칭펀드 조성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 사업참여 지자체

지자체	사업운영기관	전화
대전시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042-867-4002
경기도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42
부산시	부산서부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051-320-3625
인천시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72
대구시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052-242-8082
충남도	충남천안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58-5706
충북도	충북청주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043-252-0021
경남도	경남창원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055-264-9315
강원도	강원원주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3-749-3310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042-867-4002)

5) 해외특허출원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1,2차년도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 추진된 1,2차년도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혜기업(36개)

□ 지원기술분야

- 1,2차년도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시제품 관련 기술로서 해외특허 출원 예정인 기술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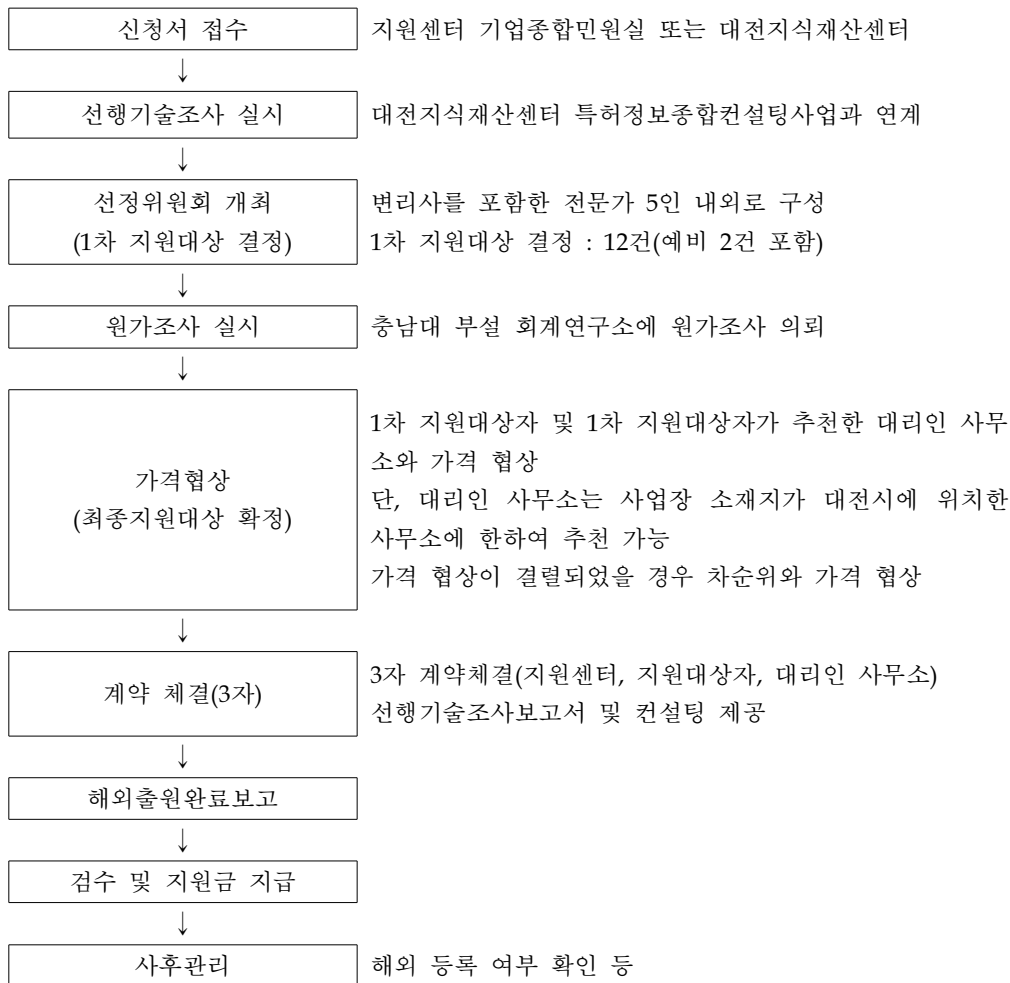
- 해외 출원비용 일부지원
 - 해외출원건별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의 70% 지원
 - 신청 1업체당 2건 이내 지원
 - 동일기술로 다수국가 출원 시 지원건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PCT 출원일 경우,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를 개별 출원건으로 간주하여 지원건수 한도 내에서 지원
 - 국제단계 : PCT 출원번호가 부여된 상태
 - 국내단계 : 지정국 특허청에서 출원번호가 부여된 상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및 컨설팅 제공
 - 대전지식재산센터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과 연계 지원

※ 우대기업

벤처등록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RIS사업 선정기업(스타기업,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등), 대전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 기업 등

□ 지원절차 및 심의기준

○ 지원절차



○ 심의기준

- 신청대상의 자격, 등록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성 등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042-867-4002)

6)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또는 기술)을 수요자들이 제품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하여 제품 홍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3차원의 시뮬레이션으로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1개사 당 1건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신청자격 및 신청내용의 적정성 파악) → 선정평가(지원대상 선정) → 결과통보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042-867-4002)

7) RIS 장비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고주파부품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관련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Wireless 기업의 비용절감 및 개발기간의 단축을 통해 기업의 매출증대 유도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Wireless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1 : 연구개발 장비지원

-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보유 연구개발장비 지원
- 고주파 관련 기업을 선정하여 업체당 150만원 상당의 장비 무상지원

- 지원분야 2 : 기술교육 참가지원

- 고주파 관련 기업을 선정하여 외부 기술교육 및 세미나 참가시 교육비 간접 지원

- 지원분야 3 : 기업보유 계측장비 검·교정 지원

- 고주파 관련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 계측장비의 검교정 비용 일부를 간접 지원

- 지원분야 4 : 고주파 칩 및 부품측정 지원

-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미보유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위하여 대외기관에 측정 의뢰 시 이용료 일부를 간접 지원

- 지원분야 5 : 인증 및 신뢰성 시험 지원

- 고주파 관련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또는 신뢰성 평가 전문기관의 이용료 일부를 간접 지원

□ 지원규모

- 연구개발장비 지원 : 150만원
- 기술교육 참가 지원 : 100~200만원
- 기업보유 계측장비 검교정 지원 : 300만원
- 고주파 칩/부품 측정 지원 : 400만원
- 인증 및 신뢰성시험 지원 : 300~400만원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고주파센터(042-936-6104)

8) 개별전문전시회 지원사업

▷ IT·SW 기업

□ 지원제도 개요

- 대전지역 IT·SW 기업 제품 및 기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판로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신규 매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개별전문전시회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IT·SW 기업

※ 제외대상 : 2007년도 매출 3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IT·SW 관련 국내·외 전문 공동전시회 참가 지원
- 기업별 특성과 마케팅 전략에 따른 개별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규모

- 부스 임차비 100% 지원(1부스 9m² 기준)

※ 단, 기업별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상기 비용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을, 25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소프트웨어사업단(042-930-3210)

▷ 조립금속·공작기계 기업

□ 지원제도 개요

- 대전지역 조립금속·공작기계 기업들의 국내·외 마케팅 확대 및 기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국내·외 개별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조립금속·공작기계 기업, 공작기계 관련 부품 및 기기 기업

- 지원내용

- 공작기계 관련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규모

- 부스 임차비 지원

- 참가기업당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

- 부스수에 따라 차등 지원

- ※ 단,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상기 비용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을,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로봇사업단(042-671-6103)

9)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 IT·SW 기업

- 지원제도 개요

- 대전지역 IT·SW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확대와 기업의 제품, 기술 및 기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인지도 확산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홍보물 제작지원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IT·SW 분야 수출지향형 업체

□ 지원부문

○ 업체별 다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 다국어 브로셔(카탈로그), 다국어 기업소개 PT 제작, 기업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지원 등 3가지 항목 지원

□ 지원규모

- 다국어 브로셔(카탈로그) : 최대 6백만원 지원
- 다국어 기업소개 PT제작 : 최대 4백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선정업체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소프트웨어사업단(042-930-3210)

▷ 조립금속·공작기계 기업

□ 지원제도 개요

- 대전지역 조립금속, 기계(공작기계) 분야 기업들의 국내외 마케팅 확대와 기업의 제품, 기술 및 기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조립금속, 기계(공작기계) 분야 기업

□ 지원부문

- 기업별 신제품, 신기술 홍보를 위한 국문 또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지원범위

- 기업당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로봇사업단(042-671-6103)

10) 상생협력 Jump-up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전지역 IT 기업들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 문제점 및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제안서를 검토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주력사업이 IT·SW 기반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인 유망벤처기업
- 주관기업이 대전에 본사를 두고 업력 2년 이상(제출 마감기준)인 기업
- 사업 아이템에 창의성과 기술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 제안은 주관기업의 대표가 하며, 반드시 2개 이상의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지원분야

- 법률자문, 경영컨설팅(재무, 회계, 마케팅 등), 특정분야 조사 분석 자료제공 등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제품설명회 등의 프로모션 공동 개최
- 이종업종 간의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 판로확대, 상생 발전과제
- 기타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통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단, 소프트웨어사업단 및 기타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천만원 이상, 최대 3천만원의 예산 지원(총 비용의 20% 이상 의무 매칭)
- 지원과제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소프트웨어사업단(042-930-3212)

11) 입주공간 제공

▷ 바이오벤처타운

□ 입주개요

- 입주면적 : 77m²(23평)형, 154m²(46평)형/ 전용면적 기준
- 입주기간 : 최초 3년, 이후 1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단, 기존 입주기업은 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함
- 임대료 : 27,120원/월/3.3m²(VAT 별도)
 - 연 선납 및 분기납(분기납 시 6%/년 이자 및 3개월분 입주보증금 가산)
 - 일반 관리비 및 유틸리티 사용료 별도

□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Post-TBI 단계의 바이오기업으로 바이오제품의 시제품생산 또는 생산,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 사업분야 : 지역특화분야(바이오) 관련 기업
 - 생물의약, 진단시약, 바이오칩, 생물화학, 생물신소재, 기능성식품
 - 생물의약 관련 융합기술 분야 : BIT, BNT 등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042-382-6114)

▷ 로봇센터

□ 입주개요

- 면적 : 부지(16,530m²), 건축연면적(8,326m²)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입주기간 :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가 원칙이며, 실적이 우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임대료 : 약 17,000 ~ 20,000원/월/3.3m²(공용면적 포함 기준/VAT 별도)
- 연 선납 및 분기납(분납 시 연 6% 이자 징수)
- 관리비 보증금 : 약 10,000원/월/3.3m²(전용면적 기준)
 - 월평균 관리비의 3개월분을 계약 시 납부
 - 관리비 별도
- 주요시설 : 비즈니스지원실, 신뢰성평가테스트베드, 정밀측정지원랩, 시제품개발실, 특화디자인실, 로봇체험교육실, 고속가공실, E-러닝센터 등
-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로봇산업 관련 기업
 - 로봇 시스템 기업(교육로봇, 오락로봇, 국방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등 로봇 제품 기업)
 - 초음파센서, 후각센서, 촉각센서 등 다양한 센서 관련 기업
 - 모터 및 감속기, 제어기 등 부품기업
 - 정밀가공 및 기계조립 관련 기업
 - 제어계측, 설계 및 측정, 제품디자인 기업
 - 음성인식, 물체인식 및 로봇 콘텐츠 관련 기업
 - 로봇산업 컨설팅 및 기업지원 서비스기업
 - 설계용역, 시제품제작 서비스
 - 판매 및 마케팅 관련 서비스 기업 등
 -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단체(연구조합, 협회 등)
 - 기타 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향후 로봇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등), 기관 및 단체 등
 - Post-TBI 단계의 '로봇관련 시스템기업, 부품기업, S/W 분야 기업, 산업디자인 업체 등'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

□ 입주기업 혜택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 센터 구축장비 이용 시 비용감면
- 입주기업의 홍보전시회 참가지원 등 마케팅 지원
-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참여 지원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042-671-6104)

▷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 입주개요

- 입주면적 : 전용면적 기준 61.06m², 66.22m²
- 입주기간 : 최초 3년, 이후 1년 단위 연장 가능
 - 계약서는 1년 단위로 작성함
- 임대료 : 약 28,000원/월/평(전용면적 기준/VAT 별도)
 - 연 선납 조건
 - 관리비 별도

□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고주파부품 및 시스템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또는 기관
- 사업분야 : 지역특화분야(고주파산업 관련 분야)
 - 고주파부품 분야
 - 이동통신, 텔레메틱스, 홈네트워크, 유비쿼터스, RFID, 디지털TV 및 국방무선 산업 등 고주파산업 분야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042-935-6103)

▷ IT전용벤처타운

□ 입주개요

○ 입주대상

- 사업자등록증의 주사업장이 대전광역시로 등록되어 있거나 입주계약 후 2개월 이내에 대전으로 이전등록할 수 있는 자(업체)

※ 기간 내에 대전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을 경우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IT/SW 산업 관련 기업 또는 IT/SW 산업 컨설팅 및 기업지원 서비스 기업 또는 IT/SW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단체 또는 기타 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 입주기간 : 계약기간 3년

○ 임대료

- 보증금 : 없음

■ 연간 임대료 관련사항

- 임대료는 최초 3년간 동일하며, 추후 변동 가능
- 임대료는 연 선납을 원칙으로 함
- 단, 연 선납이 불가능할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일정 비율의 이자징수 및 일정금액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 후 제출

○ 관리비 : 별도 징수(상하수도, 청소, 통신, 승강기관리, 조경 등)

○ 보증금 : 월평균 관리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계약 시 납부)

○ 전기료 : 실비 부과(실별 개별 계량기 부착)

○ 입주승인 제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업체)는 입주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대전광역시 및 대전테크노파크가 육성하는 IT/SW 산업 분야에 해당되지 않

는 자(업체)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유해업종인 자(업체)
- 휴·폐업 중인 자(업체)
-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업체)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소프트웨어사업단(042-930-3203)

12) 지역전략사업 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소재한 전략산업 관련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15억원('08년도 기준)
 - 대전 5억원, 충남 5억원, 충북 5억원
- 지원방식 : 국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국비지원 70 대 기업부담 30)
- 지원기간 : 2-5개월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대하여 5개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바우처 종류 : 5종류(1천만원권, 2천만원권, 3천만원권, 4천만원권, 5천만원권)
 - ※ 지식서비스바우처 :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지급보증증서

□ 지원분야

분야	세부분야	주요내용
디자인	제품디자인	생활용품, 의료, 운송, 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시각디자인	CI, BI, 카달로그, 캐릭터 개발 등
	포장디자인	포장, 지기구조 등
이러닝	이러닝 컨설팅	환경분석, 요구개발, 계획수립, 과정 도출 등
	이러닝 구축	사이버연수원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콘텐츠 임대, ASP 지원 등
	특화콘텐츠 개발	수요기업별 특화 콘텐츠 개발
	이러닝 운영	사이버연수원 운영, 교육과정위탁운영, 튜터 지원 등
IT서비스	IT서비스 도입	ITA/EA, ISP, BSC, BCP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IT서비스 구축	솔루션 구축, SaaS 도입,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개발, 웹 호스팅, 산학연계의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IPR도입 등
	IT서비스 운영	IDC 서비스 이용, DB 튜닝, 운영자 양성
시험·분석	연구개발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시제품	인증시험, 시제품제작, 성분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측정
	완제품	인증시험, 성분분석, 측정
컨설팅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직무분석, 재무관리, BSC, 전사적위험관리, 기업전략, 성과평가, BPR, 디자인경영체계, 고객감동 경영, CSR,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등
	기술 컨설팅	ISP, 신제품 개발 타당성 분석 등
	생산 컨설팅	식스시그마, 린시그마, 생산자동화, 신기술 개발, 3정5S 등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기관 구분	분 야	자 격 조 건
지식서비스 수요기관	대전지역전략산 업	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 및 소재
	충남지역전략산 업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충북지역전략산 업	바이오, 전기전자, 반도체, 차세대전지
지식서비 스 공급기 관	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및 지역디자인센터(RDC)
	이러닝 분야	법인설립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이러닝 전문인력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이러닝 납품 실적이 100백만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이러닝 컨설팅 제공, 솔루션 구축, 콘텐츠 임대, 과정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닝 전문기업
	IT서비스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IT서비스 실적을 2건 이상 보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시험분석 분야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최근 1년간 시험분석서비스실적 1,000백만원 이상인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컨설팅 분야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근컨설턴트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120백만원 이상인 컨설팅 전문회사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내 소재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소재 공급기관도 참여가 가능함 (단, 지역별 수도권 참여율은 50%이하로 제한) ※ 해당지역 지식서비스 공급 기업이 주관하고,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등이 참여하는 공급기관권소사업 구성 가능 ※ 지역에 소재한 공급기관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평가하여 참여 가능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사업개발팀(042-930-2812)

13) 창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보유 또는 개발 중인 대전지역 고주파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선진화된 기술 사업화 방법론과 구체적 실행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고주파 산업의 활성화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자생적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사업 추진방향

- 대전지역 내 고주파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지향적 마인드 제고
 - 신기술과 신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구분·실시
- 참여기업(자)의 사례연구와 과제 중심으로 접근
 - 참여기업(자)의 실질적인 사례 및 경험을 보유한 전문 강사진 구성
 - 프로그램 수강 후 참여기업(자)별 개별과제를 부여하여 능동적 참여율 제고
- 참여기업(자)은 전담 컨설턴트의 지속적인 코칭을 받아 주요 현안 과제의 도출 및 이를 해결함으로써 최종 사업계획 수립에 기여
- 참여기업(자)과 강사진의 네트워킹을 강조
 - 수강 전에 참여기업(자)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
 - 수강 후에 개별면담을 통한 문제점 해결

□ 지원내용

- 10주간 주 1회 교육 및 세미나

공동 프로그램		전담 코칭
교육(closed)	세미나(open)	
7회	4회	120시간

□ 지원대상

- 기업 : 대전지역 내 고주파 산업 관련 기업으로서 보유 또는 개발기술의 사업

전략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존 제품의 재사업화를 계획 중인 기업

- 개인 : 대전지역 Wireless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비즈니스모델의 사업전략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
 - 예비창업자 : 기업 또는 개인자격
- 문의처
- (사)한국고주파산업연구조합(042-936-8766~7)

14) u-IT839 전략적 지속성장화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IT/SW 산업의 활성화와 핵심 기술을 양성하여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지역 업체간 상호 보완적 기술 공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IT/SW 분야의 선점적 위치 확보와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기여

□ 수행과제

- u-IT839 분야 중 대전의 특화분야와 관련된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SW의 개발 및 시장창출 지원
 - ※ 대전지역 특화분야
 - USN 고도화 기반의 공공 u-wellbeing 서비스
 - 국방 전략 가상현실 시스템
 - 실감오감형 미디어 콘텐츠
- u-IT839 분야 중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템의 자유과제
 - ※ 대전지역 특화분야 지원 시 가점 부여

□ 신청자격

- 대전지역 내 IT/SW 기업

- 반드시 2개 이상의 컨소시엄(산·산, 산·학, 산·연)으로 구성하되, 주관기관은 사업장이 대전지역인 기업이어야 하고, 기타 참여기업 또는 대학, 연구소는 대전지역 이외의 지역도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원가조사 후 개발비용의 80% 지원, 업체부담 20% 매칭(단, 최대 5,000만원까지 이원)
-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제품제작비 등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
 - 지원과제 중 국내외 유명 제품, 규격 인증 및 특허 취득을 유도 : 과제 선정 후 협약사항에 추가(인증취득 진행 중인 과제 가점 부여)

□ 문의처

- 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소프트웨어사업단(042-936-0813)

5.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 특구연구개발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덕특구 내 보유기술 중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및 전략분야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위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 대덕특구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수행

□ 지원대상

-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산학연 컨소시엄(연구기관과 기업 공동참여)
 - 대덕특구관 운영부스 운영(1부스 9m² 별도)

○ 선정방법 : 평가를 통한 시장지향형 우수 사업화 과제 발굴

□ 지원내용

○ 강점기술 사업화기술 개발사업

■ 지원규모 : 과제당 2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3년

○ 보유기술 사업화 개발사업

■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 내외(최대 10억원까지)

■ 지원기간 : 1년 6개월 이내

□ 지원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확정	과학기술부 / 관리기관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확정 ※ 관리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총괄 협약
사업 공고	과학기술부 (관리기관)	- 전담기관 홈페이지, 경제지 등 - 과제 명,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업계획서 접수	관리기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관리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 기술성 및 사업성, 현장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과학기술부	- 지원대상과제 과기부 보고 - 과기부가 검토 후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관리기관	- 관리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총개발기간 일괄협약 - 민간부담금 입금후 지원
기술개발 수행	주관기관	- 협약내용 변경 신청 · 승인
중간보고 및 평가	관리기관	- 매 1년 단위 결과보고서 제출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관리기관	- 일괄 협약금액 지원 - 전년도 잔액은 이월사용
최종보고 및 정산	관리기관	- 현장실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기술료 징수	관리기관	- 실시계약 또는 매출부터 3~5년간 징수
사후관리 및 지원	관리기관	- 개발종료 후 5년간 활용보고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사업화전략팀(042-865-8874)

2) 대덕특구 테크노마트 개최

□ 지원제도 개요

-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제품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통해 우수기술 이전 및 제품 판로개척 지원

□ 사업내용

○ 첨단기술사업화대전 개최

- 전시회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보유기술·제품 전시(60여개 기관 참여)
- 수출상담회 : 해외 바이어와 특구 기업간 수출 상담
- 기술설명회 : 공공기관 보유 기술설명회를 통한 민간기술 이전
- 부대행사 : 기술금융 세미나, 특허 세미나 개최 등

○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 특구내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우수기술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설명회 및 기술이전 상담회 개최 지원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사업화전략팀(042-865-8874)

3) 첨단기술 사업화 시범사업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의 연속적 지원체계 확보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기술제품 개발기업의 reference 관리 및 사업화 성공모델 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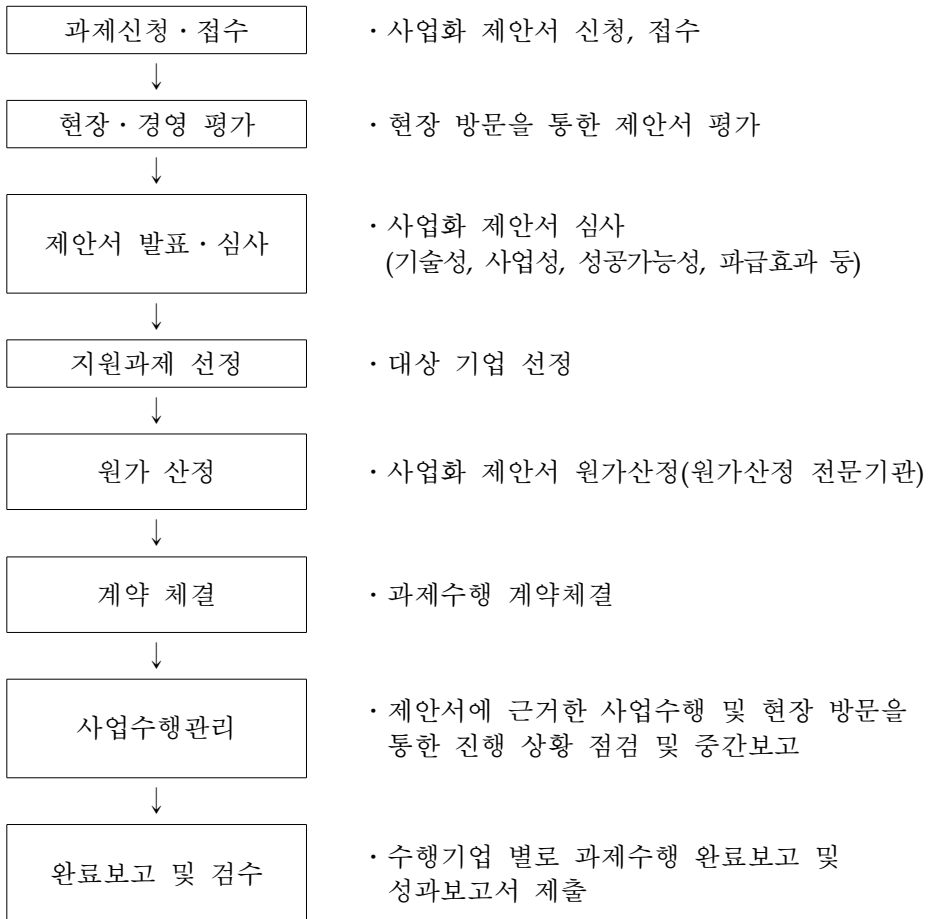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서비스를 검증하는 시범사업 비용 지원(특구본부 70%, 기업 30%)

□ 지원체계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벤처팀(042-865-8872)

4) 창업경영서비스(기술사업화 종합상담)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창업 종합지원체계의 기반 마련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기술 사업화 전반에 부딪히는 기술·경영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출연(연), 대학 등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희망자(연구원 창업, 연구소기업 설립 포함)

□ 지원내용

- 기술창업 종합지원
 - BM 수립 →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전략 도출 → 자금/입지 연계 → 창업절차 자문 → 사후관리
- 기술사업화 주요 이슈별 패키지형 컨설팅 지원
 - 기술사업화 : 사업 아이템 타당성 검토 → 사업화 전략 수립 → 사업화 자금 연계 → 후속지원
 - 기술·특허 이전 : 기술/시장 조사·분석 → BM 수립 → 수요처(공급처) 조사 → 이전 협상
 - 자금유치 : 기술/시장 조사·분석 → IR 전략 수립 → 사업계획 보완(시장, 추정매출 등) → VC, 엔젤클럽 등 연계
 - 기술기획 : 특허선행기술 조사 → 시장동향 조사·분석 → 기술 needs 도출 → TRM 수립
- 특구 내 출연(연), 대학 등은 연구원 창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기획, 기술·특허 이전, 특허 및 법률 자문 등 기술사업화 관련 분야 활용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패키지 지원	기술창업	분야별 종합지원 - 분야에 따라 컨설팅	최대 1,500만원 지원 (개인 부담 없음)
	기술사업화 관련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최대 1,500만원 지원 (총 자문료 30% 기업 부담)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벤처팀(042-865-8874)

5) 특구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과학기술부에서 결성한 「대덕특구 투자조합」 수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술금융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성장자금의 조달 등 기술금융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IR 행사	· IT중소벤처기업의 자금관련 애로사항 해소 · 벤처캐피탈의 투자수요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
코스닥상장설명회	· 대덕특구 내 우량 중소기업의 코스닥상장 지원 · 특구 내 우량 유망기업의 발굴
기술포럼(2회)	· VC를 대상으로 출연(연) 기술을 설명 · 특별강연 및 5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
대덕특구펀드결성	· 펀드결성총회 및 사업설명회
기술금융세미나	· 국내 및 해외세션 세미나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벤처팀(042-865-8874)

6) 비즈니스 정보센터 구축

□ 지원제도 개요

- 각종 기술분야별, 제품별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에 시장정보 획득 및 판로개척을 지원

□ 사업내용

- 시장정보컨텐츠 니즈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36개 산업분야에 대한 수요 전수검사 실시(1차 수요조사)
 - 산업분야별 시장정보컨텐츠에 대한 맞춤형 수요조사(2차 수요조사)
- 시장정보컨텐츠 총 3,000여권의 오프라인 시장정보 컨텐츠 확보 및 온라인 정보센터 구축
- 도서관리/검색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정보센터 구축

□ 컨텐츠 세부내용

구 분		권(종)	비 고
국내 도서	단행본	1,500	
	전자서적	300	e-book
해외 도서	단행본	600	
	정부간행물	200	백서/연감/편람/총람
국내외 기술정보		900	
해외 시장조사보고서	영문(통권)	25	
	일문(통권)	50	
	영문(발췌)	500-700	테이블(표) 기준
국내외 저널	국내	25	
	일본	14	
	구미	14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벤처팀(042-865-8874)

7)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 지원제도 개요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수출유망 상품의 해외진출을 맞춤형으로 밀착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 전략컨설팅과 이에 근거한 맞춤형 마케팅 로드맵 수립, 집중 마케팅, 사후관리 등 시장진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통합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 사업
- 기업 마케팅 지원을 단기성 지원이 아닌 1년 이상 단계적, 지속적 지원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실질적 신규시장 개척의 가시화 도모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으로 해외 마케팅 및 해외 판로 개척 희망 기업

□ 단계별 사업예산

단계	지원내용	기업 부담금	특구본부 지원금	'08선발 업체(수)	선정기업률	비고
1단계	컨설팅	2백만원	10백만원	13	신규	
2단계	해외마케팅 툴	3백만원	8백만원	10	'08년 1단계	
3단계	해외마케팅 툴	7백만원	18백만원	8	'07년 2단계+신규	신규50% 이하
4단계	해외마케팅 툴	8백만원	22백만원	4	'07년 3단계+신규	신규50% 이하

□ 단계별 지원내용

<p>조사분석 및 해외시장진출 컨설팅 (1단계)</p>	<p>참가기업 상품에 대한, 1) 수출 타당성 조사(통계 및 본사, 해외무역관 조사) 2) 수출 유망지역 조사(통계 및 본사, 해외무역관 조사) 3) 제품 경쟁력 분석(본사 및 해외무역관 분석) 4) 바이어발굴 조사(본사, 해외무역관) 5) 유망지역 진출전략 수립 6) 현지 진출방법론(로드맵) 및 최적 마케팅수단 도출 7) 마케팅 실행안 수립</p>
↓	
<p>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2,3,4단계)</p>	<p>1) 해외로드쇼 개최, 제품홍보 프리젠테이션, 바이어 상담 등 2) 해외전문전 연계마케팅 3) 지사화사업 4) 해외전문잡지 홍보마케팅 5) 해외시장 조사대행 6)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7) 수출지원단사업 8) 수입자 신용조사 9) 마케팅 보조인력 지원 10) 바이어발굴 통합서비스 11) 유명검색엔진 등록서비스</p>
↓	
<p>사후관리 (공통)</p>	<p>현지 상담 바이어 관리를 위한, 1) 사이버상담 지원 2) 기타, 필요시 해외무역관의 수시지원 체계 구축 (AS제도 활용 등)</p>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시장조사 및 진출방안 수립(1단계에 한함) → 해외마케팅 및 사후관리(2,3,4단계) → 결과보고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글로벌사업팀(042-865-8851)

8) 수출상품 제품 디렉토리 제작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의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e-카탈로그 및 업체 디렉토리 정보를 CD에 수록하여 해외의 관련 바이어에게 발송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전시회, 상담회, 국제 컨퍼런스 등에서 배포

□ 사업추진체계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동 사업의 주관기관이며,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특구 내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제품 디렉토리 제작 추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본계획 수립, 예산집행, 사업총괄, 감독
주관기관 (입찰선정)	참여업체 모집, 자료수집, e-카탈로그 제작, 제작된 e-카탈로그 해외마케팅 전문포털에 등재, 자체보유 해외 네트워크 대상 홍보 등
참여업체 (약 200개사)	제품 및 해외 판매 설문 응답, 회사 및 상품정보 제공, 제작된 e-카탈로그 검수,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공동 해외마케팅 활동 진행

□ 사업내용

- 총 사업비 : 40백만원 이내
- 주요 사업내용
 - 참가업체 모집 및 자료수집
 - 영문 e-카탈로그 제작 및 해외홍보
 - 수출상품 홍보지 제작
 - e-디렉토리 영문 CD 제작
- 제작내용
 - 제작수량 : 1,000개

■ 대상 : 200개 기업 1,000개 상품

※ 업체당 5개 상품기준으로 가감하여 총 상품갯수는 1,000개 이상 수록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글로벌협력팀(042-865-8852)

9) 대기업 전문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기업 출신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경영자문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대중소기업협력재단 연계)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경영자문을 희망하는 분야의 대기업 출신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경영자문 지원

□ 지원규모

○ 참여기업의 경영자문비용 지원(재단과 특구본부가 matching 지원)

○ 재단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특구본부는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

■ 단, 기타 수당(교통비 및 숙박비 등)은 참여기업이 총 비용의 50% 부담

□ 지원기간

○ 최초 자문시 30일 이내, 필요시 지원범위 내 연장 가능

□ 자문분야

대분류	중분류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및 비즈니스 전략 •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노무관리 • 조직관리, BPR 등
생산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 생산 · 재고관리 등 • 품질관리, 6시그마 등 • 규격 및 인증, e-비즈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제조물책임) • 극내외 특허출원 • 정보화전략(ISP) 및 정보시스템
재무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회계관리 • 자금계획 및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공개, 투자유치 등
마케팅, 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 마케팅 · 영업전략 • 유통, 물류 • 수출입(북미, 유럽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아시아, 중동지역) • 관세, 통관 L/C 등 수출입 실무 • 고객관리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사업화전략팀(042-865-8874)

10) 해외자금유치지원사업

□ 지원제도 개요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벤처캐피탈 또는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 지원
-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확보, 기술제휴, 해외마케팅채널을 동시에 확보하여 특구기업의 가치창출투자(value added investment) 유치 실현

□ 지원대상 및 규모

- 해외자금 유치를 통해 글로벌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기업 자문 및 투자자대상

기업분석 보고서(IM,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교육지원 및 컨설팅
 - 해외 벤처캐피탈 및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관심 투자기관 발굴, 투자유치 가능성 타진, 투자유치 상담회 개최 등 전략적 투자 매칭
 -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함께 해외 투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 투자상담회 개최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글로벌사업팀(042-865-8851)

11)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제도 개요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연구소, 대학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을 특화된 해외 전문전시회에 전시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 지원내용

- 전문전시회 참가비(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물품운송료, 통역비 등) 및 기술설명회 개최 지원

□ 지원체계

- 사업시행공고(전시회 참가신청 공고)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접수) → 접수/자격요건 심사(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접수/자격요건 심사) → 사업수행(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글로벌사업팀(042-865-8851)

12) 기술창업 경영지원센터 운영

□ 지원제도 개요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이 경영전반에 부딪히는 애로사항 진단 및 경영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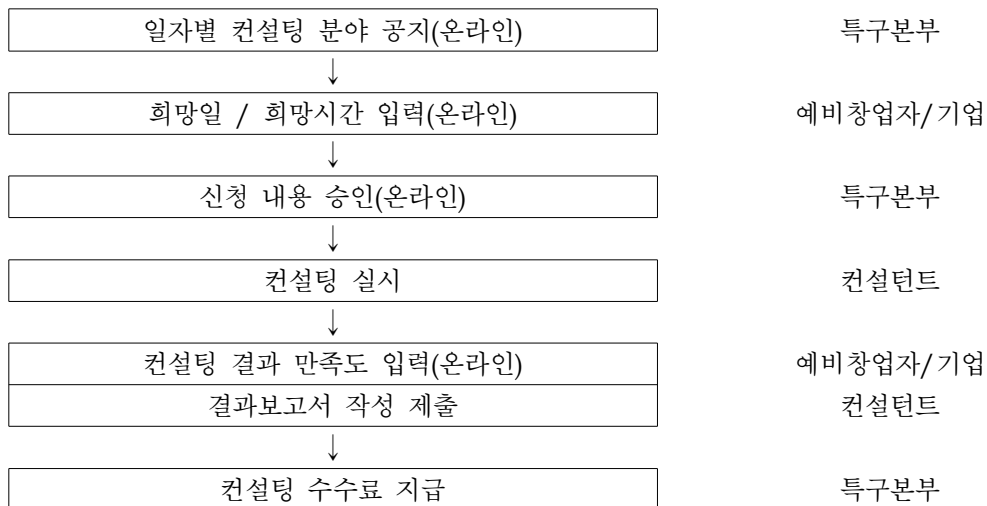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포함)

□ 지원내용

- 경영상담 서비스 지원(경영, 회계, 법률, 특허, 기술 등)
- 보유기술이 우수하고 핵심기술 역량이 뛰어난 첨단기업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체계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벤처팀(042-865-8872)

13) 특허정보 활용지원

□ 지원제도 개요

- 기술개발 전 이미 개발된 특허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특허분석시스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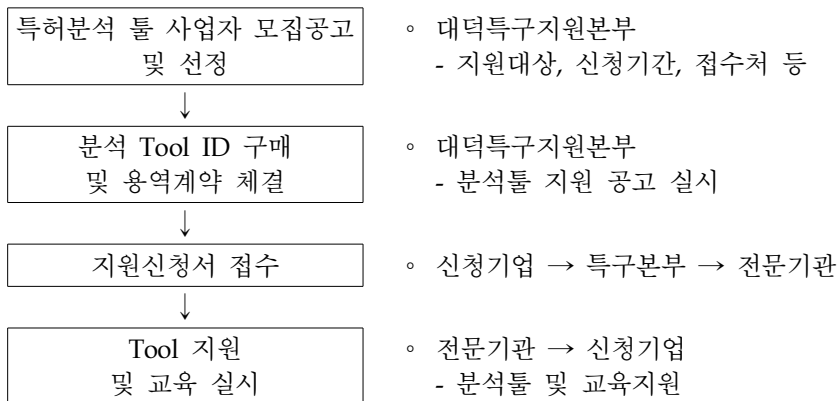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포함)

□ 지원내용

- 기 개발된 특허 검색이 가능한 특허검색 ID 제공(개당 120만원, 기업부담 30만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체계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벤처팀(042-865-8872)

14) 대덕 High-Up(첨단기업도약)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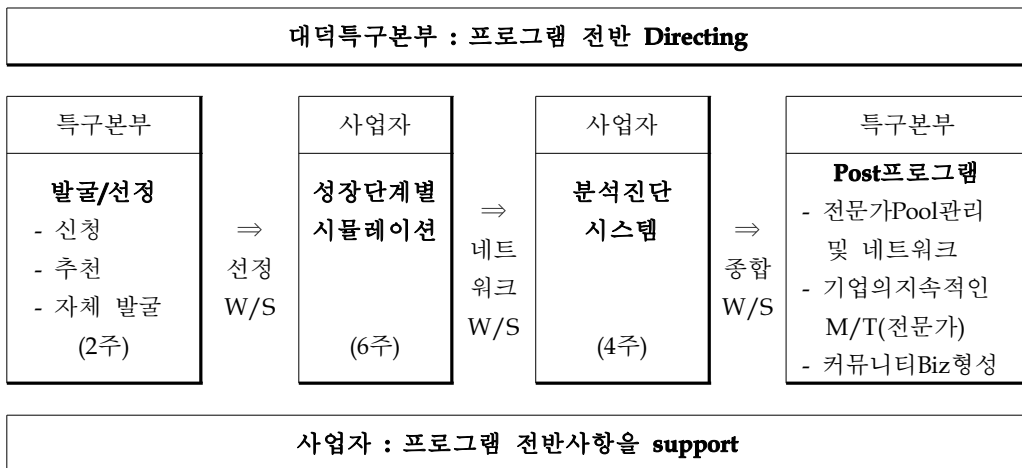
□ 지원제도 개요

- 유망기술 아이템 사업화 지원 및 창업 활성화, 창업 실패율 관리 및 성공률 증대
- Big Success 창업 모델 및 기술창업 지원모델 창출, 기술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첨단기술 아이템을 바탕으로 창업과 기업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창업 초기단계 경영자(3년 내외)

□ 지원체계 및 내용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술벤처팀(042-865-8872)

15)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지원제도 개요

- 사업초기 창업단계부터 기업성장 및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경영자급(CEO, CFO 등) 네트워킹 교육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교육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 및 예비창업자(연구소기업 포함)

□ 교육내용

- 교육 및 인력양성 5개 교육과정 운영
- 실무 및 실습 위주의 특성화된 전문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대덕 CEO 과정	기업대표, 창업연구원	44시간	경영일반, 코스닥등록 등
대덕 CFO 과정	재무책임자, CEO	44시간	재무 및 관리회계
마케팅인력양성과정	마케팅 담당자	40시간	마케팅전략, 영업스킬 등
기술사업화 과정	기술사업화 담당자	35시간	기술가치평가, 사업성평가 등
대덕스타트업 과정	창업준비자, 연구원 등	67시간	창업준비, 사업계획서작성 등

□ 문의처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본연구보고서 2008-08

기업지원제도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인 육 동 일

발행일 2008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